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 수 석 부연구위원
박 석 두 연구위원

연구 담당

김 수 석	부연구위원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집필
박 석 두	연구위원	제2장, 제3장, 제4장 집필

머 리 말

1990년 4월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법제화된 농업법인제도는 시행된 지 15년을 경과하고 있다. 당초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의 협업화를 통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체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의 생산 외에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 산업을 겸영함으로써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현행 농업법인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당초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더욱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 제시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독창성은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의 구조상 문제점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법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현행 가족농 형태의 농가구조를 질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영체 유형을 농가의 법인화에서 이 연구는 찾고 있다.

그동안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위로하며, 농업경영체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연구가 농업법인의 포함한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계기로 이용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연구로 이어지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

2006.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이 연구는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례 조사와 농업법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인제도의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과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농업법인제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적용받는 협업체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받는 기업체로 설계되었지만,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영체를 규율하기에 미약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에서 두 조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복합사업이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산물유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농업생산자를 대상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담하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 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농업법인이 유통분야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경쟁 및 경합관계에 서게 된다. 농업법인이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협이 유통 및 가공 관련 농업법인을 조합원으로 수

용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넷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기관이 없다. 현재 농업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한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농업법인들의 조직체인 협회조차 해체된 상태에 있어 자율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운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다섯째,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주로 세제상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이 대부분 특정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농업법인제도로부터 제도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이 연구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농업경영체가 법인격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독일의 경우 경영체의 유한책임 여부이다. 농업경영체에 일반 법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은 무한책임을 가지는 민법상의 회사(GbR)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을 인적회사로 분류해 법인과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회사 형태의 경영체를 모두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영체의 유한책임이 법인을 규정하는 주요 척도가 되어 회사이지만 법인이 아닌 비법인회사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농업경영민사회사(SCEA)는 무한책임의 민사회사지만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는 독일과 일본의 중간 형태에 해당한다 하겠다.

농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되는 농업경영체 개념은 독일, 프랑스, 일본 3개국 모두 갖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즉 농업생산 활동이 농업경영체의 지표가 된다. 여기서 개념상 관건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다.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법상의 농림업 개념이다.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지표는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 총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조세상의 농림업 개념은 기본적으로 법인을 제외한 농업경영체의 농림업 생산활동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영농 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면,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가 주어진다. 프랑스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촌법전」 상의 농업활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 농업경영체가 된다. 「농촌법전」 제311-1조에는 농업생산이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활동과 농외 활동에 속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고, 특히 농업생산법인에는 법인의 사업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범위가 ‘신농정’을 계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즉 그 전에 농업 및 그 부대사업에 한정되었던 사업범위가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가공, 농산물의 저장·운반 등 농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의 농업법인제도는 기업농적 혹은 협업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규모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 형태가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다. 이 영농조합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서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는 농가인 가족농을 법인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조직과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족농 법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공동농업경영그룹(GAEC)과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이다. 일본은 당초에 농업법인의 도입취지를 가족농업경영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협업경영을 조장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나, ‘신농정’ 개혁에 이르러 가족농업경영을 법인경영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즉 영농규모의 확대보다 농업경영의 내용과 질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는 농업법인이 가족농업경영의 보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부터 발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농업법인제도는 그 목표가 당초의 독일식 대규모 협업경영에서 프랑스식 가족농의 법인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한다. 그 하나는 농업법인 도입의 당초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 기업농적 대규모 경영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다수 농가들이 농업경영체의 선택대안으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농가 단위의 소규모 농업법인을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요컨대 농업법인 발전의 기본 방향은 한편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를 창설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편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제1단계는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첫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법인관리기구로 지정해 농업법인을 관리하도록 한다. 둘째, 관리 기구의 평가에 의하여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법인은 강제 해산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한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면제 및 감면 시한을 연장한다. 넷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활용하여 농업법인과 농업협동조합의 관계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들에 대해 조직변경을 용이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제2단계는 가칭 “유한영농법인”으로 명명되는 가족농 규모의 유한책임경영체를 새로운 법인제도로 도입하는 단계이다. 가족농 형태의 농가경영을 소규모 법인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 제도는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경영 및 자본에 대한 유한책임으로 부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인경영을 가능케 하여 농업후계자를 승계농 형태로 육성할 수 있다.

제3단계는 기존의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법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업생산법인의 육성전략은 한편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생산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농적 소규모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육성전략의 구체적 형

태는 영농조합법인과 가칭 “유한영농법인”으로 제도화된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개편하는 것이고, “유한영농법인”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농업서비스법인 유형에 속하는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단일화하고,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영역과 비농업인 제한 규정, 농지소유 규정 등을 변경한다. 즉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지만, 농업서비스분야에서 비농업 부문의 투자와 경영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제3단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구비되거나 추진되어야 한다.

- ① 농업경영체의 개념 정립
- ②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개편
- ③ 농업회사법인 제도의 개편
- ④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구비

이상과 같은 농업법인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현행 법률체계이다. 현재 농업법인제도는 농업정책의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법률체계에 해당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법인경영체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하고, 구체적인 제도는 별도의 집행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민사회사법」을 통해 법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농지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을 통해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련 규정은 「농지법」에서 관할하고 농업법인의 조직유형에 관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관할하게 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하고 농업법인을 일관성 있게 관리·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 연구 검토 3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농업법인제도의 현황과 과제

- 1. 농업법인의 도입 배경과 경과 9
- 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과정 14
- 3.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내용과 특징 21
- 4.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28

제3장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과 실태

- 1. 농업법인의 일반 현황 35
- 2. 농업법인의 사례 조사 분석 48
- 3. 농업법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56
- 4. 농업법인의 문제점 요약 60

제4장 외국의 농업법인 관련 제도

- 1. 독일 63
- 2. 프랑스 80
- 3. 일본 95
- 4. 외국 농업법인제도 비교분석 117

제5장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 1. 농업법인의 발전방향 121

2. 제도 개선방안	123
제6장 요약 및 결론	139
부록 1.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	147
2. 농업법인 설문분석 집계표	153
3. 일본 농업생산법인제도의 변천	158
4. 일본의 법인경영에 대한 지원조치 (2006년 예산)	160
Abstract	163
표·그림 차례	165
참고 문헌	16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DDA와 FTA 등의 시장개방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에 있다. 농업법인경영체는 이와 같이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으로 도입되었다. 즉 가족농 형태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농적, 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인 형태로 농업 및 농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는 농업법인경영체(약칭 농업법인)는 1989년 5월에 수립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농업구조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이 포함됨으로써 비롯되었다. 농업법인은 1990년 4월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법제화된 이후 현재는 1999년 2월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도입 취지는 농업생산의

2 서론

협업화를 통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체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의 생산 외에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 산업을 겸영함으로써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지난 이 시점, 이 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해 보면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먼저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말 현재 운영 중인 5,260개 농업법인 중 출자자 개별운영 1,711개소(32.5%)를 제외하고 실제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3,542개소(67.5%)로 등록한 법인의 2/3 수준이다. 실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농업법인 중에서도 출자금 5억원 이상은 399개소(11.3%)에 불과한 반면 1억원 미만이 1,684개소(47.5%)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농업법인 중에서도 결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2,180개소에 불과한데, 이 속에서 영업이익 적자 법인이 786개소(36.1%),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이 1,091개소(50.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농업법인 중에는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법인이 많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기구가 없다. 다시 말해 농업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농업법인의 협회마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업정책은 농업법인에 대해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설립자금·시설자금·운용자금 등을 대폭 지원하다가 농업법인의 난립과 부실사태가 발생하자 1997년부터 정책사업 자격 기준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 방향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 있다.¹

요컨대,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한 현재 5천여 개의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영세·적자·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업법

¹ 여기에는 현행 농업법인제도가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유형에 적합한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 이 내용은 후술한다.

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법인의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 여부 및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실태에 관한 사례 조사와 농업법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인제도의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검토 내용

가족농 이외의 농업경영조직에 대해 최초로 검토한 연구에 해당하는 김준보(1962)는 기업농과 협동농이 농업생산력 발전(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이러한 경영조직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 경영체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농은 분배문제와 관련한 한계를 가지는 반면에 협동농은 협업을 통한 규모의 유리성이 있지만 그것을 적극 개발하는 추진 주체(리더)를 확보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호·김홍배(1990)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틀 속에서 농업경영 단위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래의 농업발

4 서론

전 주체인 상업적 전업농의 육성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농가의 성장을 보완하기 위한 위탁영농조직 및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정호·박문호(1994)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의 초기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업경영이 본질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조합원의 출자는 저조하고 자본금을 정책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법인경영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조합형과 유통조합형으로 구분하여 정책지원을 차등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호 등(1997)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다음, 설립자금 지원에 의한 농업법인 설립의 과열을 막기 위해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수정하고, 법인경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부실법인에 대한 자진해산 유도 및 합병 추진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에 대한 미시적 분석으로 조광호(1997)는 41개 축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생산 중심형, 생산+공동판매형, 자재공동구입 및 공동출하형, 시설장비공동이용형, 사료제조분뇨처리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성호(1999)는 19개소의 농업회사법인을 면접조사하여 이들을 매출액 기준으로 영농대행형·농업생산형·가공유통형으로 유형화하여 운영내용을 조직·사업·경영성과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동일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기계중심형 법인과 시설중심형 법인으로 재분류하여 그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성공 요인으로는 조직 측면에서 구성원 선정, 대표자 자질, 지속성 및 내부결속이 중요한 지표였고, 사업 측면에서는 입지조건, 사업결합, 사업평가 및 개선이 중요하였고, 경영 측면에서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비용 절감, 투자자의 적정화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등(1999)은 농림사업을 수혜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그 성과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법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관련 연

구 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문호·전익수(2000)는 농업법인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적 체질을 강화하며 지역농업의 중심세력으로 농업법인의 발전을 유도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도 및 경영 개선 방안으로는 기존의 농업법인 중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그 목적에 맞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유명무실한 법인의 해산 조치를 제안한다. 또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높이고 영세법인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며 농협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호 등(2004)은 기업적 농업경영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농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농업경영체 관련 세제를 포함한 경영체 지원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지역별 농업법인의 운영에 대한 연구로는 김병택(1992), 유진채(1997), 박광서(1999)가 있다. 김병택(1992)은 경남 지역, 유진채(1997)는 충북 지역, 박광서(1999)는 전남 지역 농업법인경영체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2.2. 선행 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

선행 연구는 대부분 농업법인에 대해 개별 경영체로서의 경영 실태 파악과 그에 입각한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제시되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주로 제도운영상의 개선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연구는 농업법인의 제도 자체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법인의 제도적 틀에서 원초적으로 출발하는 한계와 문제, 그리고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제도적 틀의 개편사항과 제도운영상의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농업법인의 제도구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농업법인의 의미와 필요성,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의 구분 필요성, 가족농을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경영체의 도입 필요성 등

6 서론

이 검토되는데, 이러한 검토는 농업법인을 포함한 현행 농업경영체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모색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또한 농업법인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당면한 현안이면서 동시에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일차로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도 구성 자체에 대한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또한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에 해당한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먼저 농업법인의 개념과 유형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연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징을 산출한 농업법인 제도가 가지는 제도구성상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농업법인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여기서 농업법인의 일반적 운영 현황은 통계청의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는 데,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운영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농업법인의 유형별 실태 분석은 운영 중인 농업법인에 대한 사례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이러한 사례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 국가

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이 되는데, 먼저 이들 국가들의 개별적인 농업법인 경영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각국의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들 국가들의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농업법인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은 두 가지 흐름인데, 그 하나는 농업법인 도입의 당초 취지에 해당하는 기업농적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농업경영체 선택의 메뉴로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다수 농가들이 농업경영체의 선택대안으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농가 단위의 소규모 농업법인을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법인 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의 시행절차를 검토하는데, 여기서 당면한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도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단계론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농업법인의 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 동반된다.

3.2. 연구 방법

먼저 문헌 연구는 농업법인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와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 방법은 특히 선행 연구 조사와 외국제도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통계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특히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의 원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농업법인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업법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로서 농업법인 750개소에 설문을 발송하여 58개소의 회신을 받았다. 사례 조사는 현행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법인 8개소와 전문농협 1개소를 유의추출하여 실시하였고, 여기서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

8 서론

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외국의 농업법인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는데, 독일과 프랑스,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독일은 현지출장조사 방식을 택하고, 프랑스는 위탁연구 방식, 일본은 관련 문헌 수집에 의한 문헌 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연구 전문가들과 농업법인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

1.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과

1.1.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배경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었다. 이 법 제6조에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7조에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 도입 배경을 법 제정 이유에서 읽을 수 있다. “최근의 수입개방 압력 등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 경영의 적정규모화 등의 방법으로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 등의 방법으로 농어촌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농 등 취업희망 농어민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는 한편 “중장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업농어가·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수산업 특정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영세농어가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이 긴요한데, 농어촌공업

의 육성 등을 통해 영세농어가의 전업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유동되는 농지로써 전업농·후계자·영농조합법인이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농업기계화와 위탁영농회사에 의해 경작토록 한다는 방안이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1989년에 4월 28일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대책은 이른바 ‘농업구조개선 농정’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①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 ②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요 개발, ③ 농외소득원 개발 촉진, ④ 농어촌 정주권 개발, ⑤ 농어민 부담 경감과 농어가 경제 안정, ⑥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⑦ 농수산행정 체계의 개선 등이 중점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농지유동화사업, 농업진흥지역제도,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농림수산부문 특정 연구·개발사업 시행, 면 소재지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 농지개량조합비 보조 확대, 일반은행의 농지담보 융자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이어서 정부는 19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통해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확정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총 42조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대책은 1993년 2월에 출범한 ‘문민정부’에 의해 사업 완료 시기가 2001년에서 1998년으로 앞당겨져 시행되었다. 1989년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비롯된 ‘농업구조개선 농정’이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1991년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얻어 확고히 시행되게 되었다. 요컨대,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는 도입 당시 내용이 어땠든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1.2.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내용과 특징

1990년 4월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8월에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해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법제화되었다. 두 형태의 법인조직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을 통해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데 반해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에 관해서만 간단히 규정하고 나머지는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다. 주요 항목별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설립 목적: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동법 제6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탁영농회사는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 편의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동법 제7조)”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② 농지소유 및 사업: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법 제6조 2항), 농수산업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에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시행령 12조). 반면, 위탁영농회사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업경영이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나 “농가당 위탁영농을 할 수 있는 규모”는 3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법 제7조 2항).

③ 설립 주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경영농민” 즉 1ha 미만의 농지 소유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수의 가축 소유자(시행령 6조)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법인 사무소의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④ 설립 절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민 5인 이상이 공

12 농업법인제도의 현황과 과제

동으로 정관을 작성한 다음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법 제6조 5항과 6항). 설립등기에는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 탈퇴·제명시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의 출자액 상한에 관한 사항,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적립금의 비율과 적립방법,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대표조합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시행령 7조와 13조). 또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 내역서, 대표조합원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다(시행령 7조 2항). 설립등기를 한 경우 조합법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7조 3항).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⑤ 출자 제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와 기타 현물에 한해 출자할 수 있고, 현물 출자한 조합원은 현금으로도 출자할 수 있으며,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되었다(시행령 11조). 위탁영농회사의 출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⑥ 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 조합법인의 합병·파산,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된 지 1년 이상인 경우,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등의 경우에 할 수 있었다(시행령 14조).

⑦ 법인과 농협의 관계: 양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법 제6조 8항)”는 조항뿐이다.

⑧ 타법 준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동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 외에 준용하는 법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시행령 15조)”, 위탁영농회사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법 제7조 4항)”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1990년 도입 당시 농업법인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인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1962년에 「농지법」의 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법인을 규정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의하여 농사조합법인을 제도화하였다. 우리의 경우 1990년 당시 「농지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1986년에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시행보류 상태였다. 1962년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단위농협과 중앙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별 전문조합은 1도 1조합 원칙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1989년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이 포함되고, 그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이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시행령 15조)”고 함으로써 그 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전국 평균 경작규모도 안 되는 영세농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법인 사무소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3년 이상 거주하는 1ha 미만 농지소유자로서, 출자는 농지와 기타 현물에 한하고 현금 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만 허용되며, 1인의 출자액은 총 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되었다. 그러면서 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했다. 1ha 미만 농지소유자가 현물로 출자한다면 농지 출자는 기껏 1호당 1ha 미만일 것이고, 그렇다면 1인당 출자 비율 상한 1/3은 불필요한 규정일 뿐 아니라 5인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경영면적은 5ha 미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 법인이 규모를 더 확대할 방법은 조합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크게 늘리거나 현물출자자로 하여금 현금을 많이 출자하도록 하여 그 출자금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 아니면 출자금 대신 경영수익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서 법인이 농지임차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86년 제정되었다가 시행이 유보되었던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령이 1990년 9월 제정

되어 농지임대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전국 평균 경작규모도 안 되는 영세농으로 제한하였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셋째, 위탁영농회사의 경우 농업경영 또는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더욱이 농가 1호당 위탁면적은 3ha 이하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위탁 상한 3ha 규정은 농지개혁법의 소유 상한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지키도록 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고가의 각종 농기계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탁영농회사의 경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이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작업 대행 사업만 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이다. 다만, 위탁영농회사의 농지소유를 금지한 것은 경자유전 원칙이나 농작업 대행에 국한한 사업범위에 비추어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과정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에 도입된 이래 1993년과 1994년, 1999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2차례 걸쳐 수정되었다. 1999년 2월에는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바뀐 데 이어 2003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으나 내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1993년 개정 내용

1993년 6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3가지와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1가지 등 4가지였는데, 개정 방향은 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와 조합원 자격 및 출자면적의 확대, 위

탁영농회사 설립 주체의 다양화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이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에서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가공·수출” 등이 추가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 2(농지소유 상한의 특례)가 신설되어 ‘1가구당’ 농지소유상한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ha로 확대됨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에도 이 조항이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면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동년 12월에 시행령 6조를 개정하여 조합원 자격에서 ‘1ha 미만 농지소유자’라는 규정은 사라졌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현금 출자 제한 규정도 폐지되고,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유지되었다. 조합원의 자격 상한과 출자액 상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경영면적도 5인 조합의 경우 출자만으로 최대 50ha까지 가능해졌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은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농협·축협·수협·임협·염연초협·인삼협 및 그 중앙회와 조합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 전문생산자조직(동 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목적에서 “농민의 농업노동력 부족”을 “농민·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은”으로 개정하고, 위탁영농 상한 3ha를 없앴다. 이로써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주체는 농민에서 농민·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으로 확대되었다.

2.2. 1994년 개정 내용

1994년 12월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이유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산업인력으로서의 농업인 등을 육성하고, 적정 규모의 법인경영체의 설립을 지원하여 가족농체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당해 시·군 거주 및 3년 이상 영농종사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아닌 자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고쳐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서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라는 내용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로 수정되었다. 개정 이유에 제시된바 “가족농체제를 보완하는 법인경영체의 설립 지원”이 곧 ‘협업적 농업경영’이란 용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서 “농업인과 생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로 개정되었다. 법인 사무소 소재지 시·군 및 연접 시·군이라는 거주지 요건과 3년이라는 영농기간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농지소유 상한 면적만큼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6조 2항)에서 농지소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같은 날 「농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지소유에 관한 규정은 모두 그 법에 일괄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농지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로서 농업인의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과반이고 농업인이 대표사원을 맡으며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사원의 1/2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정의하여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의 소유상한은 농가 1호당 5ha로 제한되는데, 농업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ha씩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회사를 제외한 형태의 회사법인도 출자액 비중, 대표, 업무집행권 소지 사원(이사)의 수 등에서 농업인이 과반을 차지하고 대표를 맡을 경우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를 소유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법인의 업종이 농업생산법인이든 농산물 판매·유통법인이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농업경영을 하는 법인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농사조합법인 중 시설·기계 공동 이용사업을 하는 1호(號)법인, 농업경영 중 양돈·양계 등 농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업경영 분야의 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른바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예방하는 면에서는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요건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그 자격은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는 자,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 또는 가공하는 자로 하였다(시행령 6조). 또한 준조합원의 출자액 합계는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하였다(시행령 11조 2항). 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법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그 비중을 제한하고 의결권을 배제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농업인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협·축협·수협·임협·엽연초생협·인삼협으로 조정되었다(시행령 15조의 2).

여섯째, 법 제7조의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을 개정하였다. 먼저, 농업회사의 설립 목적은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위탁영농회사의 목적을 확대하여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은 영농조합법인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졌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조직 형태만 다를 뿐 설립목적과 사업 범위가 동일해진 것이다. 일본의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

도 설립목적 및 사업 범위에서 차이가 없지만, 농업생산법인 요건의 구비 여부에 의해 농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일곱째, 농업회사법인의 조직 형태로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가 명시되고,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는 기한이 30일로 명시되었다(시행령 15조의 3항 1호와 3호).

여덟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주체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 외에 추가로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법 제7조 2항) 그 출자액 합계는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주식회사는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시행령 15조의 5).

아홉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사업 및 농작업 대행(법 제 7조 1항)과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의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이 신설되었다(시행령 15조의 6).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 분야 전반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 1999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999년 3월 3일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다. 개정 이유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업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개정 조항은 3가지였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를 폐지하였다.

셋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1/3 이하에서 1/2 이하로 완화하였다.

표 2-1.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과정

구 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9년 이후
근거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 - 위탁영농회사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	
영농조합법인	취지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제고 - 농산물 공동출하와 가공·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제고 -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농지소유	- 가능 - 소유상한 규정 없음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합산면적 가능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사업	- 농수산업과 부대사업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농작업대행		
	설립주체	당해 시·군 거주 3년 이상 영농 1ha 미만 농지소유자	- 유지 - 유지 - 소유상한 폐지	- 거주지 요건 폐지 - 영농기간 요건 폐지 - 농업인·생산자단체 -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출자제한	농지와 현물에 한경 1인당 총출자액의 1/3 이하	- 현금출자 가능 - 유지	- 준조합원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 - 준조합원 출자한도
	농협관계	농협의 준조합원 가능	농협 등 협동조합 및 다른 농업법인과 전문생산자조직 법인의 조합원·준조합원 가능	생산자단체에서 다른 농업법인 및 전문생산자조직 법인 제외하고, 농협 등 각종 협동조합에 한해 조합원·준조합원 가능
	타법준용	- 민법의 조합규정 - 무한책임		해산명령에 상법 176조 준용
농업회사법인	취지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설립통지		설립등기 후 시장·군수에 통지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 통지 폐지
	농지소유	불가능		합명·합자·유한회사로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과반이고 농업인이 대표사원이며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농업법인은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 소유 가능
	사업	- 농업경영 - 농작업대행(농가당 위탁상한 3ha)	위탁상한 3ha 폐지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 농작업 대행 - 부대사업
	설립주체	농민	농민·생산자단체·농지개량조합	비농업인 출자 가능
	출자제한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인출자액의 1/2(주식회사는 1/3) 이하
	타법준용	- 상법의 회사규정 -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비농업인 출자액도 총출자액의 1/2로

2.4. 1999년 「농업·농촌 기본법」의 제정

1999년 2월 5일자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리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7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로 옮겨졌다. 두 법의 관련 내용에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상법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15조 5항)이 추가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삭제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는 유명무실한 조합법인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다.

2.5. 2003년 「농업·농촌 기본법」의 일부 개정

2003년 12월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는 농림부장관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개정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법 제15조 8항으로 신설되었다. 내용상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내용과 특징

3.1. 농업법인제도의 내용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이다. 이 법은 농업법인을 영농조합법인(제15조)과 농업회사법인(제16조)으로 구분하여, 법인 설립 목적과 발기인 수,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준조합원의 자격과 권리 제한 또는 비농업인 출자자의 출자액 비율과 권리 제한,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해산명령과 청구, 농업법인의 설립·출자·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 「농업·농촌기본법」 이외 준용하는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과 「민법」, 「상법」 등 준용하는 법률의 농업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설립 목적과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설립하며,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한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이다. 원칙적으로 협업경영은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이익과 법인 구성원의 이익은 개념상 아주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1호(戶)1법인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법인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의한 법인의 유형 구분은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과 발기인 수 및 유한·무한책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동일하다. 다만, 법인의 발기인 또는 구성원 수는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1항),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회사는 발기인 2~50인과 사원 1인 이상, 주식회사는 발기인 3인 이상으로 설립한다(이상 「상법」의 회사 종류별 설립 규정).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모두 유한책임이다.

③ 준조합원의 자격·권리 제한 또는 비농업인 출자자의 출자액 비율 제한: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0조)는 그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나, 그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자액 또는 자본금 제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총출자액,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1인당 출자액 모두 제한이 없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정해져 있는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천만 원 이상,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주식회사는 5천만 원 이상이다.

⑤ 의결권: 영농조합법인의 의결권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인 1표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 1구좌당 1표(합명·합자·유한회사), 주식 1주당 1표(주식회사)이다.

⑥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법인의 대표를 맡고, 업무집행권 소유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일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의 구비요건에 비해 훨씬 규제가 느슨하다.

⑦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협·산

립조합 및 앞담배생산자조합 등이다.

⑧ 농업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에 정하는 사업이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3조).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으로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산물의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다(시행령 21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종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⑨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 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는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법인의 명칭·목적·사업·사무소소재지와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1인당한도 및 해산사유, 대표조합원의 성명·주소, 임원의 성명·주소,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총 출자 좌수와 출자액 등을 등기하며, 창립총회의사록·정관·출자자산내역서·대표조합원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전 및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⑩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 영농조합법인의 합병·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지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5조). 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2주일 청산인이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같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6조).

24 농업법인제도의 현황과 과제

표 2-2.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좌동
발기인수와 출자자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 유한·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유한책임) 주식회사: 3인 이상(유한책임)
준조합원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 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 임대, 경영 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3/4 이하
의 결 권	1인 1표제	출자 1구좌당 또는 1주당 1표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가능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자의 1/2 이상에 한함)
타법준용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가입 가능 생산자단체	농협,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좌 동

3.2.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과제

3.2.1. 근거법령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의 적절성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이다. 이 법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구성은 총 8개장 4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 방향,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4장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유통개선, 제5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제6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제8장 보칙 등이다. 이 중 제3장 농업구조개선은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 제2절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구성되어 양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특히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은 가족농의 경영 안정(제11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제12조), 전업농업인의 육성(제13조), 여성농업인의 육성(제14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제15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제16조),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제17조), 농업 관련 단체의 육성(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육성해야 할 농업인력의 모든 유형에 대해 각 조항에 언급하고 있다는 게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 점을 도외시하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그 구성 요소로 편제한 점은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다른 유형에 관한 조항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데 반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조항은 구체적인 실행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법률이 아니라 「농업·농촌기본법」에 포함시킨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생산법인에 관해서는 「농지법」, 농사조합법인에 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에 명시된 가족농·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

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업관련단체 등에 관한 규정은 ‘기본법’에서 제외하고 내용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농지의 소유자격에 관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3.2.2. 「농업·농촌기본법」 이외 타법 준용의 적절성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별문제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 「민법」의 조합 규정은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이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민법」의 조합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며(제711조),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712조),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713조). 반면,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제24조)”라고 조합원의 유한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 및 농협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에 유리한 조항이 많다.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이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농업·농촌기본법」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2.3.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요건의 적절성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의 2분의 1이어야 한다는 것만 구비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농업법인도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농업생산법인과 농산물 유통·판매법인의 구별이 없이 어떤 업종의 농업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은 첫째,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절반을 초과해야 하며(사업요건), 둘째, 법인의 구성원은 ① 농지의 권리를 제공한 개인과 법인 상시 종사자, ② 농지보유합리화법인·농협·지방공공단체, ③ 법인에 물자 공급 또는 노무 제공을 주거나 받는 개인·법인과 사업 원활화에 기여하는 자 등인데, 이 중 ③의 구성원은 총의결권의 1/4 이하, 각 구성원은 1/10이하로 제한하고(구성원 요건), 셋째,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구성원이 업무집행임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그 과반은 6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해야 한다(업무집행임원 요건). 여기서 농업생산법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업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은 농지소유 자격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농업정책에서도 필요한 자격 규정이다.

3.2.4.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 변경 문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해산에 관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법인의 해산에 대해서는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해 직권으로 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5조).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려면 조합법인의 청산과 주식회사의 신설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농업법인의 대부분이 조직 형태별 장단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후술하듯이 영농조합법인 중에는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농사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4.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4.1.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경과

농업정책은 1990년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당시 농업법인에 대해 개별 농가와 대등한 지원 및 법인으로서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였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농가 수준의 지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포함하여 농기계구입자금의 50%를 보조하였다.

1994년 6월에 수립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 추진 방안’을 토대로 12월에 제정된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995년부터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 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

을 지원하였다.

1996년 1월에는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하였다. 시설자금은 기존의 노후·불량 시설의 보수와 대체 및 시설 현대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출 기간은 2~5년으로 차등화하고, 이자율은 연리 5%였다. 운전자금은 생산·가공·유통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그 밖의 법인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하여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일시 상환하도록 하였다.

1997년 1월부터 부실 농업법인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기준을 출자액 1억 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 후 1~3년 운영실적 평가 등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실적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연리 5%의 농기업경영자금 2,000억원으로써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을 카드로 작성하여 농촌지도소와 농협·축협 등에 비치하고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도 및 경영상담 등을 강화하였다.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림사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요건과 사업별 지원요건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공통지원요건은 ①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개정 2004. 11), ②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기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③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④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⑤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법인(단,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인 법인과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은 법인 설립 후), ⑥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부적격 구성원 유무 또는 개인사업을 위한 위장설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할 것 등이었다. 사업별 지원요건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 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말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도록 한다. ③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

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 기술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12, 공통지원요건 ‘차’항). ④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의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한다. ⑥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⑦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 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⑧ 사업규모 5억 원 이상인 경우 재무제표 징구, ⑨ 사업규모 1억 원 이상인 경우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 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4.2.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세의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지방세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그리고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치가 있다<표 2-3>. 세제지원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간에 차이가 없으며, 다만 농외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소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2003.12.31 이전 설립 법인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한다는 것만 다르다.

문제는 세제지원의 경우 법인세,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부동산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 조합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의 적용 시한이 현재 2006년 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연장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표 2-3.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구 분		세제지원 내용
국 세	법인세	①농업소득: 면제 ②농업외소득: 면제와 감면 -영농조합법인: 면제(출자조합원당 연 1,2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 50% 감면(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03.12.31 이전 설립은 5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 면제 ②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제(2010년 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부 가 가치세	①영세율 적용: 비료, 농약,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2008.12.31까지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②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석유류: 면제-'07.6.30까지 공급분 75%감면-'07.7.1~'07.12.31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지 방 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①창업 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②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록세: 50% 경감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 중)
	법 인 등 록 세	법인설립 등기시: 면제(법 제266조 제7항, 2009.12.31까지, 개정 중)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 중)
	재 산 세	①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50% 감면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1일 중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 중)
조 합 원 감 면	양 도 소 득 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배 당 소 득 세	①농업소득의 배당소득세: 면제 ②농외소득의 배당소득세: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4.3.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하여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인의 정책적 위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방침이 확실하지 않다. 현행 농업법인제도는 1994년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가족농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구분되는 “적정규모의 법인경영체의 설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달라진 게 없다. 농업법인에 대해 농업정책은 1994~1996년에 대대적인 설립 지원을 통해 부실 농업법인이 양산되자 1997년 이후 정책사업의 자격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농업법인의 역할을 가족경영체제의 보완 형태로 설정하였다가 1993년의 ‘신농정’부터 가족농과 대등한 경영체를 넘어 가족농의 대체형태·발전 형태로 격상시켰으며, 2000년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농업정책의 기본시책의 하나로 명시한 이후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위상의 재정립이 긴요한 시점이다.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사업영역 확대가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비롯한 농업생산자를 대상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담하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는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 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가 되고 있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사업의 지원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 내에 어떤 농업법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운영 실태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체의 목록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 관할 등기사무소에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등기 이후의 변화상을 파악하지 못하며, 행정관서와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위원회의 확인과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즈음에 법인 설립자는 농업위원회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업법인은 농가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발전된 형태의 농업경영체이며 인정농업자이기 때문에 시·정·촌 당국은 우수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

넷째, <표 2-3>에서 보듯이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그 시한이 2006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 시한 연장이 필요하며, 나아가 한시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농업법인의 일반 현황

1.1.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개요

농어업법인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는 2000년 4월에 지정통계로 승인을 받아 2001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매년 조사·발표되고 있다. 조사 목적은 농어업법인사업체의 생산구조와 운영 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부문의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와 축산의 복합농업,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 등과 어업 부문의 어로어업·양식어업 분야의 법인 등이다.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모두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집단 자료는 법원등기소의 법인설립등기 명부를 기초로 수집하며,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추가 보완한다. 조사 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4월에 10일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통계청의 정규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자계식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공통조사 항목 12개(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 형태,

사업체구분, 종사자 수, 응답자, 경영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수입 또는 판매액, 경영실태), 농업법인 특성 조사 항목 4개(농업시설물 및 농기계보유 현황, 경영경지면적, 농작물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 어업법인 특성 조사 항목 2개(양식장시설, 보유어선 현황) 등이다. 농어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자료이지만, 이를 통해 전체적인 동향과 추이를 파악할 수는 있다.

1.2. 농업법인의 일반 현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망라한 농업법인의 총수는 2000년의 5,208개에서 2002년 5,598개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5,432개, 2005년 5,260개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표 3-1>. 영농조합법인은 2000년의 3,852개(농업법인 총수의 74.0%)에서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여 2005년에 4,293개(81.6%)였다. 농업회사법인은 2000년의 1,356개(농업법인 총수의 26.0%)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 967개(18.4%)였다. 요컨대, 농업법인의 수는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농업법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출자자공동운영의 비율은 2000년의 54.4%에서 2002년 50.5%, 2003년 52.2%, 2005년 54.0%로 매년 약간씩 증감하면서도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자 단독운영의 비율은 2000년의 10.2%에서 2003년 11.1%, 2005년 13.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대표자단독운영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반면, 출자자개별운영의 비율은 2000년의 35.4%에서 2001년 39.1%로 증가하였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32.5%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출자자개별운영은 법인의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농가 단위의 개별 경영과 다르지 않으므로 농업법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점에서 출자자개별운영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은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 농업법인사업체의 운영 형태별 추이

단위: 개, %

구 분	기준 연도	운영 중인 사업체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 개별운영 ¹⁾
합 계	2000	5,208 (100.0)	2,833 (54.4)	533 (10.2)	1,842 (35.4)
	2001	5,167 (100.0)	2,589 (50.1)	557 (10.8)	2,021 (39.1)
	2002	5,598 (100.0)	2,826 (50.5)	593 (10.6)	2,179 (38.9)
	2003	5,432 (100.0)	2,837 (52.2)	605 (11.1)	1,990 (36.6)
	2004	5,492 (100.0)	2,828 (51.5)	702 (12.8)	1,962 (35.7)
	2005	5,260 (100.0)	2,841 (54.0)	708 (13.5)	1,711 (32.5)
영농조합법인	2000	3,852 (100.0)	2,014 (52.3)	414 (10.7)	1,424 (37.0)
	2001	3,919 (100.0)	1,908 (48.7)	440 (11.2)	1,571 (40.1)
	2002	4,315 (100.0)	2,177 (50.5)	476 (11.0)	1,662 (38.5)
	2003	4,274 (100.0)	2,269 (53.1)	477 (11.2)	1,528 (35.8)
	2004	4,425 (100.0)	2,337 (52.8)	560 (12.7)	1,528 (34.5)
	2005	4,293 (100.0)	2,396 (55.8)	562 (13.1)	1,335 (31.1)
농업회사법인	2000	1,356 (100.0)	819 (60.4)	119 (8.8)	418 (30.8)
	2001	1,248 (100.0)	681 (54.6)	117 (9.4)	450 (36.1)
	2002	1,283 (100.0)	649 (50.6)	117 (9.1)	517 (40.3)
	2003	1,158 (100.0)	568 (49.1)	128 (11.1)	462 (39.9)
	2004	1,067 (100.0)	491 (46.0)	142 (13.3)	434 (40.7)
	2005	967 (100.0)	445 (46.0)	146 (15.1)	376 (38.9)
일반회사법인	2000	216	-	-	-
	2001	124	-	-	-
	2002		-	-	-
	2003	78	-	-	-
	2004	84	-	-	-
	2005	88	-	-	-
기 타	2000	333	-	-	-
	2001	53	-	-	-
	2002		-	-	-
	2003	278	-	-	-
	2004	280	-	-	-
	2005	278	-	-	-

주: 법인의 명칭만 있을 뿐 일체의 경영을 각자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정상 운영 사업체가 아니므로 조사표 작성 대상 사업체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형태를 보면, 출자자공동운영 비율은 2000년의 52.3%에서 2002년 50.5%, 2003년 53.1%, 2005년 55.8%로 매년 증감을 되풀이한 반면 출자자개별운영의 비율은 2001년 40.1%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5년 31.1%를 나타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단독운영 비율은 2000년의 10.7%에서 2005년 13.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 영농조합법인은 전체적으로 출자자개별운영이 줄고 대표자단독운영이 늘는 가운데 출자자공동운영의 비율은 유지됨으로써 운영 형태가 건실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자공동운영의 비율은 2000년의 60.4%에서 2005년 46.0%로 계속 감소한 반면, 대표자단독운영의 비율은 8.8%에서 15.1%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출자자개별운영의 비율은 2000년의 30.8%에서 2002년 40.3%, 2004년 40.7%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 38.9%로 약간 감소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개별운영 비율이 높아서 문제이지만 앞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사업체의 업종은 크게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2005년에 농업법인의 업종별 업체 수 비율의 동향은 농업생산업의 유지·정체, 가공판매의 완만한 증가 추세, 유통판매의 감소 후 증가 추세, 농업서비스업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요약할 수 있다<표 3-2>. 농업생산업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의 비율은 2000년의 42.3%에서 2003년 45.9, 2005년 43.5%로 증감하면서 정체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조직 형태별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생산 업체 수의 비율은 2000년의 47.4%에서 2005년 43.6%로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 업체 수의 비율은 2000년의 29.3%에서 2004년 45.7%로 증가 추세였다가 2005년 43.1%로 감소하였다. 가공판매 업체 수의 비율은 2000년의 10.0%에서 2005년의 14.0%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 중 영농조합법인의 업체 수 비율은 2000년 12.9%에서 2002년 12.5%로 감소하였다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5년 14.6%였다. 농업회사법인의 가공판매 업체 수 비율은 2000년의 2.3%에서 2005년 11.0%로 계속 증가하였다. 유통판매 업체 수의 비율은 2000년의 16.0%에서 2001년 10.8%로

크게 줄었다가 2002년 12.7%로 증가한 이후 2005년 15.2%로 증가 추세가 계속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의 유통판매 업체 수 비율은 2000년의 21.6%에서 2001년 13.8%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어 2005년 16.9%를 나타냈다. 농업회사법인의 유통판매 업체 수 비율은 2000년 1.5%에서 2005년 6.8%로 증가 추세가 계속되었다. 농업서비스업의 업체 수 비율은 2000년의 23.6%에서 2005년의 9.2%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최초 위탁영농회사로 출범하였던 농업회사법인의 서비스업 업체 수 비율은 2000년 64.5%에서 2005년 31.5%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표 3-2. 농업법인사업체의 업종별 추이

단위: 개, %

구 분	기준 연도	합 계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 업 서비스	기타
합 계	2000	3,366	1,425(42.3)	336(10.0)	538(16.0)	795(23.6)	272(8.1)
	2001	3,146	1,411(44.9)	337(10.7)	339(10.8)	633(20.1)	426(13.5)
	2002	3,419	1,508(44.1)	373(10.9)	435(12.7)	561(16.4)	542(15.9)
	2003	3,442	1,580(45.9)	433(12.6)	463(13.5)	450(13.1)	516(15.0)
	2004	3,530	1,609(45.6)	468(13.3)	507(14.4)	355(10.1)	591(16.7)
	2005	3,549	1,545(43.5)	498(14.0)	540(15.2)	326(9.2)	640(18.0)
영농조합법인	2000	2,428	1,150(47.4)	314(12.9)	524(21.6)	190(7.8)	250(10.3)
	2001	2,348	1,121(47.7)	307(13.1)	325(13.8)	188(8.0)	407(17.3)
	2002	2,653	1,224(46.1)	332(12.5)	409(15.4)	186(7.0)	502(18.9)
	2003	2,746	1,285(46.8)	381(13.9)	435(15.8)	172(6.3)	473(17.2)
	2004	2,897	1,320(45.6)	417(14.4)	478(16.5)	147(5.1)	535(18.5)
	2005	2,958	1,290(43.6)	433(14.6)	500(16.9)	140(4.7)	595(20.1)
농업회사법인	2000	938	275(29.3)	22(2.3)	14(1.5)	605(64.5)	22(2.3)
	2001	798	290(36.3)	30(3.8)	14(1.8)	445(55.8)	19(2.4)
	2002	766	284(37.1)	41(5.4)	26(3.4)	375(49.0)	40(5.2)
	2003	696	295(42.4)	52(7.5)	28(4.0)	278(39.9)	43(6.2)
	2004	633	289(45.7)	51(8.1)	29(4.6)	208(32.9)	56(8.8)
	2005	591	255(43.1)	65(11.0)	40(6.8)	186(31.5)	45(7.6)

주: 출자자개별운영을 제외한 농업법인의 조사결과임.

농업법인 전체의 1개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2000년의 1억 5천만 원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2억 4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의 1개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2000년의 1억 7천만 원 수준에서 2005년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농업회사법인의 1개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1억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농업법인 전체의 출자금 규모별 분포를 보면 5억 원 이상 업체 수의 비율이 2000년의 5.6%에서 2005년 11.3%로 계속 증가 추세였음이 주목된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업체의 수는 2000년의 1,920개 소(37.0%)에서 2001년에 1,318개소로 줄었으나 점유비율은 42.0%로 증가하여 이후 200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규모별 업체 수 비율의 추이는 농업법인 전체의 추이와 대동소이하다.

표 3-3. 농업법인의 출자금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기준 연도	합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 이상	법인당 출자금
합 계	2000	5,195	1,688(32.5)	1,296(24.9)	1,920(37.0)	291(5.6)	148.7
	2001	3,137	755(24.1)	807(25.7)	1,318(42.0)	257(8.2)	183.6
	2002	3,407	822(24.1)	864(25.4)	1,431(42.0)	290(8.5)	201.7
	2003	3,437	820(23.9)	853(24.8)	1,435(41.8)	329(9.6)	207.2
	2004	3,525	852(24.2)	849(24.1)	1,463(41.5)	361(10.2)	224.7
	2005	3,542	859(24.3)	825(23.3)	1,459(41.2)	399(11.3)	235.6
영농조합법인	2000	3,843	1,176(30.6)	889(23.1)	1,518(39.5)	260(6.8)	166.0
	2001	2,345	499(21.3)	547(23.3)	1,066(45.5)	233(9.9)	208.7
	2002	2,647	587(22.2)	637(24.1)	1,171(44.2)	252(9.5)	212.9
	2003	2,744	628(22.9)	655(23.9)	1,181(43.0)	280(10.2)	212.1
	2004	2,896	675(23.3)	693(23.9)	1,221(42.2)	307(10.6)	217.6
	2005	2,953	714(24.2)	676(22.9)	1,237(41.9)	326(11.0)	222.2
농업회사법인	2000	1,352	512(37.9)	407(30.1)	402(29.7)	31(2.3)	99.7
	2001	792	256(32.3)	260(32.8)	252(31.8)	24(3.0)	109.1
	2002	760	235(30.9)	227(29.9)	260(34.2)	38(5.0)	162.8
	2003	693	192(27.7)	198(28.6)	254(36.7)	49(7.1)	187.8
	2004	629	177(28.1)	156(24.8)	242(38.5)	54(8.6)	257.0
	2005	589	145(24.6)	149(25.3)	222(37.7)	73(12.4)	302.9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억 원 미만 업체 수의 비율이 2000년의 68%에서 2005년 50%로 감소하여 출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는 2000년의 93,744명에서 2005년 69,297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출자법인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개 법인당 평균 출자자 수는 2000년의 18명에서 2005년 19.6명으로 늘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2000~2005년에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 수가 법인당 평균 22~24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의 5~8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출자자 규모별로 영농조합법인의 63.9~61.7%가 5~9인, 19.2~17.9%가 10~49인이었으며, 10.8~13.0%가 5인 미만이었다. 5인 미만의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으로 출자자를 늘리지 않으면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에 해당되는 법인의

표 3-4.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와 출자자 규모별 분포

단위: 개, 명, (%)

구 분		출자 법인 수	출자자 수					출자자 규모별 분포			
			합계	농업인	비농 업인	생산자 단체	법인 당	5인 미만	5~9	10~ 49	50인 이상
합계	2000	5,195	93,744	91,877(98.0)	1,321	546	18	563	3,310	1,000	322
	2001	3,137	60,649	58,561(96.6)	2,065	23	19.3	347	2,006	564	220
	2002	3,407	63,251	59,758(94.5)	3,469	24	18.6	388	2,159	633	227
	2003	3,437	67,822	64,025(94.4)	3,763	34	19.7	435	2,121	644	237
	2004	3,525	69,363	65,394(94.3)	3,928	41	19.7	446	2,204	632	243
	2005	3,542	69,297	65,374(94.3)	3,876	47	19.6	462	2,200	637	243
영농 조합 법인	2000	3,843	85,671	84,321(98.4)	826	524	22.3	191	2,367	967	318
	2001	2,345	55,969	54,451(97.3)	1,495	23	23.9	143	1,441	543	218
	2002	2,647	59,161	55,941(94.6)	3,213	7	22.4	159	1,658	605	225
	2003	2,744	62,483	58,986(94.4)	3,484	13	22.8	184	1,714	615	231
	2004	2,896	64,590	60,997(94.4)	3,578	15	22.3	202	1,852	606	236
	2005	2,953	64,731	61,320(94.7)	3,384	27	21.9	225	1,886	606	236
농업 회사 법인	2000	1,352	8,073	7,556(93.6)	495	22	6	372	943	33	4
	2001	792	4,680	4,110(87.8)	570	-	5.9	204	565	21	2
	2002	760	4,090	3,817(93.3)	256	17	5.4	229	501	28	2
	2003	693	5,339	5,039(94.4)	279	21	7.7	251	407	29	6
	2004	629	4,773	4,397(92.1)	350	26	7.6	244	352	26	7
	2005	589	4,566	4,054(88.8)	492	20	7.8	237	314	31	7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비율이 2000년의 10.8%에서 2005년에 13.0%로 계속 증가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71.3~53.3%가 5~9인, 25.8~40.2%가 5인 미만이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인 미만 출자 법인의 비율이 2000년의 27.5%에서 2005년 40.2%로 급증하였음이 또한 주목된다. 한편, 2000~2005년에 농업법인 출자자의 98.0~94.3%가 농업인으로 비농업인 출자자는 많지 않았다.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는 2000년의 47,996명에서 2002년 26,149명으로 줄었다가 2003년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되어 2005년 29,901명을 나타냈다.

표 3-5.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와 종사자 규모별 분포

단위: 개, 명

구분	기준연도	사업체수	종사자합계	상근종사자			임시종사자	사업체당	종사자 규모별 분포			
				소계	출자자	피고용			5인 미만	5~9	10~49인	50인 이상
합계	2000	3,366	47,996	30,730	24,354	6,376	17,266	14.3	1,052	1,640	611	63
	2001	3,146	28,849	17,820	10,932	6,888	11,029	9.2	1,806	932	386	22
	2002	3,419	26,149	17,783	10,152	7,631	8,366	7.6	2,091	949	358	21
	2003	3,442	28,928	19,160	10,674	8,486	9,768	8.4	1,961	1,062	397	22
	2004	3,530	29,103	19,709	10,879	8,830	9,394	8.2	2,028	1,065	420	17
	2005	3,549	29,901	19,302	9,908	9,394	10,599	8.4	2,075	1,033	425	16
영농조합법인	2000	2,428	39,017	25,729	20,431	5,298	13,288	16.1	688	1,120	560	60
	2001	2,348	22,923	14,614	8,913	5,701	8,309	9.8	1,246	736	348	18
	2002	2,653	21,277	14,488	8,294	6,194	6,789	8	1,546	774	317	16
	2003	2,746	23,681	15,389	8,715	6,674	8,292	8.6	1,523	857	352	14
	2004	2,897	24,334	16,224	9,176	7,048	8,110	8.4	1,644	883	359	11
	2005	2,958	24,411	15,729	8,342	7,387	8,682	8.3	1,723	859	368	8
농업회사법인	2000	938	8,979	5,001	3,923	1,078	3,978	9.6	364	520	51	3
	2001	798	5,926	3,206	2,019	1,187	2,720	7.4	560	196	38	4
	2002	766	4,872	3,295	1,858	1,437	1,577	6.4	545	175	41	5
	2003	696	5,247	3,771	1,959	1,812	1,476	7.5	438	205	45	8
	2004	633	4,769	3,485	1,703	1,782	1,284	7.5	384	182	61	6
	2005	591	5,490	3,573	1,566	2,007	1,917	9.3	352	174	57	8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005년의 전체 종사자 중 19,302명(64.6%)이 상근종사자, 10,599명(35.4%)이 임시 및 일일종사자였으며, 상근종사자의 51.3%는 출자자이고 48.7%는 피고용자였다. 상근 및 임시 종사자를 합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05년에 8명 정도였다.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2000~2005년에 10인 미만 종사 업체가 전체 사업체 수의 88%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종사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58%이었으며,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에서 더 높았다.

농업법인 중 논·밭 등 경지를 보유한 업체는 2000~2005년에 전체 농업법인 수의 37.5~40.6%, 시설재배·노지재배 등 작물재배 업체는 38.2~41.1%로서, <표 3-2>의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수의 비율에 미치

표 3-6. 농업법인의 경지 보유 및 재배 면적 현황

단위: 개, ha

구 분		경지보유			작물재배 합계			노지재배		시설재배	
		업체	면적	업체당	업체수	면적	업체당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계	2000	1,271	17,529	13.8	-	-	-	862	15,724	503	1,601
	2001	1,222	13,596	11.1	1,239	14,434	11.6	833	12,228	515	2,206
	2002	1,331	18,579	14.0	1,343	19,586	14.6	955	17,274	504	2,312
	2003	1,399	15,517	11.1	1,413	16,995	12.0	1,009	14,627	535	2,367
	2004	1,390	15,681	11.3	1,412	17,177	12.2	1,004	14,365	560	2,812
	2005	1,331	14,966	11.2	1,354	16,214	12.0	987	14,142	498	2,072
영농 조합 법인	2000	948	11,814	12.5	-	-	-	577	10,315	464	1,526
	2001	895	8,868	9.9	909	9,610	10.6	527	7,544	459	2,066
	2002	1,010	10,331	10.2	1,022	11,070	10.8	658	8,912	455	2,157
	2003	1,075	10,105	9.4	1,088	11,176	10.3	721	8,952	478	2,224
	2004	1,085	10,222	9.4	1,108	11,769	10.6	731	9,261	491	2,508
	2005	1,082	10,103	9.3	1,104	11,217	10.2	764	9,256	451	1,960
농업 회사 법인	2000	323	5,715	17.7	-	-	-	285	5,409	39	75
	2001	327	4,729	14.5	330	4,824	14.6	306	4,684	56	140
	2002	321	8,249	25.7	321	8,516	26.5	297	8,362	49	154
	2003	324	5,412	16.7	325	5,819	17.9	288	5,675	57	144
	2004	305	5,459	17.9	304	5,408	17.8	273	5,104	69	304
	2005	249	4,863	19.5	250	4,998	20.0	223	4,886	47	112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지 못하였다. 이는 농업생산법인 중에 경지를 보유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작물재배 업체 수 및 재배면적과 경지보유 업체 수 및 보유면적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경지를 보유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업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농업생산법인에 한정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지보유 업체의 평균 보유면적은 11ha 정도로서 영농조합법인(9ha)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의 업체당 평균 보유면적이 2배에 달하였다. 작물재배면적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출자자 개별 운영을 제외한 농업법인 중 결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의 45.2%에서 2003년 55.6%, 2005년 61.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 비율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0년 51.4%에서 2003년 60.1%, 2005년 64.5%로 증가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 29.0%에서 37.9%, 46.7%로 증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낮았다.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의 비율은 2000년 36.0%에서 2003년 31.5%, 2005년 26.3%로 줄어들었으며<표 3-7>,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법인의 자산 규모는 2000년 11억원 수준에서 2003년 12억원, 2005년 13억원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농업회사법인의 자산규모가 2002년부터 커지기 시작하여 2003년 이후로는 영농조합법인의 규모를 능가하게 되었다<표 3-7>. 부채 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0년 8억 6천만 원에서 2003년 7억 8천만 원, 2005년 7억 9천만 원으로 감소 및 정채추세를 나타낸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 6억 4천만 원에서 12억원, 15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결산법인의 평균 자본 규모는 2000년 2억 9천만 원에서 2003년 3억 6천만 원, 2005년 4억 7천만 원으로 증가추세였는데,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자본 규모는 같은 기간 2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8억 1천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자본대비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80% 수준에서 180% 수준으로 낮아졌다.

결산법인의 평균 매출액 규모는 2000년 9억원에서 2003년 13억원, 2005년 17억원 수준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증가 폭이 커서 2003년부터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규모를 증가하게 되었다<표 3-7>. 그러나 영업이익의 규모는 증가추세이면서도 2005년에 겨우 4천만 원 수준이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05년에 결손법인을 포함할 경우 4,800만원, 결손법인을 제외할 경우 8,700만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결산법인의 자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1억원~5억원 규모 법인이 가장 많으나 2000년 38.4%에서 2003년 36.5%, 2005년 34.0%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10억 원 이상 법인의 비율이 같은 기간 30.6%에서 29.6%, 32.5%로 증가하고 있다<표 3-8>.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억원~5억원

표 3-7. 법인당 자산·부채·자본 현황 및 법인당 경영 성과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결산법인 수		자산	부채	자본	부채/자본 비율(%)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순이익	
		소 계	결손 법인							결손법 인포함	결손법 인제외
합계	2000	1,521	547	1,108	821	287	286.1	900	21	5	41
	2001	1,557	458	1,146	822	325	252.9	1,120	29	15	44
	2002	1,787	551	1,177	819	358	228.8	1,236	35	25	59
	2003	1,914	603	1,198	839	359	233.7	1,329	17	14	53
	2004	2,130	596	1,267	841	427	197.0	1,529	47	43	80
	2005	2,180	573	1,352	881	471	187.0	1,709	42	48	87
영농 조합 법인	2000	1,249	435	1,160	860	300	286.7	903	20	5	41
	2001	1,323	397	1,192	857	335	255.8	1,143	32	17	47
	2002	1,530	458	1,165	820	345	237.7	1,227	32	24	56
	2003	1,650	496	1,129	783	346	226.3	1,282	20	17	49
	2004	1,853	491	1,167	770	397	194.0	1,434	43	42	74
	2005	1,905	487	1,214	793	422	187.9	1,527	34	41	72
농업 회사 법인	2000	272	112	868	643	225	285.8	883	25	5	38
	2001	234	61	885	619	266	232.7	989	13	1	27
	2002	257	93	1,251	817	434	188.2	1,293	50	26	82
	2003	264	107	1,629	1,192	437	272.8	1,626	2	0	83
	2004	277	105	1,938	1,314	624	210.6	2,162	70	50	128
	2005	275	86	2,303	1,492	811	184.0	2,971	102	102	203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규모 법인의 비율이 2000년의 50%에서 2005년 32.4%로 감소한 반면 10억 원 이상 규모 법인의 비율은 2000년의 18.8%에서 2005년 38.9%로 급증하였다. 결산법인의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부채 1억원 미만 법인의 비율이 2000년 30.4%에서 2003년 33.8%, 2005년 32.3%로 증가하다 감소하였고, 1억원~5억원의 비율은 32.2%에서 30.5%, 30.0%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10억원 이상의 비율이 22.6%에서 21.9%, 22.8%로 감소하다 증가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부채 1억원 미만의 비율이 2000년 57.7%에

표 3-8. 자산·부채·자본 규모별 법인 수

단위: 개소, %

구분		결산 법인 수	자산				부채				자본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합계	2000	1,521	12.3	38.4	18.7	30.6	30.4	32.2	14.8	22.6	38.9	44.7	10.1	6.4
	2001	1,557	12.2	38.3	18.9	30.6	30.3	32.8	14.8	22.1	36.2	44.1	11.5	8.2
	2002	1,787	14.0	37.2	18.7	30.0	32.2	30.6	15.6	21.7	37.4	43.1	11.0	8.4
	2003	1,914	15.2	36.5	18.7	29.6	33.8	30.5	13.8	21.9	38.6	42.0	10.2	9.2
	2004	2,130	15.2	34.9	19.4	30.4	33.8	29.6	15.1	21.5	37.1	41.1	11.6	10.2
	2005	2,180	13.3	34.0	20.1	32.5	32.2	30.0	15.0	22.8	34.4	40.6	13.5	11.5
영농 조합 법인	2000	1,249	9.4	35.9	21.5	33.2	24.4	34.6	16.6	24.4	35.4	46.8	11.1	6.6
	2001	1,323	10.3	36.6	20.3	32.9	26.3	34.3	15.6	23.7	34.0	44.8	12.7	8.5
	2002	1,530	12.0	36.7	20.3	31.0	29.0	32.3	16.1	22.5	35.8	44.0	12.2	8.0
	2003	1,650	13.8	36.8	19.6	29.8	32.3	31.8	14.1	21.9	37.0	43.2	11.2	8.7
	2004	1,853	14.4	35.4	20.1	30.1	33.1	30.9	14.8	21.1	36.3	41.8	12.3	9.6
	2005	1,905	13.3	34.3	20.8	31.6	32.5	30.7	15.4	21.4	33.8	41.4	14.3	10.5
농업 회사 법인	2000	272	25.4	50.0	5.9	18.8	57.7	21.3	6.6	14.3	54.8	34.9	5.1	5.1
	2001	234	23.1	48.3	11.1	17.5	53.0	24.4	9.8	12.8	48.7	39.7	4.7	6.8
	2002	257	26.1	40.5	9.3	24.1	51.0	20.2	12.5	16.3	46.7	38.1	4.3	10.9
	2003	264	23.9	34.8	12.9	28.4	42.8	22.7	12.5	22.0	48.5	34.1	4.5	12.9
	2004	277	20.6	31.8	15.2	32.5	37.9	20.9	17.0	24.2	42.6	36.1	7.2	14.1
	2005	275	13.8	32.4	14.9	38.9	29.8	25.8	12.4	32.0	38.5	34.5	8.4	18.5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서 2005년 29.8%로 급감한 반면 10억 원 이상의 비율이 14.3%에서 32.0%로 급증하였다. 결산법인의 자본금규모별 분포를 보면, 10억원 이상 법인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70% 이상이 자본금 5억원 미만이었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법인의 비율이 2000년 21.8%에서 2003년 29.3%, 2005년 33.7%로 증가추세이지만, 결산법인 전체의 50% 이상이 5억원 미만에 머물러 있다<표 3-9>. 더욱이 영업이익 적자인 법인의 비율이 2000년 37.1%에서 2003년 36.5%, 2005년 36.1%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며,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의 비율도 2000년 52.2%에서 2003년 52.6%, 2005년 50.0%로 별 변화가 없었다.

표 3-9.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단위: 개소, %

구분		결산 법인 수	매출액				영업이익			
			1억 미만	1억~ 5억	5억~ 10억	10억 이상	적자	1억 미만	1억~ 5억	5억 이상
합계	2000	1,521	33.7	32.0	12.5	21.8	37.1	52.2	9.8	0.9
	2001	1,557	29.3	31.5	13.7	25.6	32.4	55.4	11.2	1.0
	2002	1,787	27.4	29.2	14.9	28.4	35.3	52.9	10.9	1.0
	2003	1,914	28.3	28.4	14.1	29.3	36.5	52.6	10.2	0.7
	2004	2,130	27.5	29.1	12.7	30.7	34.8	51.7	11.2	2.3
	2005	2,180	25.7	27.3	13.3	33.7	36.1	50.0	11.9	2.0
영농 조합 법인	2000	1,249	29.2	33.1	14.6	23.1	37.1	51.6	10.8	0.6
	2001	1,323	26.1	32.0	14.9	27.0	33.5	53.7	11.8	1.0
	2002	1,530	25.3	29.5	15.9	29.2	35.8	51.8	11.7	0.8
	2003	1,650	26.7	28.7	14.8	29.8	35.1	53.8	10.5	0.6
	2004	1,853	26.2	29.6	13.5	30.7	33.8	53.0	11.3	1.9
	2005	1,905	24.7	27.8	14.2	33.3	35.8	51.0	11.6	1.6
농업 회사 법인	2000	272	54.0	27.2	2.9	15.8	37.5	55.1	5.1	2.2
	2001	234	47.4	28.2	6.8	17.5	26.5	65.0	7.7	0.9
	2002	257	40.1	27.2	8.9	23.7	32.7	59.5	5.8	1.9
	2003	264	38.6	26.1	9.1	26.1	45.5	44.7	8.7	1.1
	2004	277	36.1	25.6	7.6	30.7	41.9	43.0	10.8	4.3
	2005	275	32.4	24.0	7.6	36.0	37.8	43.3	13.8	5.1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농업법인의 사례 조사 분석

2005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3,500여 개의 농업법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해서만 앞에서 보았듯이 농업법인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관한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또는 경영상의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사례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사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는데, 이 장 2절에서 사례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3절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 조사 방법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례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한 다음 그 주제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농업법인을 찾아 면접조사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의 사례 조사가 대체로 다양한 유형의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성공 요인 및 애로 사항 등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이 연구는 제2장에서 파악한 현행 농업법인 관련 제도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이 실제 농업법인 사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제약요소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주제와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제도적으로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를 영농조합법인과 4가지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법인의 설립자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조직 형태를 선정하였는지, 조직 형태별 특성이 경영 특성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였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지 등이 관심사항이다.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도정업을 하는 ‘소사뜰영농조합법인’과 합자회사 ‘오성농업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일한 시·군역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직 형태의 두 사업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둘째, 농산물 생산 농가 또는 생산법인과 농산물 판매법인의 관계에 관

한 문제이다. 농업생산법인 또는 생산 농가와 유통·판매·가공 법인의 관계를 보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 농가들이 유통·판매법인을 설립한 유형으로서, 농업회사법인 (주)로즈피아, 영농조합법인 참다래유통사업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농산물 가공·유통법인이 생산 농가를 계열화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지배하는 사례로서 닭고기 가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하림과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을 들 수 있다. ③ 농자재 제조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사례로서 (주)게비스랜드가 주목된다. ④ 마와 연근의 판매사업을 하는 한얼영농조합법인은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직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식회사 로즈피아와 게비스랜드, 영농조합법인 한얼 등을 조사하였다. 참다래유통사업단·하림·학사농장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1농가1법인 또는 가족법인의 문제이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은 대부분 부자·부부 등 직계가족 또는 1호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 1농가 1법인 또는 가족 중심의 농업법인이 드물고, 그나마 법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미비하여 실제로는 농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영농후계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농주체로서 가족농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농가의 법인화를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의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은 1호1법인 또는 가족법인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법인의 사례로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소재 합명회사 삼청영농법인에 관해 살펴보았다.

넷째, 지역 농협과 농업법인의 관계에 관해서이다.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농산물의 판매를 주로 하는 농업법인, 특히 다수의 생산자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산물 판매 중심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확보 및 판매를 둘러싸고 경합관계를 갖게 된다.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농협의 하위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지역 농협이 다양한 경제사업을 위하여 독립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농업법인은 농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하위의 소규모 조합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지 않고, 지역 농협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우리의 경우 지역 농협이 설립하는 자회사든 관내 농업인 등이 설립한 농업법인이든 지역 농협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경남 김해시와 밀양시의 지역 농협과 단감영농조합법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 전환: 소사뜰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대별되며, 농업회사법인은 다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로 구분되는데, 구성원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직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등을 비교한 다음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형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유형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지역(경기도 평택시)에서 동일한 사업(도정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오성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과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이다. 각 사업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성농업회사법인은 1990년 위탁영농회사로 출범하여 1994년 도정공장을 설립하고 RPC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 사일로와 창고를 건립하였다. 2006년 당시 매월 백미 80kg 들이 2,500가마를 매출하여 매출액이 70~80억원에 달한다. 오성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는 6인, 출자액은 당초 1억 2천만 원에서 현재 7억원으로 늘었다. 현재도 위탁영농을 계속하는데, 이는 원하는 품종의 벼를 재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재배를 하고 그 농가의 작업을 대행하기 위해서이다.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은 1995년 논 경작면적 평균 2만평에 달하는 5인의 농업인에 의해 결성되었다. 영농조합 결성 당시 조합법인은 도정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조합원 생산 벼 이외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1996년 별도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경작면적은 조합원의 경작지 외에 임차경작 50정보, 작업수탁 370정보에 달하였다. 별도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였던 것은 1,200평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도정공장 부지로 전용하는데, 600평씩 2회에 걸쳐 허가받으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후 1997년에는 사일로와 저온저장고를 건립하였으며, 청북·팽성·소사뜰 등 3개의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재배하면서 종자공급·작업수탁·도정까지 맡아 하며, 수확기에 수매자금이 부족하여 도정료를 받고 수탁판매 하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1998년에 회사법인을 폐지하고 영농조합에 통합하였다.

합자회사 오성농업회사법인과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의 조직 형태는 다르지만 계약재배, 위탁작업, 도정 및 판매의 과정과 방법은 동일하고, 의사결정 또한 대표자 단독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간의 차이는 도와 시의 정책자금 보조가 영농조합법인에 많은 반면 대출시 조합원 전원이 연대보증 및 이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합자회사 오성농업회사법인과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은 모두 법인의 조직 형태를 비교 검토한 다음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은 위탁영농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였다가 폐지하고 조합법인에 통합하였는데, 원칙은 통합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은 장차 기업형 경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영농조합을 해산한 다음 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의 해산 절차 없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농산물 생산법인(농가)의 판매법인 설립: (주)로즈피아

농산물생산농가 또는 생산법인과 농산물 판매법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전북 임실군의 농업회사법인 (주)로즈피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월 전남·북의 장미 유리 온실 양액재배 농가 15명이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후 7월에 농업회사법인 (주) 로즈피아를 창립하였다. 현재 임직원은 임원 5인(대표이사 1인과 이사 4인), 직원 35인(임시직 28인) 등이다. 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한 생산 농가는 당초 전북 8개, 전남 4개 영농조합법인의 농가 17호에서 현재는 전북 3개, 전남 1개, 충남 1개 영농조합법인으로 감소하였다. 자본금은 2억 5천만원(하우스 1평당 5,000원 1주의 비율로 출자)이다. 장미재배시설은 참여 농가의 첨단유리온실 35,000평이며, 회사의 시설은 공동 선별장 시설로서 선별장 부지 2,300평에 건평 330평, 냉장저장고 100평, 최첨단 선별기, 냉동탑차 4대, 포장기 30대 등이 있다. 회사의 취급 품목은 장미를 중심으로 백합, 프리지어, 아이리스 등이다. 매일 회사의 5톤 냉장차 2대가 참여 농가를 순회 방문하여 장미 등을 수집한 다음 공동 선별·포장 후 주 3회 배편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판매대금은 농가에 월1회 정산 지급한다. 로즈피아는 공동 선별 수수료로 매출액의 10~15%를 수납하여 운영비로 충당한다. 2004년도 장미 수출액은 610만 달러(전국 장미 수출액의 51%)에 달하였다.

(주)로즈피아의 문제점은 ① 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해 간섭하여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② 이사들이 합의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점, ③ 이사 개개인이 농장경영자이므로 자신들이 세운 판매회사의 장기발전보다 개별 농장의 이익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 ④ 적립금 등 회사 자체자금이 없어 사업 확대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이지만 법인 자체의 이익 증대가 아니라 참여 농가의 이익 증대를 위해 활동한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그 결과 생산 농가에 종속되어 회사 자체의 성장·발전을 도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3. 농자재 제조업체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주)게비스랜드

농외자본의 농업 참여는 물론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주)게비스랜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

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 경과를 보면,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게비스 그룹의 양진석 회장은 1998년에 자회사로 게비스 코리아를 설립하고, 2002년 12월부터 적포도주 찌꺼기를 활용한 미생물 천연비료 바이오크래프트의 특허 등록을 한 다음 경남 사천에 제조공장을 준공하였다. 이어 2003년 11월 친환경농산물유통회사 (주)게비스랜드를 설립하고, 2004년 3월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에 12만평의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조합법인 나투어(Natur)를 설립하였다. 농산물 유통회사인 (주)게비스랜드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제도적 정책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2004년 8월에는 경남 거창군과 친환경유기농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다음 9월에는 경남 남해군과 친환경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 12만평의 농지를 확보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거창군과 남해군에 각각 40ha의 논을 임차하였는데, 농지임차료로 평당 1,350원~1,600원(거창), 2,300원~2,500원(남해)씩 5년분을 선불하고, 15~30년의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논외의 전국 평균 임차료 평당 800~1,000원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 것은 농지 집단화와 장기 임차 때문이며, 남해군은 2모작이 가능하므로 더 비싸게 하였다. 또한, 거창군과 남해군의 농지소유자 각 60명 중 20~30명은 농지 임대 후 일당(남자 55,000원, 여자 27,000원)을 받고 거의 매일 농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쌀과 각종 유기농 채소 등을 생산하여 전량 유통회사 게비스랜드에 의해 회원제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며, 2006년 8월부터는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고,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유기농 채소를 공급하고 있다. 회원은 한 달에 최소구입비 72,000원을 회비로 납부해야 하는데,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500여명, 3~4개월분을 납부한 준회원이 15,000여명에 달한다. 회원에 대한 농산물의 배송은 한진택배·CJ택배 등을 통해 매주 1회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회원 부족으로 생산물이 남아서 가락동 시장에 일반 농산물로 판매하거나 고아원에 기증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생산·공급량이 회원 수요량에 비해 10-20% 정도 과잉 상

태이나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비스랜드는 친환경 영농자재 생산업체인 (주)게비스 코리아를 모체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주)게비스랜드와 친환경농산물생산업체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자재공급-농산물생산-판매에 이르는 계열화를 이룸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지를 임대하고 임노동에 종사하는 현지 농업인에게는 임대료와 임금 소득을 올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창군 및 남해군에는 친환경농업단지를 중심으로 관광농업을 비롯한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유통회사가 아직 적자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주)게비스랜드의 최고경영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유통회사가 흑자를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지만 언제쯤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친환경 영농자재를 생산·판매하던 농외자본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별도의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서 빠른 시간 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업체의 존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4. 농산물 유통법인의 농산물 생산: 한얼영농조합법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에 있는 한얼영농조합법인은 2003년 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실제 출자자 4명과 명목상의 출자자 1인 등 5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액은 5,000만원이었다. 현재 조합원 7명 중 출자자는 6명이며, 그 중 3명이 출자액 1억원의 90% 이상을 출자하였다. 농산물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이 법인의 판매품목은 연근·우영·마·셀러드용 양배추 등이다. 판매용 농산물의 확보 방식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계약재배를 주로 하고, 시장매입과 직접생산을 겸한다. 연근은 계약재배와 시장매입, 마의 경우 계약재배와 직접생산, 양배추는 계약재배와

직접생산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2006년에 마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경남 산청에 5,000평, 충남 부여에 1,000평, 합계 6,000평을 임차하였다. 또한 양배추를 재배하기 위해 강원도 횡계에 고랭지 5,000평을 임차하였다. 임차농지의 경작은 상근자 12명이 맡고 있다. 농산물 유통법인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이유는 계약재배 농가들이 계약을 어기고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여건이 되는대로 직접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법인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여 생산법인을 겸하게 될 경우 판매물량을 질·양 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고용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얼영농조합법인의 경우 6~8월은 단경기로 판매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유희화한 판매 인력을 농작물 재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얼영농조합법인은 고용 인력을 연중 활용하기 위하여 판매품목의 다양화 대신 생산참여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이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산물량 증가와 판매선 상실이라는 이중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농산물 생산법인이 판매를 겸하거나 농산물 판매법인이 생산을 겸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생산·판매의 상대 법인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 가족법인 사례: 삼청영농법인(합명회사)

삼청영농법인 대표 이승규(63세)는 1990년대 초에 동네사람들과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하였다가 5년 전에 구성원을 가족으로 교체하였다. 현재 법인의 구성원은 이승규씨와 아들·며느리 등 직계가족 5인이다. 법인의 영농면적은 경북 칠곡군과 대구시 달성군 등 2개 군 5개 읍·면의 논 100ha로서, 쌀 6천 가마를 생산하고 있다. 삼청영농법인이 생산·판매하는 미곡은 일품벼 품종으로서 ‘한백황토쌀’이란 브랜드로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

2004년에 귀농한 2남과 며느리가 영농에 참여하며, 월 15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정하지 않고, 아들은 월급이라기보다 용돈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법인이라기보다는 농가와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합명회사로 되어 있는데, 무한책임이나 유한책임 등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법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6. 지역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의 갈등 사례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과 경합되는 품목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의 경우 대체로 지역 농협과 경합관계를 갖게 된다. 예컨대, 밀양시 ‘무안영농조합법인’과 지역 농협 간에 단감의 판매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는데, 양자의 협의에 의해 판매 실적은 지역 농협의 실적으로 하는 대신 지역 농협은 영농조합법인조합원의 정산 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또한 경남 함안군 칠북단감영농조합법인의 단감을 서울에서 가장 알아주는데, 지역 농협의 단감 판매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평택시의 오성농업회사법인과 소사뜰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관내 농협RPC와 경합관계에 있어 농협의 대의원이나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 민간 도정공장은 농협RPC의 수매가가 결정된 후 그보다 80kg 1가마당 1만원 정도 낮게 매입하며, 농협RPC의 경우 수매자금을 지원받는 데 반해 일반 도정공장은 그렇지 못해 불리하다.

3. 농업법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농업법인과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원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농업법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문항은 제외하고,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과 관련되는 문항에 중점을 두었

다. 7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우송한 결과 58개 업체로부터 회신이 있었다. 58개 업체 중 40개 업체가 영농조합법인, 14개 업체가 농업회사법인, 무응답 및 기타가 4개 업체였다. 우편조사 결과를 집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의 유리한 판매 및 가공이 44.8%, 경영체의 발전이 19.0%, 경영규모 확대 15.5%의 순이었다<표 3-10>. 또한 법인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사업 분야로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38.4%, 농축산물 생산 28.9%, 농축산물 가공 21.1% 순이었다. 응답한 농업법인의 다수가 농축산물 유통·판매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농업법인의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응답한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농산물유통·농산물가공·시설임대 등의 어느 한 가지 사업을 하는 법인보다 생산과 유통·가공을 겸하는 업체가 많았다. 또한 생산과 유통·가공을 겸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 30.2%, 필요하다 43.4%, 합계 73.6%로 압도적이었다.

표 3-10. 농업법인을 설립한 목적

단위: 개소, %

구분	빈도수	비율
경영규모 확대	9	15.5
노동력 부족 해소	1	1.7
정책자금 지원	5	8.6
시설 및 농기계 공동이용	3	5.2
농산물의 유리한 판매 및 가공 목적	26	44.8
경영체(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11	19.0
농작업 대행	1	1.7
기 타	2	3.5
합 계	58	100.0

농업법인의 출자자(또는 조합원) 수는 5~10명 미만 43.1%, 5명 미만 29.3%로 10명 미만이 72.4%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20명 이상도 22.4%에 달하였다. 또한 출자자의 법인 경영에 대한 참여 형태를 보면, “개별적으로 영농하면서 법인경영에 참여한다” 51.8%, “농업법인 경영은 사실상 대표자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명목상 조합원일 뿐이다” 14.3%로 나타났다. 대표자 외 출자자는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응답도 8.9%였다. 출자자에 대한 배당 실태를 보면, 수입이 없어 배당하지 못한다 31.6%, 수익의 일부를 출자액 비율로 배당한다 24.6%, 배당하지 않고 적립한다 21.0% 등이었다. 적립을 하든 수입이 없든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이 52.6%, 배당을 하는 법인이 36.9%였다.

농업법인의 경영자들은 모두 농업법인이 농가에 비해 유리한점이 많다고 답한 반면 불리한 점은 출자자간 의견 대립(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7.1%는 농업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34.0%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81.1%가 농업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농을 법인화하는 1호 법인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34.6%, 찬성 34.6%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1.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판매 검업의 필요성

단위: 개소, %

구분	빈도수	비율
반드시 필요하다	16	30.2
필요하다	23	43.4
검하지 않아도 된다	7	13.2
검하면 안 된다	1	1.9
상관없다	3	5.6
잘 모르겠다	2	3.8
기 타	1	1.9
합 계	53	100.0

농업법인이 갖추어야 할 제도의 의무화에 대해 54.7%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적극 찬성 50.0%, 찬성 32.1%였다. 농업법인 대표의 대부분이 농업법인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협과 농업법인의 관계에 대해 50.0%는 협조관계라고 하였으나, 19.7%는 농협이 농업법인에 대해 배타적, 8.9%는 경쟁 관계라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45.6%는 농협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 반면, 조합원 가입 31.6%, 준조합원 가입 19.3% 등으로 농업법인의 절반 정도는 지역 농협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출자자(조합원)의 법인경영에의 참여 방식

단위: 명, %

구 분	빈도수	비율
개별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만 종사한다	5	8.9
개별적으로 영농하면서 농업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다	29	51.8
개별적으로 영농하고 농업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5	8.9
법인의 경영은 대표자 단독, 그 외 출자자는 종업원	5	8.9
법인 경영은 사실상 대표자 단독, 그 외 출자자는 명목뿐	8	14.3
기타	4	7.2
합 계	56	100.0

표 3-13. 농업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비율
반드시 필요하다	25	47.1
필요하다	18	34.0
불필요하다	4	7.6
잘 모르겠다	6	11.3
합 계	53	100.0

표 3-14. 법적 요건을 갖춘 법인에 정책지원 의견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비율
적극 찬성	28	50.0
대체로 찬성	18	32.1
반대	5	8.9
적극 반대	-	-
잘 모르겠다	4	7.2
기타	1	1.8
합 계	56	100.0

표 3-15. 1호1법인(농가단위의 법인)의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비율
적극 찬성	19	34.6
찬성	19	34.6
반대	6	10.9
적극 반대	2	3.6
잘 모르겠다	9	16.3
합 계	55	100.0

4. 농업법인의 문제점 요약

농업법인에 대한 사례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총괄하여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가 영농조합법인,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으로 다양하며 유형별로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데, 농업법인은 대체로 설립 당시 조직 형태에 관해 비교 검토하거나 상담을 거친 다음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소사뜰영농조합법인처럼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그 법적 절차가 쉽지 않아 실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농업법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등에 조직 변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일선 시·군에 농업법인 설립과 변경 등에 관한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생산법인(농가)과 농산물 유통법인 모두 농산물 생산과 유통·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생산과 유통을 겸하는 유형을 구분하면, ① 유통법인이 판매 물량의 일부를 직접 재배하거나 반대로 생산법인이 자기 생산물 외에 타인 생산물까지 수집하여 직접 유통·판매에 나서는 겸업형, ② 유통법인이 생산 농가와 계약을 맺어 재배한 농산물을 매입 판매하는 계약재배형, ③ 생산 농가 또는 생산법인이 별도의 전문 유통·판매법인을 설립하거나 반대로 유통·제조법인이 별도의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자회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법인의 자본 및 사업 규모가 작은 단계에서는 ①과 ②의 형태가 주를 이루지만, 법인이 성장·발달함에 따라 ③의 형태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인의 발전 단계까지 고려하면 농업생산과 유통·판매의 관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법인과 농산물 유통·서비스법인의 구별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법인의 총매출액 중 농업생산의 비중이 50% 혹은 60% 이상이면 농업생산법인, 그 이하면 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한다. 생산법인과 서비스법인의 구분에 총매출액 중 농업생산의 비중 외에 총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1호1법인 또는 가족법인이 희소하며, 가족법인이 형성된 경우에도 법인경영이 갖춰야 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가족농체제와 별로 다르지 않다. 반면,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1호1법인 형태가 농업법인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농정의 기본시

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법인제도의 방향과 정책적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농조합법인의 무한책임 제도는 유한책임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무한책임제로 인해 조합법인의 부채가 조합 임원진 개개인의 재산 압류로 이어지고,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한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로 변경하거나, ‘유한책임’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 농협 등 농협과 농업법인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법인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법인과 농협이 동일 업종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경쟁 관계를 갖게 되며, 그 경우 규모가 큰 농협이 농업법인을 배척하거나 견제하는 일이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지역 농협이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독일

1.1. 농업경영체 현황

1.1.1.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말한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종사하는 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에 속하지 않는다.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는 크게 ① 개인경영체, ② 인적회사, ③ 법인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이는 일반 산업부문의 경영체의 법적 형태와 동일하다. 여기서 농가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체로 간주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 이 회사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연합체, 즉 인적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회사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발생한 이윤은 적립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바로 배분된다. 인적회사에는 「민법」상의 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속한다.

법인은 구성원들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독자적인 인격(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여기에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자본회사와, 등록된 협동조합인 등록조합이 속한다.

1.1.2. 농업경영체 구성 현황

2005년 현재 독일의 농업경영체 수는 약 396,000개소인데, 이중 개인경영체(농가)가 371,400개소로 전체의 93.9%를 차지하고 있다. 인적회사와 법인은 각각 18,800개소, 5,300개소로 수적 비중이 4.7%와 1.4%에 불과하다<표 4-1>. 하지만 경작지 비중은 개인경영체가 68.9%, 인적회사 13.5%, 법인 17.6%로 인적회사와 법인의 보유면적이 전체 경지의 30%를 초과한다<표 4-2>. 경영체당 평균경지면적은 개인경영체가 31.6ha, 인적회사 122.6ha, (사법상의) 법인이 647.5ha로 나타난다.

표 4-1.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단위: 천 개소, %

구분	1999		2001		2003		2005	
	경영체 수	(비율)	경영체 수	(비율)	경영체 수	(비율)	경영체 수	(비율)
개인경영체	450.4	(95.4)	423.7	(94.8)	396.7	(94.3)	371.4	(93.9)
인적회사	16.1	(3.4)	17.8	(4.0)	18.7	(4.5)	18.8	(4.7)
-민법상 회사	13.7	(2.9)	14.8	(3.3)	15.4	(3.7)	15.5	(3.9)
-합명회사	0.1	(0.0)	0.1	(0.0)	0.1	(0.0)	0.1	(0.0)
-합자회사	0.9	(0.2)	1.0	(0.2)	1.1	(0.3)	1.2	(0.3)
-기타 회사	1.3	(0.3)	1.9	(0.4)	2.1	(0.5)	2.0	(0.5)
사법상의 법인	4.5	(1.0)	4.5	(1.0)	4.5	(1.1)	4.6	(1.2)
-등록조합	1.4	(0.3)	1.3	(0.3)	1.2	(0.3)	1.2	(0.3)
-유한회사	2.4	(0.5)	2.5	(0.5)	2.6	(0.6)	2.6	(0.7)
-주식회사	0.1	(0.0)	0.1	(0.0)	0.1	(0.0)	0.1	(0.0)
-기타 법인	-	-	0.6	(0.1)	0.6	(0.2)	0.6	(0.2)
공법상의 법인	0.9	(0.2)	0.9	(0.2)	0.7	(0.2)	0.7	(0.2)
합계	472.0	(100)	446.9	(100)	420.7	(100)	395.5	(100)

자료: BMVEL, Agrarpolitischer Bericht, 각년도

독일에서 개인경영체인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인적회사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농가 수는 1999년 약 45만 호에서 2005년에 약 37만 호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에 인적회사는 16,100개소에서 18,800개소로 늘어났다. 인적회사 중에는 특히 민법상 회사(GbR)가 많이 늘어났다.

농업경영체 구성에 있어서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은 커다란 지역적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서독지역은 전형적인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인적회사와 법인을 합한 농업경영체의 비율이 약 5%이고, 보유경작지 비율이 약 10%에 불과하다. 특히 법인은 경지면적과 경영체 비중에서 1% 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있다<표 4-3>. 반면에 동독지역은 대규모의 법인이 농업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수적으로 11.2%를 차지하는 법인경영체가 동독지역 경지 51.9%를 경작하고 있다.

표 4-2. 독일 농업경영체별 경지 구성

단위: %, ha

구분	1999		2001		2003		2005	
	경지 비율	평균경지 면적	경지 비율	평균경지 면적	경지 비율	평균경지 면적	경지 비율	평균경지 면적
개인경영체	69.9	26.6	69.3	27.9	69.1	29.6	68.9	31.6
인적회사	12.0	127.7	12.7	122.1	13.2	119.6	13.5	122.6
-민법상 회사	9.5	118.8	10.1	117.1	10.6	117.2	10.9	120.1
-합명회사	0.0	34.6	0.0	35.1	0.0	69.1	0.0	77.9
-합자회사	2.4	430.3	2.4	404.5	2.4	349.5	2.4	333.9
-기타 회사	0.1	14.9	0.1	13.1	0.1	12.2	0.2	13.6
사법상의 법인	17.8	676.9	17.6	666.5	17.5	653.7	17.3	647.5
-등록조합	10.0	1,251.6	9.6	1,245.8	9.3	1,305.3	8.9	1,289.8
-유한회사	7.1	506.7	7.3	506.2	7.5	491.3	7.6	488.8
-주식회사	0.6	874.3	0.6	887.8	0.6	880.5	0.6	968.3
-기타 법인	-	-	0.2	42.1	0.2	44.9	0.2	51.6
공법상의 법인	0.3	64.8	0.3	62.5	0.3	70.8	0.3	76.6
전체	100	36.3	100	38.2	100	40.4	100	43.1

자료: BMVEL, Agrarpolitischer Bericht, 각년도

표 4-3. 동서독지역 간의 농업경영체 구성 비교 (2005)

단위: %, ha

구분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법인		
	경영체 비율	경지 비율	평균경지 면적	경영체 비율	경지 비율	평균경지 면적	경영체 비율	경지 비율	평균경지 면적*
서독지역	95.2	89.8	29.6	4.2	9.2	68.3	0.5	1.0	49.8
동독지역	77.9	25.8	62.4	10.9	22.3	386.7	11.2	51.9	881.9

* 주: 사법상의 법인에 해당

자료: BMVEL(2006), Agrarpolitischer Bericht, 2006.

1.1.3.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생산성 및 성과 비교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보여 주는 지표로는 노동력 단위로 환산되는 노동수입과 이윤을 합한 노동단위별 소득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 2002년까지 통계자료는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여 3가지 법적 유형별 소득지표를 제공하였다. 이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 <표 4-4>인데, 여기에는 인적회사의 노동단위당 소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법인, 개인경영체 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인적회사와 법인의 노동생산성이 개인경영체보다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4-4. 독일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노동단위당 소득 비교

구분	단위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법인
1998/99	마르크(DM)	36,511	51,700	40,780
1999/2000	마르크(DM)	40,248	51,238	43,813
2000/01	유로(€)	23,990	28,275	23,832

자료: BMVEL, Agrarbericht, 각년도

그런데 2003년부터 농업통계는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를 포함하는 주업농(Haupterwerbsbetriebe)과 동독지역의 법인경영체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2003년부터 주업농과 부업농을 구분하는 유형분류에서 개인경영체(농가)로만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를 합쳐서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즉 독일에서 주업농은 법인경영체를 제외한 개인경영체 및 인적회사 중에서 유럽규모단위(European Size Unit, ESU)²가 16 ESU 이상이고 연간노동력단위(annual work unit, AWU)³가 1 AWU 이상인 경영체로 정의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및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주업농과 대규모 경영을 하는 동독지역의 법인의 노동생산성 비교에서는 동독지역 법인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그런데 이는 모두 과세 이전단계의 추정소득인데, 독일에서 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경영체나 인적회사보다 과세 부담이 크고, 특히 농업생산에 의한 과세상의 특혜가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주업농과 동독지역 법인의 노동단위당 소득 비교

단위: 유로

연도	주업농 (노동력 단위당 이윤+노동수입)	동독 법인 (노동력 단위당 이윤+노동수입)
1999/2000	19,908	23,092
2000/01	23,169	23,439
2001/02	22,315	26,780
2002/03	19,216	22,767
2003/04	19,430	23,193
2004/05	23,104	27,334

자료: BMVEL(2006), Agrarpolitischer Bericht 2006

² 유럽규모단위(ESU)는 일종의 표준소득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수입 크기로 정해지는데, 표준총수입 1,200유로를 1 ESU로 본다(1 ESU = € 1,200).

³ 연간노동력단위(AWU)는 성인 1명의 노동력을 말하는데, 1 AWU는 16~65세의 노동력이 하루 8시간, 연간 225일 노동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1,800시간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업경영체 운영제도

1.2.1. 법적 형태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농업경영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산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체의 설립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가. 개인경영체

개인경영체는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가장 단순한 경영체 형태이다. 즉 자본금은 1인 사업자에게서 유래하고 최소액 규정이 없다. 또한 의결기관과 감독기관이 필요 없다. 장점은 경영주가 완전한 독자성을 갖고 소신껏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설립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경영주가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경영체의 부채에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점이다.

개인경영체는 상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 설립시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농가는 법적으로 개인경영체로 간주되지만, 사업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적회사

회사이지만 법인이 되지 못하는 회사를 독일에서는 인적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인적회사가 법인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 구성원의 무한책임에 있다.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한 회사를 자연인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인적회사로는 민법상 회사(GbR),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 밖에 파트너회사(Partnerschaftsgesellschaft)와 ‘배후참여

회사'(Stille Gesellschaft) 등이 있다.

(1) 민법상 회사(GbR)

독일의 농업경영체가 선택하는 인적회사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 민법상 회사이다. 민법상 회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회사로서 민법의 규정(독일 민법 705~740조)을 받는다.

회사 설립에는 최소 2명의 자본금 출자자가 요구되나 최소액 규정은 없다. 민법상 회사는 의결기관을 갖지 않고 구성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 내의 감독기구가 회사 내부관계를 규율해야 한다. 회사 등록을 통해 갱신되는 회사정보가 공개되나, 사업 실적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민법상 회사의 장점은 정관과 같은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협의에 따라 회사의 형태를 원하는 대로 만들고 변형할 수 있다는 점과, 자영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 모두 적용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구성원들의 무한책임과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가 요구되는 점을 들 수 있다.

(2)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합명회사는 구성원들이 모두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상법상의 회사이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실제 합명회사는 민법상 회사와 거의 같은 성격과 내용을 가지나, 상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민법상 회사보다 더 상업적 성격을 가진다. 이익배분은 출자자본에 대해 4%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성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따른다.

(3)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

합자회사는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와 출자한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회사 설립에는 최소 2명의 자본출자자가 필요하나, 최소출자액 규정이 없다. 회사에는 특별한 의결기관이 요구되지 않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출자자본에 대해서는 4%의 이자가 지급되고, 나머지 수익은 구성원들 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된다. 회사 등록을 통해 갱신되는 회사정보가 공개되나, 사업 실적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합자회사의 장점은 많은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무한책임 부분이 있다는 것과 회사운영이 부분적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 법인

독일에서 법인격을 가지는 경영체는 인적회사와 대비되는 자본회사 그리고 등록조합인데, 사람보다 자본이 중요한 구성요건이 되는 자본회사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혼합형 회사 등이 있다.

(1)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작은 자본회사로 불리는 유한회사는 법인으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에 속한다. 비교적 간편한 형태의 자본회사인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출자자에 최소 25,000 유로 출자금으로 설립된다. 의결기관으로 총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 감독기구로 감사위원회(Aufsichtsrat)를 설치하고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의사결정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은 구성원 혹은 외부의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이익의 배분은 출자지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회사는 회사의 전체 자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자자는 자기자본의 출자한도 내에서 책임진다. 정보의 공개는 회사등록과정(등록 및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한회사의 장점은 회사부채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지는 법인격을 가지는 점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엄격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설립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부기와 정산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주식회사에 비해 신용한도가 적은 것도 단점에 속한다.

(2)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AG)

주식회사는 최소 5명 이상의 출자자에 최소 5만 유로의 출자금으로 설립된다. 의결기관은 총회이고, 총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회에 의해 회사가 운영된다. 감독기구는 감사위원회이고, 감사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공동의 사결정권이 보장된다.

이익의 배분은 주식지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회사는 회사의 전체 자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주주는 주식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 정보의 공개는 회사등록과 연말결산의 공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한회사에 비해 주식회사가 가지는 장점은 타인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1994년에 주식회사법을 개정하여 “작은 주식회사”를 새로운 형태로 창출하였는데, 여기서의 핵심사항은 출자자 최소규정을 5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여 단독출자자에 의한 주식회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3) 등록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

등록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경지를 갖고 있고, 특히 동독지역의 농업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 형태이다.

등록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지위이다. 따라서 공식화된 협동조합은 모두 등록조합에 해당하고 법인에 속한다.

협동조합의 설립에는 최소 7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지만, 최소 출자액은 요구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가입에는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탈퇴는 적어도 회계연도 마감 3개월 전에 통고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운영에는 3가지 기관, 즉 총회와 상임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적어도 1년에 1회 개최되는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이사와 감시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또한 정관을 변경하고 협동조합의 합병과 해산을 결의한다. 적어도 2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는 자신의 책임하에 협동조합을 운영한다. 적어도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상임이사회를 감독하고, 협동조합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와 공동으로 의사결정 한다.

협동조합은 하나의 협동조합협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협동조합협회는 소속된 회원조합이 ① 조합원의 이해에 부합되게 설립되었는지, ②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 ③ 경영 상태는 정상인지를 심사한다. 또한 협동조합협회는 회원조합의 경영 및 조세문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상담을 하고,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조합에 대해서도 필요한 상담을 해 준다.

12.2. 농업경영체 및 농림업 개념

가. 농업경영체 개념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즉 농업생산 활동이 농업경영체의 지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개념상 관건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다. 다시 말해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의 경제활동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농업경영체로 간주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 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법 상의 농림업 개념이다.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지표는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 총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조세상의 농림업 개념은 이하에서 상술한다.

나. 조세상의 농림업 개념

독일에서 농업활동이 조세상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에 개념에 속해야 한다. 이는 모든 농업경영체의 활동이 전부 조세우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상의 농림업은 개념적으로 “산업활동”(gewerbliche Tätigkeit)과 구별되는데, 농업경영체의 생산활동 중에도 “농림업 활동”에 속하지 않는 “산업활동”이 있다. 농업경영체의 활동 중 “산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① 법인경영체의 생산활동, ② 특별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이다. 즉 조세상의 농림업은 일차로 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의 활동이 되고, 축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된다.

- 처음 20ha까지는 ha당 10 축산단위(VE) 준수
- 다음 10ha까지는 ha당 7 축산단위(VE) 준수
- 다음 20ha까지는 ha당 6 축산단위(VE) 준수
- 다음 50ha까지는 ha당 3 축산단위(VE) 준수
- 더 이상의 사육지에는 ha당 1.5 축산단위(VE) 준수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은 농림업 생산활동이 기본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① 농업경영체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는 경우,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② 농산물의 가공 수준이 제1단계 가공(예를 들어, 밀가루 혹은 버터)에 머물 때는 농림업으로 인정하나, 제2단계 가공(예를 들어, 빵 혹은 소시지)은 산업활동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공되는 제2단계의 가공 매출액이 연간 10,3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③ 개설한 유통업을 통한 매출이 생산한 농산물의 총 매출액의 40% 이하일 때, 전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④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한 금액이 경영체 총 매출의 30% 이하일 때 전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⑤ 농기계수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경영체 총 매출의 1/3을 초과하지

않고 금액으로도 51,500유로를 넘지 않을 때, 이것 또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⑥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산업활동 부분이 발생하면, 전체 활동이 산업활동으로 간주되고 그 수입도 산업활동수입으로 처리된다.

농업경영체의 영농 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면,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우대가 주어진다.

- 산업세(Gewerbesteuer) 면제
- 구입 및 판매 부가가치세율(9%) 정산에 의한 면세
- 근로소득세 정산시 낮은 세율 적용
- 소득세의 특별 공제부분 적용

12.3.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 운용내용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는 영농활동 희망자와 현재의 종사자에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메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영농활동 희망자는 자신의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영농조직 형태를 찾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형태가 메뉴로 기능하게 된다.

농업경영체의 설립과 조직 형태에 대한 고려에서 우선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경영체의 경제성을 창출하고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② 회사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③ 적절한 법적 형태와 조세에 대한 극소화 방안을 찾는다.

다음 단계로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가 가지는 장단점이 더욱 세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구성원의 책임 관계 (무한/유한책임)
- 재원 조달 가능성
- 청산신청 의무 여부

- 참여지분(권리)의 양도 및 증여 가능성
- 회사의 운영, 대표, 감독 권리 관계
- 이익/손실 배당방식
- 부기, 평가, 공개에 대한 의무 여부
- 출자금 규모 및 조달방식
- 조세 부담 정도
- 국가 지원 여부

영농 활동 희망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경영조직을 선택하게 된다.

1.3.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

인적회사를 포함한 독일의 협업 및 법인조직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등록조합 형태의 농업경영체, 즉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다. 이는 영농조합이 현재 동독지역 농경지의 절반 이상을 경작할 정도로 중요한 법인조직일 뿐 아니라, 이 법인경영체가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3.1. 영농조합 현황

영농조합의 법적 형태, 즉 등록조합은 모든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농업경영체 뿐 아니라 일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조합 등도 모두 등록조합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조합은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즉 농업생산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업생산조합이란 용어가 구동독 체제하의 집단농장에 대한 명칭(농업생산조합, Landwirtschaftliche Produktivgenossenschaft, LPG)과 혼동되기 때문에 이 생산조합을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

라 명명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영농조합 수는 약 1,100개에 달하는데, 이 중 독일 라이파이젠 협회(Deutscher Raiffeisenverband, DRV)에 소속된 것이 783개소이고, 나머지는 라이파이젠협회 산하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심사협회(Fachprüfungsverband)에 속해 있다.⁴

농업생산협동조합인 영농조합은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다. 통일로 인해 구동독의 집단농장(LPG)이 해체되면서 생기게 되었고, 현재 동독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경영체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4-6. 라이파이젠협회의 협동조합 구성

단위: 개소

협동조합 형태	1990*	2001	2003	2005
상거래신용조합	1,474	354	274	222
구판매조합	645	473	430	409
낙농조합	846	378	347	308
축산조합	205	112	106	101
원예조합	114	125	117	107
포도조합	310	256	236	224
영농조합	-	795	751	783
기타 협동조합	1,552	1,107	998	944
중앙조직	53	32	27	24
합 계	5,199	3,632	3,286	3,122

* 서독지역 한정

자료: DRV(2006), DRV-Bericht 2005

⁴ 나머지 영농조합은 주로 중부독일생산조합전문심사협회(Fachprüfungsverband von Produktivgenossenschaft in Mitteldeutschland, FPV)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전문심사협회가 2006년 7월 1일부터 라이파이젠협회(DRV)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라이파이젠협회 산하에 약 1,000개소의 영농조합이 소속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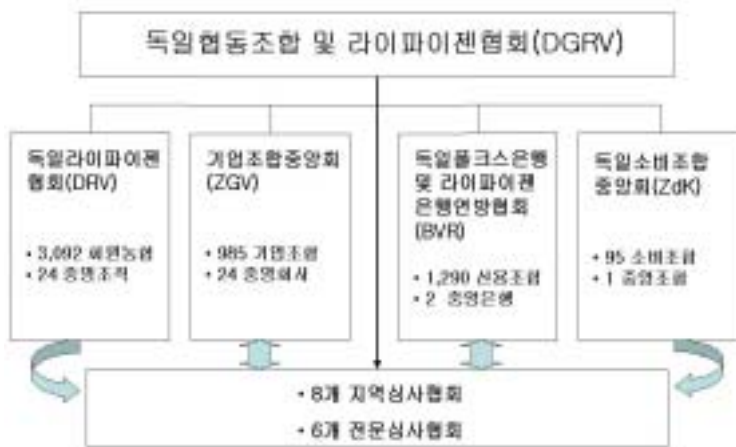
1.3.2. 영농조합의 제도적 구성

가. 독일의 협동조합 체계

독일의 협동조합은 4개의 독자적인 협동조합 협회가 통합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그림 4-1>.

4개의 협동조합협회는 농업협동조합협회인 독일라이파이젠협회(DRV), 기업협동조합협회인 기업조합중앙회(Zentralverband Gewerblicher Verbandgruppen, ZGV), 신용조합협회인 독일폴크스은행 및 라이파이젠은행 연방협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Volksbanken und Raiffeisenbank, BVR), 소비조합협회인 독일소비조합중앙회(Zentralverband deutscher Kosumgenossenschaft, ZdK)인데, 이들의 통합조직으로 독일협동조합 및 라이파이젠협회(Deutscher Genossenschafts- und Raiffeisenverband, DGRV)가 설립되어 있다. 통합조직인 DGRV 산하에 협동조합법에 따라 개별 협동조합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심사협회를 두고 있는데, 이 심사협회는 현재 8개의 지역심사

그림 4-1. 독일 협동조합 체계



협회⁵와 6개의 전문심사협회⁶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조합법에는 모든 등록조합이 심사협회에 가입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심사협회의 가입은 의무적이다. 그러나 DRV 등 개별 협회에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에 속한다. 이에 따라 독일라이파이젠협회(DRV) 등 4개의 협동조합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조합이 관계하는 심사협회를 자신들 조직의 회원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회원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독일 라이파이젠협회(DRV)는 현재 8개의 지역심사협회를 산하의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일부 영농조합이 지역심사협회가 아닌 전문심사협회에 가입함으로써 DRV에 속하지 않는 영농조합이 생겨나게 되었다.

나. 영농조합의 법적, 제도적 위상

독일의 협동조합체계를 개별 영농조합 입장에서 파악해 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영농희망자들이 농업경영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심사협회에 가입하면, 그 경영체는 라이파이젠협회의 영농조합 중 하나로 파악되고 동시에 협동조합 통합협회인 DGRV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농조합의 법적, 제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영농조합은 법적으로 등록조합인 법인임.
- 영농조합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임. 따라서 심사협회에 가입하여 경영실적을 심사받아야 함.
- 영농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인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영농조합)으로 분류됨.

⁵ 지역심사협회는 바덴협동조합협회, 바이에른협동조합협회, 프랑크푸르트협동조합협회, 북독일협동조합협회, 베저-엠스협동조합협회, 중부독일협동조합협회, 라인-메스트팔렌협동조합협회, 뷔템베르크협동조합협회의 8개로 되어 있다.

⁶ 전문심사협회는 EDEKA상인조합협회, 중부독일생산조합전문심사협회(FPV), 독일거래·서비스·소비조합심사협회, REWE심사협회, PSD은행협회, Sparda은행협회의 6개로 되어 있다.

13.3. 영농조합의 경쟁력 및 정책적 지원 실태

가. 영농조합의 경쟁력 실태

앞의 <표 4-5>에서 주업농보다 동독지역 법인경영체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지역의 법인경영체 내에서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영농조합(등록조합)의 생산성이 법인경영체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7>.

나. 영농조합에 대한 정책

영농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농업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산업세(Gewerbesteuer)를 납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정산을 통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법인세도 일반 법인과 동일한 세율(25%)이 적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독일에서는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인센티브를 경영체 내부에서 찾아야 하고, 정책적 지원과 같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게 하고 있다.

표 4-7. 동독지역 법인경영체들 간의 노동소득* 비교

단위: 유로

연도	유한회사	등록조합	기타 법인
2002/03	21,752	22,551	26,369
2003/04	23,224	23,394	22,907
2004/05	28,216	26,937	27,702

주: * 노동력 단위당 이윤+노동수입

자료: BMVEL, Agrarpolitischer Bericht 각년도

2. 프랑스

2.1. 농업경영체 현황

2.1.1. 일반현황

2005년 당시 프랑스 전체 농업경영체 수는 54만5천 개소로 1988년의 101만 7천개소에서 17년 동안 약 절반(46.4%)이 감소했다.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농업경영단위인 ‘전문농업경영체’(Exploitation professionnelle, 이하 전문농)⁷ 수도 같은 기간 57만 개소에서 34만7천 개소로 39.1%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문농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같은 기간 전문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56.0%에서 63.7%로 상승하였다.

농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전문농의 경영규모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경영규모가 50ha 미만 농업경영체의 수와 비중이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0ha 이상 농업경영체는 완만한 상승하고 있어 경영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표 4-9>.

품목별로는 곡물 생산경영체 수가 전체 전문농의 22.4%인 7만7천여 개

⁷ 전문농업경영체(Exploitations professionnelles)란 최소한의 영농규모, 즉 최소 8 ESU와 3/4 AWU를 보유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활동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영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여기서 ESU는 유럽 농업경영체규모단위(European Size Unit)로서 1 ESU는 1,200유로 또는 1.5ha의 밀 경작규모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단위이고, AWU는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 Unit)로서 일년 동안 농업경영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성인어른 노동 1단위를 가리킨다. 회사 형태의 농업경영체 대부분은 전문농업경영체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2000년 농업총조사에서 파악된 회사 형태의 농업경영체의 95%가 전문농업경영체로 분류되었다.

소로 가장 많고, 낙농경영체 5만8천여 개소, 포도채배경영체 4만6천여 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프랑스의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 천 개소

구 분	1988	2000	2005
농업경영체 수(A)	1,017	664	545
전문농 수(B)	570	394	347
B/A	56.0%	59.3%	63.7%

자료: Agrest primeur(2006)

표 4-9. 프랑스 전문농의 경영규모별 분포

단위: 개소, %

구 분	2000	2003	2005
20 ha 이하	84,295 (21.4)	73,209 (19.9)	66,667 (19.2)
20~50 ha	115,869 (29.4)	98,809 (26.9)	88,237 (25.5)
50~100 ha	116,639 (29.6)	112,618 (30.7)	106,461 (30.7)
100~200 ha	62,971 (16.0)	66,974 (18.2)	68,342 (19.7)
200ha 이상	14,136 (3.6)	15,563 (4.3)	16,822 (4.9)
계	393,910 (100.)	367,173 (100)	346,529 (100)

자료: Agrest primeur(2006)

표 4-10. 품목별 프랑스 전문농 현황

단위: 개소

품목	2000	2003	2005
곡물	85,699	81,424	77,677
채소, 화훼	12,597	11,810	11,118
포도	49,674	49,236	46,100
과일	12,187	10,790	10,104
젖소	70,408	64,975	58,348
육우	42,352	41,032	40,534
기타 초식동물	34,455	31,348	29,044
양돈, 가금	16,128	16,346	14,881
기타	70,410	60,213	58,723
계	395,910	369,177	346,529

자료: Agrest primeur(2006)

2.1.2.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

프랑스의 농업경영체는 전통적으로 경영주가 배우자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농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의 합리화가 진행되고, 다른 분야의 경제활동과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도농업인을 중심으로 회사 형태의 경영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프랑스 농업인들은 공공법⁸(droit commun)상의 회사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있으며, 회사 형태를 선택할 때에는 관련 세제, 사회보장(경영주와 가족, 고용노동자 등), 회사의 경영구조와 기능, 출자자의 개입 수준, 발전전망, 경영이양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프랑스는 공공법상의 회사 형태를 민사회사(sociétés civiles)와 상업회사(sociétés commerciales)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사활동(activité civile)은 민사회사에 관한 제도를 통해, 상업활동(activité commerciale)은 상업회사에 관한 제도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⁹ 프랑스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상업활동과 상거래가 수반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상업적 목적과 구별되는 민사활동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966년7월24일법), 농업 및 자유직업활동을 민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는 대개 「민사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사회사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를 「상업회사법」에 의해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농업경영체는 근거한 「상업회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⁸ 프랑스 법체계는 크게 공공법(droit commun), 사법(droit prive), 공법(droit public)으로 구분된다.

⁹ 민사활동은 농업활동을 제외하고는 법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대한 대칭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사활동으로 적용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농업활동
- ② 지적활동: 저작활동, 문학, 음악, 영화, 산업재산권, 예술, 연구, 컨설팅, 교육 및 훈련활동 등
- ③ 자유직업활동: 법률로 정한 자유직업에 속한 활동.
- ④ 부동산거래활동

프랑스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촌법전」 상의 농업활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 농업경영체가 된다. 「농촌법전」 제311-1조 따르면, “식물 또는 동물적 성격의 생물학적 순환을 제어·이용하며, 이러한 순환 과정에 필요한 하나 혹은 여러 단계의 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간주한다. 경영자의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업생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경영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공사작업 등도 마찬가지로 농업활동에 속한다. 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활동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바다양식활동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속한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농업활동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농업생산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하면 농업활동이 된다.

농업활동을 하는 경영체인 농업경영체를 근거하는 법과 경영체의 법적 상태에 따라 유형화하면 <표 4-11>과 같다. 즉, 프랑스의 농업경영체는 개인경영체(농가)와 회사 형태를 취하는 농업경영체로 구분할 수 있고, 회사 형태를 취하는 농업경영체는 민사법상의 특수법인인 농업회사법인(GAEC,

표 4-11.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

구분	개인형태 (individuelle)	회사형태(sociétaire)		
		비법인	법인*	
			유한책임 1인회사	2인 이상
민사회사법	개인경영체 [농가] (Exploitation individuelle)	임의회사 (Groupement de fait)	유한책임농업경영체 (EARL)	공동농업경영그룹 (GAEC, 농업경영민사회사 (SCEA) 등
상업회사법	개인사업자 (Entreprise individuelle)	-	유한책임1인경영체 (EURL)	유한책임농업회사 (SARL) 주식회사(SA) 등

* 법인형태 농업경영체 가운데 GAEC, EARL, SCEA 등은 민사회사법상의 법인회사이며, SARL, SA 등은 상업회사법상의 법인회사임.

EARL)과 일반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유형상 회사이지만 법인이 아닌 임의회사(Groupement de fait)¹⁰ 형태도 존재한다.

2.1.3. 농업경영체의 구성 현황

2005년 기준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13만여 개소로 전체 전문농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경영체는 2000년의 27만5천 개소에서 2005년에는 21만5천 개소로 감소한 반면, 회사형태 경영체는 같은 기간 11만 7천 개소에서 13만 개소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형태 농업경영체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37.7%로 늘어났다.

회사형태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1인 농업회사법인인 유한책임 농업경영체(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이하 EARL)로서 회사형태 농업경영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9.9%가 EARL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중 가장 먼저 설립된 형태인 공동농업경영그룹

표 4-12.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 구성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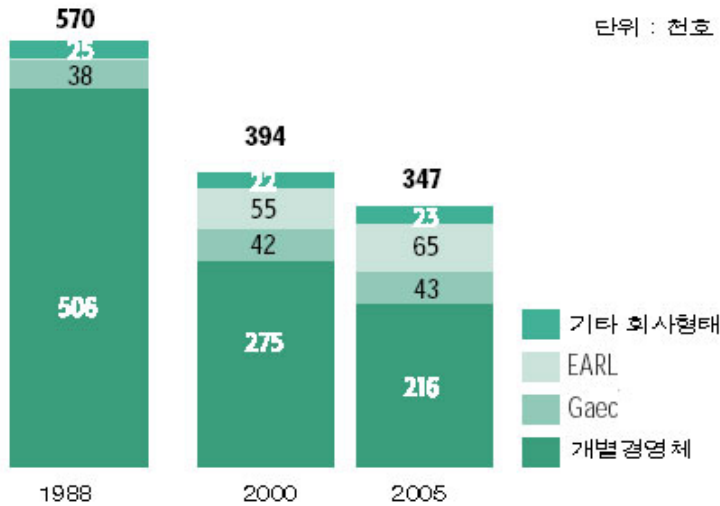
구분	2000		2003		2005	
구분	경영체수	비율	경영체수	비율	경영체수	비율
개별농가	275,444	70.0	241,513	65.8	215,792	62.3
회사형태	117,939	30.0	125,338	34.2	130,309	37.7
- GAEC	(41,546)	(35.2)	(42,765)	(34.1)	(42,881)	(32.9)
- EARL	(55,118)	(46.7)	(61,098)	(48.8)	(65,056)	(49.9)
- 기타회사*	(21,275)	(18.1)	(21,475)	(17.1)	(22,372)	(17.2)

주: 기타회사는 상업회사법상의 상업회사와 비법인 임의회사 등임.

자료: Agrest primeur(2006)

¹⁰ 법인격은 물론 출자자본이 없는 민사회사의 한 형태로서 1970년대 법인영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시절에 형성됐다가 최근 소멸 추세에 있다.

그림 4-2. 프랑스 농업경영체 구성 변화



자료: Agrest primeur(2006)

(Groupement d'exploitations agricoles en commun, 이하 GAEC)의 경우 최근 들어 비중이 감소해 2005년 현재 전체 회사 형태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형태 가운데 GAEC의 비중은 2000년 35.2%에서 2005년 32.9%로 축소된 반면, EARL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46.7%에서 49.9%로 증가하였다.

표 4-13.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경지면적 보유현황

단위: ha, %

구분	2000		2003		2005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개별농가	13,985,656	54.9	12,865,264	50.5	11,851,962	46.8
회사형태	11,486,717	45.1	12,624,543	49.5	13,464,065	53.2
- GAEC	4,980,342	43.4	5,436,492	43.1	5,700,951	42.3
- EARL	4,782,786	41.6	5,406,796	42.8	5,879,518	43.7
- 기타회사	1,723,588	15.0	1,781,255	14.1	1,883,597	14.0

자료: Agrest primeur(2006)

EARL 형태의 농업법인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경영주의 배우자에게도 충분한 직업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만으로도 법인구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영주 단독으로 법인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이로 인해 GAEC이 경영이양 시점에서 EARL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회사형태 농업경영체는 현재 프랑스 농업생산 잠재력의 절반을 웃도는 비중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회사형태 농업경영체의 경지보유 면적이 개인경영체의 경지면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사형태 중에서는 농업법인 EARL의 경지보유 비중이 농업법인 GAEC을 앞서고 있다.

2.1.4. 농업법인경영체의 특성

법인과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들은 일반적으로 규모화된 경영체로서 평균 경지규모가 100ha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개별 농가의 평균 경지규모(53.3ha)에 두 배 가까운 것이다. 농업법인 가운데서는 GAEC의 평균 경영면적이 127.1ha로서 가장 넓다<표 4-14>.

표 4-14.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평균 경지면적 (2003)

단위: 천 개소, %, ha

구 분	경영체수	비율	평균경지면적
농업경영체(전문농)	367.2	100	69.5
개인경영체(농가)	241.5	65.8	53.3
회사형태 경영체	125.3	34.1	100.7
- EARL	61.1	16.7	88.5
- GAEC	42.8	11.7	127.1
- 기타 회사	21.4	5.7	83.0
기타	0.4	0.1	89.6

자료: AGRESTE

표 4-15. 프랑스 회사형태 농업경영체의 경영자 구성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1988			2000		
	경영체 수	비율	복수경영 비율	경영체 수	비율	복수경영 비율
1인경영	6,908	11.3	-	41,937	35.8	-
복수경영	54,335	88.7	100.0	75,112	64.2	100.0
- 가족형태	52,086	85.0	95.9	69,958	59.8	93.1
- 복합형태	565	0.9	1.0	1,502	1.3	2.0
- 비가족형태	1,684	2.7	3.1	3,652	3.1	4.9
계	61,243	100.0	-	117,049	100.0	-

주) 가족형태 : 공동경영자 모두가 가족관계인 경우

복합형태 : 공동경영자의 일부가 가족관계인 경우

비가족형태 : 공동경영자 모두가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자료: AGREST Cahiers No.2

회사 형태의 농업경영체에서 경영자 구성 현황을 보면 1인 경영 형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인 경영 비중은 1988년 11.3%에서 2000년에는 35.8%로 대폭 증가하였다. 2인 이상 복수경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경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족으로 되어 있는 회사형태 농업경영체는 2005년 당시 전체의 95.1%에 달한다. 배우자를 공동경영자로 하는 회사형태 농업경영체수는 1988년 4,600 개에서 2000년에는 26,400 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구성비도 7%에서 27%로 대폭 증가하였다<표 4-15>.

2.2. 농업법인 정책

프랑스 농업법인정책의 기본 방향은 가족농의 법인화를 육성하는 것이다. 가족농을 법인화해서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법인의 유한책임으로 농업경영체가 가지는 부채의 위험을 최소

화한다. 나아가 부자(父子) 간의 법인경영을 통해 승계농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농업정책자금을 분배하는데 있어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의 구성원이 개인경영체의 구성원보다 낮은 수준의 법률적 지위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투명성(transparence)’이라 불리는 이러한 형평성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구성원들이 농업법인에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의 각 구성원이 경영주에 부여된 권리를 개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에 따라 개별 농업인에게 농업 지원자금(저리융자 또는 보조금), 또는 권리(쿼터)가 제공될 경우에 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구성원 수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농업근대화법」(la loi de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du 1er février 1996)의 제정을 계기로 토지 및 자본투자, 경영 이양, 경영주의 사회적 지위(사회보장), 생산물 시장출하 등에서 회사 및 법인 형태의 영농 활동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서 농업지도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있다. EU나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이 지역 내에 배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농업지도위원회(CDOA, 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orientation de l'agriculture)¹¹인데, 이 위원회는 전문농(Exploitation professionnelle)과 영농정착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법인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택하고 있다.

¹¹ 도농업지도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도의회, 도농업국, 도세무소, 농업회의소, 농업공제조합, 임노동자대표, 농산물가공업체, 협동조합, 농민운동단체, 유통업자, 농업은행, 농지소유자단체, 산림 소유자단체 등으로 법적 구성단체와 의석수가 지정되어 있다. 농업지도위원회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동조합분과’는 협동조합 승인 등을 담당하고, ‘경제 및 구조분과’는 정책자금배분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농농가 구제분과’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3. 농업법인 제도

2.3.1. 제도의 개요 및 연혁

가. 개요

프랑스에서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농업법인은 「민사회사법」(droit des sociétés civiles)상의 회사법인이다. 농업경영체가 「상업회사법」상의 회사로 설립되면 일반 회사와 같은 규정을 받는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농업법인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법인으로 설립된 농업경영체를 의미하고, 농업법인제도는 이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회사법을 통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①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②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③ 농업경영민사회사(SCEA) 등이 있다.

나. 연혁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농업부문에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해당한다. 농업법인의 최초 형태는 중소농들이 밀집해있고 복합영농이 발달한 서북부의 브르타뉴 지방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적정한 경영체 규모를 모색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운동의 결과는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에서 특수법인인 공동농업경영그룹(GAEC)이 도입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GAEC은 도입 초기에 미미한 발전을 보이다가 부자(父子)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GAEC pere fils)가 도입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이 결과 1975년에 500개소 정도에 머무르고 있던 GAEC이 그 후 매년 3,000개소씩 증가하게 된다.

1985년 이후에는 1인으로도 법인구성이 가능한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가 도입돼 이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ARL은 2000년 이후 GAEC을 제치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법인형태 농업경영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부자(父子)로 구성된 대부분의 GAEC이 상속 시점을 전후해서 EARL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농업경영체는 여전히 가족경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계와 경영의 분리를 이루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농업경영의 법인화는 영농후계자단체인 청년영농인연맹(CNJA)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써 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영체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체를 특수 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 전개되었다.

2.3.2. 제도의 내용

가.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GAEC은 노동과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하면서 전문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는 한편, 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구성원 간 책임분배와 부자(父子)간 GAEC 구성을 통해 영농정착을 수월하게 하고, 공동 농작업을 통해 휴가를 가거나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갖는다.

GAEC의 유형에는 하나의 경영체에 여러 사람이 영농하거나 여러 경영체를 합병하는 완전통합형 GAEC과 여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전문화된 작업장을 마련하는 부분통합형 GAEC이 있다.

GAEC은 가족농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력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을 제한하고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공동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GAEC의 구성에 있어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만으로는 GAEC을 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구성원은 현물출자(가축, 농자재, 농업용 건물 등)와 현금출자를 할 수 있으며, 노동출자도 가능하게 하여 임금노동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농지를 GAEC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임차인이 구성원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와 맺은 임차기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GAEC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임차인은 GAEC에 가입하는 순간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

GAEC에 지분을 출자한 각 구성원들은 농업경영주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GAEC의 경영과 경영 성과에 관여하게 된다. 출자자는 노동과 자본참여에 대한 보수 이외에 결산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수는 사회보장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출자지분의 두 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프랑스에서 GAEC의 구성원은 개인경영체의 구성원보다 낮은 수준의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투명성(transparence)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농업경영인에게 농업 지원자금(저리융자 또는 보조금)이나 권리(쿼터)가 제공될 경우 GAEC에 제공되는 지원금액은 구성원 수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GAEC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보조금 및 저리 융자, 세제혜택 등이 있다.

GAEC의 자발적 탈퇴나 제명은 법정에서 선고된 ‘중대하고 합법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GAEC 설립에 대한 승인은 도의 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도의 승인위원회는 GAEC의 법적 자격과 구성원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나.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EARL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에 도입되었는데, 보다 실질적으로는 GAEC이 축소돼 1인 참여자로

구성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EARL의 구성에서 모든 구성원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1명은 농업경영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EARL의 다수를 구성해야 한다. 참여자 수는 1~10명이고, 배우자와도 EARL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면적은 최대 10 SMI(최소영농정착면적)¹²를 초과할 수 없다.

표 4-16. GAEC과 EARL의 운영 실태 비교 (1997)

구분	경영체수	평균경지 면적(ha)	구성원 평균연령	구성원간 연령격차	여성비율 (%)	
					공동경영	경영주
GAEC pere-fils (부자간)	13,900	84	43	26	25	12
GAEC (2인 경영)	13,900	98	40	7	7	3
GAEC (3인 경영)	9,200	110	42	21	32	8
EARL (2인 경영)	14,200	93	42	8	43	8
EARL (1인 경영)	26,800	89	41	-	8	8

자료 : AGRESTE - Enquête structure 1997

¹² SMI(Surface minimum d'installation)는 일반 산업분야에 최저임금제도가 있듯이 청년층에 속한 영농 정착자가 최소한의 가계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다. 복합영농을 하는 젊은 농업경영가구가 최소한의 가계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착면적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왔으나, 1980년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면적산출방식이 지역과 품목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으며, SMI의 적용분야도 점차 사회보장 및 세제분야로 확대되었다. SMI는 각 지방정부(도/데파르트망)의 도지사가 지방의회, 농업회의소, 농업지도위원회(CDOA)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는 '농업구조기본계획'(le schéma directeur des structures agricoles)에서 확정되는데, 그 크기는 지역과 품목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표 4-17. GAEC과 EARL의 제도적 특성 비교

구 분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회사자본	· 최소 1,500 유로	· 최소 7,500 유로
구성원	· 최소 2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인 · 농업경영인 · 배우자만으로 구성 불가	· 최소 1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인 · 비농업인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전체 출자금의 50% 이하 한도 내 가능 · 배우자간 구성도 가능
책임한도	· 출자자본의 두 배 한도내	· 출자자본 이내
승인절차	· 있음	· 없음
상한면적	· 없음. 단, 공동경작지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면 안됨	· 10 SMI (최소영농정착면적)
법적투명성	· 구성원은 농업경영주 자격 보유 · 정책자금 지원시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수혜받음	· 없음
비고	· 1962년 농업기본법에 근거 · 참여농민은 GAEC의 경영과 농작업에 동시에 참여해야 함. · 부자간에 구성된 GAEC은 경영체 상속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음. · 법인은 참여 불가. · 대부분 한 가족 간의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구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198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됨. · 최소한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은 농업경영인이어야 함. · 부자 간 이루어진 GAEC에서 부모의 은퇴 이후 GAEC의 후속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1인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함.

자료: AGREST Cahiers No.41, 1999.

법인의 출자금은 최소 7,500유로이고, 현금출자와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물출자 중 부동산은 회사자본의 최소 50%를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만 출연할 수 있다.

EARL의 기본성격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와 동일한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보유지분에 비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참여지분 한도 내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거래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 농업경영민사회사(SCEA)

농업경영민사회사(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 SCEA)는 농업법인 가운데 제약 조건이 가장 완화된 형태로서 경영방식과 수익분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구성에는 최소 2인 이상이 요구되나 부부간에도 구성이 가능하고 법인과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다. 회사자본에 최소출자액이 요구되지 않고 영농면적에도 상한과 하한의 제한이 없다. 또한 설립에도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전형적인 민사회사로서 구성원의 책임은 출자비율에 따른 무한책임으로 되어 있다.

SCEA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저리 융자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SCEA를 구성하면 참여농업인은 농업경영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제 및 사회보장상의 변화가 동반되는 점을 들 수 있다.

3. 일본

3.1. 농업법인 현황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은 1965년의 1,295개에서 1973년 3,563개로 급증하였다가 1974년 2,942개로 감소한 이후 1985년(3,168개)까지 정체기를 거친 다음 1986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5년 7,904개로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1993년부터 ‘신농정’에 의해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이 추진되자 1995년부터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업생산법인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유한회사의 수는 1977~1985년에 매년 약간씩 줄다가 1986년에 증가로 반전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5,961개에 달하였다. 농업생산법인 총수에서 차지하는 유한회사의 비율은 1970년 57.3%에서 1975년 69.7%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로 반전되어 1988년 55.0%까지 줄었으나 1989년 55.6%로 증가한 이후 2005년 75.4%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농사조합법인은 197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1974~1976년의 감소 추세를 거쳐 1977~1987년에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1988~1990년에 급증하였다가 1991~1997년에 감소·정체추세로 반전된 데 이어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생산법인은 2002년의 17개에서 2005년 120개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2005년 120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모체의 유형을 보면, 유한회사 등의 조직변경 39개, 신규취농·농업관계자의 신설 31개, 식품·음료회사와 농산물 판매회사 등의 주식회사 22개, 건설·운수·관광업체 18개, 축산·화훼·시설농업 주식회사 10개 등이었다.

농업생산법인의 업종별 추이를 보면, 축산법인의 수가 가장 많고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맥작법인의 수가 1991년부터 가장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채소와 화훼 생산법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특히 1996년 이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 과일 생산법인의 수

표 4-18.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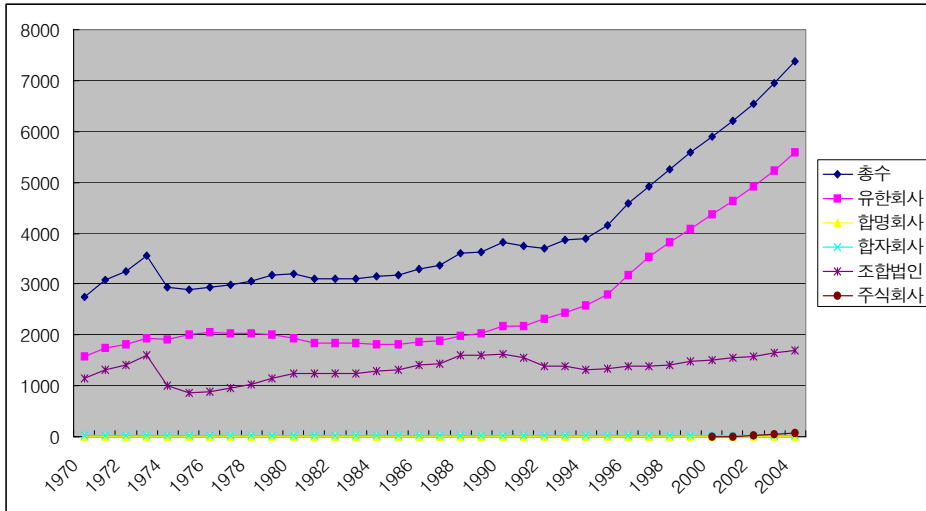
구분	총수	조직형태별					업종별						
		유한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농사조 합법인	주식 회사	미맥	과수	축산	채소	양잠 공예	화훼	기타
1970	2,740	1,569	3	24	1,144		806	871	749	40	119		
1971	3,069	1,739	3	19	1,308		799	931	976	41	136		
1972	3,244	1,810	2	21	1,411		818	956	1,048	43	146		
1973	3,563	1,942	4	25	1,592		813	993	1,156	90	116		
1974	2,942	1,921	2	20	999		726	951	867	60	83		
1975	2,879	2,007	3	13	856		788	845	852	71	60		
1976	2,937	2,042	3	15	877		867	775	883	81	59		
1977	2,986	2,023	4	15	944		829	698	982	109	60		308
1978	3,057	2,020	4	18	1,015		817	697	991	90	69		393
1979	3,179	2,001	3	18	1,157		743	700	1,103	103	80		450
1980	3,200	1,939	3	18	1,240		727	640	1,131	125	85		349
1981	3,097	1,839	4	16	1,238		619	558	1,176	129	77		314
1982	3,106	1,842	5	16	1,243		606	548	1,201	128	67		556
1983	3,106	1,842	5	16	1,243		606	548	1,201	128	67		556
1984	3,144	1,826	5	15	1,298		588	527	1,243	131	71		584
1985	3,168	1,825	5	14	1,324		553	516	1,262	157	69		611
1986	3,296	1,872	5	14	1,405		557	539	1,330	167	71		632
1987	3,361	1,897	6	14	1,444		553	540	1,350	189	67		662
1988	3,609	1,986	5	13	1,605		546	565	1,472	216	110		700
1989	3,633	2,020	6	14	1,593		548	569	1,462	219	98		737
1990	3,816	2,167	7	16	1,626		558	592	1,564	216	78		808
1991	3,748	2,184	7	16	1,541		599	567	1,508	233	48		793
1992	3,709	2,305	6	14	1,384		645	509	1,499	229	37		790
1993	3,858	2,444	6	14	1,394		670	566	1,478	253	29		862
1994	3,899	2,573	5	13	1,308		730	519	1,464	260	15		911
1995	4,150	2,797	4	14	1,335		803	523	1,510	293	18		1,003
1996	4,588	3,180	6	15	1,387		921	543	1,552	357	296	288	631
1997	4,925	3,524	4	18	1,379		1,014	554	1,647	410	285	371	644
1998	5,246	3,816	4	18	1,408		1,127	541	1,702	457	310	452	657
1999	5,587	4,091	4	19	1,473		1,209	602	1,740	497	310	513	716
2000	5,889	4,366	5	22	1,496		1,275	606	1,803	567	307	560	771
2001	6,213	4,628	6	20	1,559		1,352	650	1,838	657	334	584	798
2002	6,547	4,920	6	22	1,582	17	1,425	659	1,952	707	221	674	909
2003	6,953	5,233	6	26	1,636	52	1,514	674	2,023	817	253	720	952
2004	7,383	5,584	7	29	1,693	70	1,724	665	2,131	894	266	745	958
2005	7,904	5,961	7	34	1,782	120	1,953	683	2,216	988	219	787	1,058

주: 1)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함.

2) 양잠·공예 단에서 1995년까지는 양잠, 1996년부터는 공예작물의 숫자임.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ポケット農林水産統計』,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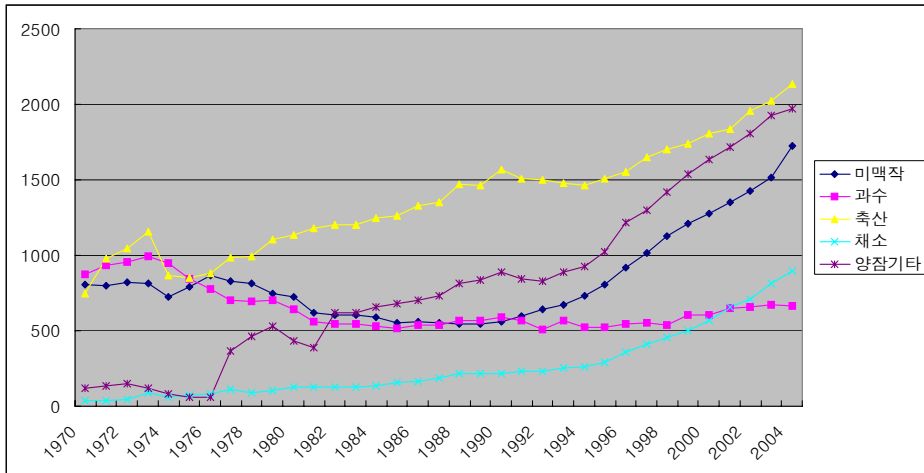
그림 4-3.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조직 형태별 추이



는 1985년까지 감소 추세에서 이후 1998년까지 정체추세를 거쳐 199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농업생산법인제도의 도입을 촉발 하였던 과일생산법인의 경우 1965년 농업생산법인 1,294개의 42.3%를 차지하였으나 1973년 청색신고에 의한 법인 과세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법인의 이점이 사라지고 밀감의 생산과잉과 가격 폭락으로 하우스 재배와 품종 전환이 이루어졌다. 축산부문의 경우 농외자본의 계열화와 급속한 규모 확대에 의해 법인화가 가속화되었다. 일본의 축산은 토지이용형이 아니라 가공형이므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농외자본의 참여가 용이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농업인도 사업다각화 및 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소규모 농가의 탈락과 규모화에 의한 생산집중 및 법인화가 양돈·양계 등 중소가축 분야에서 진전된 데 이어 낙농·육우 분야로 이어졌다.

대규모 법인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일부 사업을 자회사화하는 등 법인을 증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법인이 농협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축산 분야의 경우 구입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료의 효율성과 자재비용의 절감이 중요한데, 농협의 자재 공급 가격은 대규모 경영체와의 거래에서 유연성이 결여되고, 다른 한편 대규모

그림 4-4.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업종별 추이



법인은 스스로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사조합법인은 농협을 많이 이용하나 유한회사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3.2.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과

일본에서 농업법인은 1950년대 후반 토쿠시마현 카츠우라정(徳島縣 勝浦町)과 에히메현 요시다정(愛媛縣 吉田町) 등에서 밀감 농가가 세금절감을 위해 유한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성장 농산물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밀감 등 과수는 황금시대를 맞아 밀감 농가의 조수입이 500~600만 엔으로 봉급생활자의 월급 1만 수천엔 수준을 월등히 증가하였으며, 판매규모가 큰 농가에는 세금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1957년 5월 카츠우라정(勝浦町)의 한 청년농가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과세대상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4할 이상 많게 되자 1ha의 밀감밭으로 유한회사(新紅園)를 설립하여 월급으로 사장(부친) 2만엔, 전무(장남) 1만엔, 감사(모친)와 이사(처) 각 8천엔으로 하고 이를 경비로 공제하였다. 이를 계

기로 동년 10월에 카츠우라정에 103개의 유한회사가 설립되었다. 세무서는 농림성에 농지법상 농업법인이 인정되는가에 대해 질의하였고, 농림성이 농지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자 카츠우라정의 유한회사는 2개를 남기고 모두 해산하였다.

농업법인 문제는 이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에히메현 요시다정(愛媛縣 吉田町)에서는 360호의 밀감농가가 41개의 농업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카츠우라정의 최초 유한회사(新紅園)는 소득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세무서는 “농업은 계절성이 강한 특수업종으로, 농번기·농한기가 있기 때문에 매월의 월급 지급은 필요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小林芳雄 1994, 19). 이에 카츠우라정 농업회의소는 법인화 추진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업법인 문제는 국회의 논의로 발전되어 1959년에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업법인에 관한 결의를 통해 정부에 농업법인제도의 확립, 농가 가족노동력의 노임을 경비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 기존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 등을 요구하였다. 1959년 3월 국세청이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농업법인은 628개였다(농지개혁 전 설립 62개, 개혁 후 설립 566개).

농협은 농업법인 문제에 대해 과세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의 개정은 바람직하나 법인의 농업경영을 인정하기 위한 농지법의 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어려운 실정에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보다는 장래의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인 형태를 취하는 대규모 경영체가 설립될 경우 3단계 체제로 되어 있는 농협의 계통사업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59년 「농업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 직속으로 「농림어업기본문제조사회」를 설치하고 농업법인 문제를 포함하여 농업정책의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조사회는 자립경영의 육성을 위한 가족경영의 협업화를 추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업법인을 제시하였다. 법인화를 통한 경영과 가계의 분리 및 노동

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 등 농업경영 합리화의 기초 조건이 갖추어질 때 협업경영이 성립·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농림성 내에서는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방법을 둘러싸고 농지국과 농림경제국의 견해로 양분되었는데, 1960년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는 농림경제국의 견해가 채택되었으나 국회의 해산으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농지국은 농지법의 기본이념인 자작농주의를 견지하되 단독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농업생산조합을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고, 농림경제국은 「농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회사 형태의 법인 중 「농지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농지소유를 허가하는 특례의 인정을 주장하였다. 1960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국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법안의 내용은 ① 농업법인의 도입은 단독법 제정이 아니라 「농지법」과 「농협법」의 일부 개정에 의하며, ② 법인의 형태는 회사와 협동조합 방식을 모두 인정하여 농가가 선택하도록 하고, ③ 법인의 사업은 농업에 한정하되, ④ 농지의 제 권리 이전은 임차권과 사용임차권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농업법인의 설립에 최대의 관건이었던 농협은 1960년에 「협동소조합 구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농업법인을 농사실행조합과 같은 농협의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자 하였다. 협동소조합의 조합원 수는 5~50인 정도로 하되 농협의 조합원에 한하도록 하고, 협동소조합은 주로 농사실행조합 제도의 예에 의한 간이법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협동소조합은 농업생산 외에 이용·유통 전반의 영농 및 생활에 관한 공동사업 등 농협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2년 「농지법」과 「농협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인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법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으로 대별되며, 그것은 다시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

둘째, 농사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 유형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1호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2호법인과 1호·2호 겸영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1호(號)법인: 「농협법」 제72조 8항 1호에 명시된 “농업에 관계되는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즉 기계·시설의 공동 이용이나 공동작업만을 하는 조합법인

② 2호법인: 「농협법」 제72조 8항 2호에 명시된 “농업의 경영”을 하는 조합법인

③ 1호·2호 겸영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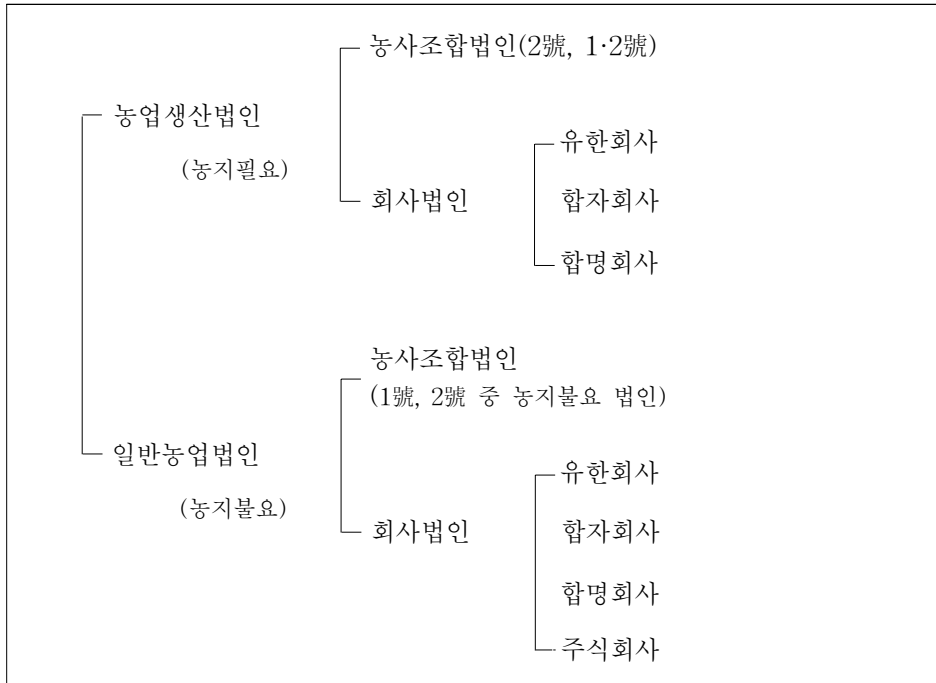
셋째,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거한 합명회사·합자회사와 「유한회사법」에 의한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주식회사는 제외되었다.

넷째, 농업생산법인은 농지법에 의한 자작농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안되었기 때문에 규제가 매우 강한 편으로서, 구성원은 농지 제공자와 법인 상시종사자로 제한하고, 구성원의 노동력과 농지제공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도록 하였으며, 상시종사자의 의결권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익배당은 종사분량에 따른 배당이 원칙이었다. 특히 농사조합법인은 ① 농민(경작자) 원칙 ② 자작지 원칙 ③ 자가노력 원칙 등 3가지 원칙하에 농민에 의한 법인으로 규정되었다.

이리하여 1962~1968년에 우후죽순처럼 농업법인이 설립되어 예컨대, 니가타현의 경우 약 40개사 정도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나, 이후 점점 해산되어 1994년에 1개사(농사조합법인 太田農場: 1963년 4월 설립, 4호 협업, 수도 7ha, 번식돈 75두, 상시비육돈 800두, 직매점 2개소, 지육 도매)만 존속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小林芳雄 1994, 20-21).

- ① 경영관리, 특히 경리처리능력 부재(회계장부 기장 능력 미비)
- ② 수호의 노동력 관리, 자금융자조달 등 경험 미숙
- ③ 주위에서 추어올려 설비투자 과잉
- ④ 농업관련기관 단체 등의 지도체제 미비

그림 4-5. 일본 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유형



3.3. 농업생산법인 제도의 변천

3.3.1. 신농정 이전의 개정 내용

일본의 농업법인제도는 1962년 「농지법」과 「농협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6차에 걸친 「농지법」의 개정에 의해 바뀌어왔다. 1970년의 「농지법」개정은 1952년에 제정된 「농지법」의 원칙인 자작농주의가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차지농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농업법인제도에서도 의결권·농지면적·노동력·수익배당에 관한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농지제공 겸 상시종사 구성원이 업무집행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농지법」의 자작농주의는 경작권 우선 원칙을 기초로 자작농에 의한 생산력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차지와 고용노동에 의한 규모 확대를 저해함으로써 기계화 진전이라는 추세와 배치되었다. 1970년의 「농지법」 개정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나 농업생산법인을 협업으로 보는 인식이 약화되었다.

1980년의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지에 관한 권리를 갖지 않은 농업후계자가 농업생산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를 제공하지 않고 농작업에 종사하는 상시종사자가 업무집행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2. 신농정의 개정 내용

1993년에 1961년의 「농업기본법」 이후 시행해 온 ‘기본법농정’에서 이른바 ‘신농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농업법인제도도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신농정에서는 ‘농가’가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그에 필요한 농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992년 6월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이른바 ‘신농정’)'을 발표하고 1993년 4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조치를 한데 이어 6월에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특정농산촌활성화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8월에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범위는 종래에 농업 및 그 부대사업에 한정하였으나 연간 안정적인 고용의 유지, 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가공, 농산물의 저장·운반 등 법인이 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 ① 농산물 제조·가공 또는 저장·운반: 밀감을 생산하는 농업생산법인이 자체 생산한 밀감과 다른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밀감을 원료로 밀감 주스를 제조하거나 밀감을 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경우
- ② 농업생산자재의 제조: 육우를 사육하는 농업생산법인이 자가용 및 판매용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 ③ 농작업 수탁: 미작경영을 하는 농업생산법인이 자신의 농작업 외에 다른 농가의 작업을 수탁받는 경우

농업생산법인의 구성원은 종래 그 법인에 농지 등의 권리를 제공한 개인 또는 그 법인의 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에 한정되었으나, 농지보유합리화 법인과 농협 및 농업생산법인으로부터 물자·노무 등을 제공받는 개인이 추가되었다. 단, 이들의 의결권 합계는 1/4 이하, 각각의 의결권은 1/10이하로 제한된다.

① 농협

- ② 농업생산법인 출자육성사업에 의해 현물출자를 한 농지보유 합리화 법인

③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에 관계되는 물자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법인의 사업 원활화에 기여하는 자로 정령에서 정하는 자 ‘신농정’에서 경영체는 가족이 아니라 주종사자 개인을 기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타 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1인당 생애소득이 지역의 타 산업 종사자와 손색이 없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농정’에서 법인화는 규모 확대·소득증대 등이 아니라 다양한 경영체의 경영체질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조직경영체의 법인화만이 아니라 개별 경영체의 법인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가족경영은 ① 자기 판단하에 토지·노동력의 분배를 기민하게 할 수 있고 그 성과도 자기의 몫이며, ② 노동의 계절성 및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발생 등 농업노동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쉽고, ③ 농업투자는 농가 재산의 축적과 연결되어 후계자가 있으면 안정적 투자가 기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서 ① 가계와 경영, 생활자산과 경영자산의 미분리, ② 부녀자·자녀 등 가족 내 노동관계 불명확, ③ 후계자 확보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법인화의 유리성으로는 ① 가족 내 노동관계나 역할 분담, 특히 여성 역할의 명확화(휴일제·급료제의 도입, 사장·경리담당·임원의 취임 등), ② 경리의 명확화(가계와 경영의 분리, 생활자산과 경영자산의 분리), ③ 고용노동자의 복지 증진(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적용 가능), ④ 경영 관리능력·자금조달력·신용력의 충실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가족경

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화를 통한 경영의 근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작업의 수·위탁 및 농업용 기계·시설의 공동 이용 등을 하는 생산조직의 법인화는 이상의 이점 외에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나 재산귀속의 주체가 되어 구성원의 가입·탈퇴, 잉여금의 처분이나 구성원 간의 역할·직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계속성·주체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신용력을 활용한 자금 조달력의 충실을 기대할 수 있다.

신농정 단계에 나타난 법인화의 유형으로는 ① 1호(戶) 1법인, ②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협업형, ③ 겸업농가 등 마을의 구성원이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지역공동형, ④ 농협·시정촌 주도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여러 농가로 법인을 구성하여 일부 농업부문(예를 들면 미작 부문, 육우 부문)만을 법인경영으로 하고 그 외의 채소·화훼·양돈 등은 개별 경영에 맡기는 혼합형 등이 있다.

표 4-19. 일본에서 1호(戶) 1법인의 법인화 이유(2003)

단위: %

사유	비율	사유	비율
대외신용력 제고	46.2	경영자 교대시 거래승계 원활	19.5
경영 이미지 향상	38.9	재산 상속·증여의 문제 예방	15.0
보조금·용자·세제 혜택	37.8	주변의 법인화 진전 때문	8.0
후계자·가족종업원의 권리·의무·지위·대우 명확화	36.1	지역의 농지·농작업 집적 용이	6.8
고용인 확보 용이	32.1	기타	9.7

주: 전국의 1호1법인 1,835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복수응답(회수율 58.3%)

자료: 全國農業會議所, 『1戶1法人成立過程經營展開關調查』(農林水産省大臣官房情報課, 『平成17年度 食料・農業・農村白書 參考統計表』 2006, 32)

3.3.3. 신농정 이후 개정 내용

2000년의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서 전문농업인에 의한 농업경영의 전개를 위하여 가족농업경영의 활성화와 함께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은 “법인경영이 경영관리 능력의 향상, 신규취농 촉진 등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또한 농업생산법인의 활성화 및 후계자의 경영 형태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농업생산법인의 한 형태로서 주식회사 형태의 도입을 포함하는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을 수정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투기적인 농지취득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를 농업위원회 기능의 활용 등에 의해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회사법인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가 추가되고, 사업요건에서도 농업 및 부대사업이 매출액의 과반이면 그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성원요건으로서 농협·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 지방공공단체가 추가되었으며, 농업생산법인으로부터 물자와 노무의 공급을 받는 개인 외에 법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집행 임원의 요건에서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구성원이 임원의 과반이고, 그 과반은 원칙으로 6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완화하였다.

2002년의 개정은 「구조개혁특구법」에 의한 특례로서 지역 활성화와 농지의 유효이용이라는 취지로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법인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특례조치가 강구되었다. 특례조치의 조건으로는 ① 유휴농지 등이 상당히 존재하는 지역, ②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 방식, ③ 지방공공단체 등과 협정 체결, ④ 업무집행임원 1인 이상이 농업에 상시 종사할 것 등을 충족하는 법인이라야 하는 것이다.

2003년의 개정에서는 구성원 요건에서 인정농업자인 농업생산법인에 대해 농업관계자 이외 구성원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였다. 즉 ① 경작사업자 및 농업생산법인에는 무제한, ②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1/2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2005년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의 개정에 의해 「농지법」의 특별조치로 구조 개혁특구에 한해 허용되었던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법인의 농지 임차가 ‘특정법인대부사업’으로 위치지어져 전국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제도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농업생산법인제도의 취지는 당초 가족농업경영의 발전을 위한 협업경영의 조장에서 가족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농업법인은 가족농업경영의 보조형태라는 인식으로부터 발전형태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이다. 법인형태 요건에서 주식회사가 허용되고, 사업 요건은 농업 및 부대사업에 한하였다가 매출액의 과반이상으로 완화되어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구성원·의결권·집행임원 요건은 농지제공자와 법인 상근자에서 농협·농지보유합리화법인·지방공공단체와 농업생산법인으로부터 물자와 노무의 공급을 받는 개인·법인까지로 확대되었다<부록 III 참조>.

3.4. 현행 농업생산법인 제도의 내용

3.4.1. 개요

농업법인이란 제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법인형태’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총칭으로서, 법인의 조직 형태별로는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되며, 농지에 대한 권리 취득 유무에 의해 농업생산법인과 일반농업법인으로 구분된다. 농업법인의 조직유형은 「상법」·「유한회사법」·「농협법」 등의 조직법에 의해 규정되며, 농지의 권리 취득에 관해서는 통제법으로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酒井富夫 1994, 26-27). 농사조합법인에 관한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 3항~18항, 제73조 1항~14항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은 제1절 통칙(제72조의 3항~7항), 제2

절 사업(제72조의 8항~9항), 제3절 조합원·관리·설립·해산 및 청산(제72조의 10항~제73조), 제4절 조직변경(제73조의 2항~14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생산법인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 제2조(정의) 7항 1호~3호와 8항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은 농사조합법인과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회사법인이 농업생산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요건, 구성원요건, 업무집행임원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농업법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농업법인을 가리킨다.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양돈·양계·시설원예 등의 농업법인과 농업용 기계·시설의 공동 이용 및 공동작업을 하는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일 필요가 없다. 일본의 농업법인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법인이며, 농사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 등 법인 형태의 구별은 여건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농지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요건은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이 매출액의 절반을 초과해야 한다. 농업 관련사업으로는 ① 농축산물을 원료·재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 ② 농축산물의 저장·운반, ③ 농축산물의 판매, ④ 농업생산자재의 제조, ⑤ 농작업 수탁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소유하는 농기계·시설을 이용한 업무 등이 있다. 구성원요건으로는 법인의 구성원이 ① 농지의 권리를 제공한 개인, ② 그 법인의 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 ③ 농업생산법인 출자 육성사업에 관련된 현물출자를 한 농지보유합리화법인, ④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 ⑤ 지방공공단체, ⑥ 법인으로부터 물자 공급 또는 노무 제공을 받는 개인과 법인, ⑦ 법인에 물자 공급 또는 노무제공을 하는 개인과 법인, ⑧ 기타 사업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자 등이다. 여기서 ⑥ ⑦ ⑧에 해당되는 구성원은 총의결권의 1/4 이하, 각 구성원은 1/10 이하로 제한하되,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해 농업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농업인(개인과 농업생산법인)은 무제한, 비농업인은 총의결권의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업무집행임원의 요건은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구성원이 임원의 과반

을 차지하고, 또한 그 과반은 6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① 업무집행임원 중 1인 이상이 농업에 상시종사하고, ② 유희농지 등이 상당히 존재하는 지역에서, ③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④ 지방공공단체 등과 협정을 체결하면 농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

농업경영을 법인화할 경우 어떤 형태의 법인을 택할 것인지 조직 형태별 특성과 경영여건 및 전망에 비추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농업법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차이를 들면 다음과 같다<표 4-20>.

유한회사는 법인 자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농사조합법인은 법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구별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또는 단기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실제로 별 의미가 없으나 반대의 경우 그 차이가 크다. 유한회사는 농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인 이상 5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농사조합은 3인 이상의 농민으로써 구성된다. 어느 형태에서든 1호 1법인은 가능하다. 한 농가의 가족원 3인으로도 농사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방법에서 농사조합법인은 출자액 규모에 상관없이 1인1표로 균등하며,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 1구좌당 1표로 출자구좌가 많을수록 의결권이 크다. 회사법인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동일하게 할 경우 의사결정권이 균등해질 수 있다.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상시종사자의 1/3 이상이 구성원(그 가족원 포함)이지 않으면 안 되나, 유한회사는 상시종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표 4-20. 일본의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비교

구 분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
근거법	유한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목적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	협업에 의한 공동의 이익 증진
기업형태	영리법인=사단법인	중간법인=협동조합
구성원	1인~50인, 비농민 가능	농민 3인 이상
출자	자본 300만엔 이상 1구좌 5만엔 이상	비출자: 1호(號)법인 출자: 현물·현금 출자 무제한
의결권	출자 1구 1표(탄력 운용 가능)	1인1표
등기	법무국에 설립등기	법무국에 설립등기 후 행정청에 설립신고
임원	취체역 1인 이상(비사원도 가능)	이사 1인 이상(농민조합원만 가능)
출 자 지 분 이전	사원총회 승인 불필요	양도·상속: 조합 승인 필요
배당	일반법인: 출자구수에 비례, 무제한 농업생산법인: 6% 이내 출자배당 후 종사분량배당	6% 이내, 종사일수와 사업이용 분량
종사자	무제한	조합원이 상시종사자의 1/3 이 상
책임한도	출자지분 한도의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
준비금	자본의 1/4까지는 금전에 의한 배 당액의 1/10 이상 적립	출자총액의 1/2 이상까지 잉여 금의 1/10 이상 적립
법인세	자본금 1억엔 초과: 37.5% 자본금 1억엔 이하: 연소득 800만엔 이하: 28.0% 연소득 800만엔 초과: 37.5%	종사일수 비례 배당형: 27% 급여지불형: 보통법인과 동일
사업세	연소득 350만엔 이하 6% 연소득 350만~700만엔 9% 연소득 700만엔 초과 12%	농업생산법인인 경우 농업은 비 과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이전: 5% 임차권 설정 이전: 2.5%	농협법에 의거한 등기: 비과세
정관 인증 료	있음	없음
연금	후생연금	농립연금

자료: 宇佐美繁・龜和田秀雄(1996) ¹³¹³ 宇佐美繁・龜和田秀雄, 『家族經營の法人化を考える』, 日本經濟評論社, 1996,

3.4.2. 농업경영 법인화의 장점과 단점

가족경영은 ① 자기 판단하에 토지·노동력의 분배를 기민하게 할 수 있고 그 성과도 자기의 몫이며, ② 노동의 계절성 및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발생 등 농업노동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쉽고, ③ 농업투자는 농가 재산의 축적과 연결되어 후계자가 있으면 안정적 투자가 기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서 ① 가계와 경영, 생활자산과 경영자산의 미분리, ② 부녀자·자녀 등 가족 내 노동관계 불명확, ③ 후계자 확보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개인경영의 장점으로 ① 장부기장이 간단하다, ② 교제비의 무제한 손금 산입, ③ 사회보험 보험료의 회사부담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¹⁴

농업경영 법인화의 유리성으로는 크게 제도상의 이점과 경영상의 이점을 들 수 있다. 제도상의 이점은 ① 세제 면에서 소득분산으로 사업주에 대한 과세가 경감되고, 법인세는 정률과세로 유리하며,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차입에서 융자한도액 확대,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인 확보 등이 유리하다. ③ 농지 취득에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농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영상의 이점으로는 ① 가계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경영관리가 철저해지고 경영자로서의 의식이 강화된다. ② 계수관리의 명확화 및 법정 의무가 수반되므로 거래상 신용과 이미지가 향상된다. ③ 고용보험·취업규칙·급여제 등으로써 농업종사자의 복리후생이 개선된다. ④ 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후계자를 확보할 수 있고, 취농희망자가 취업하여 경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p.185와 小林芳雄, 『農業法人のつくり方』, 農文協, 1994, p. 60 및 酒井富夫, 『早わかり農業法人のすべて: メリットと設立・運営の手引き』, 家の光協會, 1994, pp. 30-31의 표를 통합 정리하였다.

¹⁴ 『NIRA研究報告書 No 940054: 新しい農業經營形態の研究-法人化の展望』, 総合研究開発機構, 1994, p. 67.

표 4-21. 일본 농업경영 법인화의 이점

경 영 상 의 이 점	경영 관리능력 향상	경영책임에 대한 자각을 가짐으로써 경영자로서의 의식 개혁 촉진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관리가 철저
	대외신용 향상	계수관리의 명확화나 각종 법정업무(설립등기, 경영보고 등)를 수반하므로 거래상의 신용력이 향상 법인으로 됨으로써 이미지가 향상되고, 상품거래나 종업 고용 등이 원활화
	농업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고용보험 등의 적용에 의한 농업종사자의 복리 증진 노동시간 등 취업규칙의 정비, 급여제의 도입에 의한 취업조건의 명확화
	법인후계자의 원활한 확보나 신규취농자의 수용처 역할	법인의 임원, 사원 등 중에서 유능한 자를 후계자로 확보하는 일이 가능 취농희망자가 법인에 취직함으로써, 초기부담 없이 경영 능력, 농업기술 습득 가능
제 도 상 의 이 점	세제 우대	소득의 분배에 의해 사업주에 대한 과세경감 정률과세의 법인세 적용 임원보수의 급여소득화에 의한 절세 사용인 겸무 임원 상여의 손금산입 퇴직급여 등의 손금산입 결손금의 7년간 이월공제, 환급 농용지 이용집적 준비금의 손금 산입
	자금 차입	융자한도액의 확대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인의 확보
	농지취득 지원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농용지 등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농지취득의 부담 경감(농업생산법인출자육성사업)

농업경영 법인화의 단점으로는 법인 설립비용, 손익계산서 작성 의무에 따른 비용, 조직의 경직성 및 인적결합도 저하 등을 들 수 있다.¹⁵

농업법인의 유형으로는 ① 1호(戶) 1법인, ②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협업형, ③ 겸업농가 등 마을의 구성원이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지역공동형, ④ 농협·시정촌 주도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여러 농가로 법인을 구성하여 일부 농업부문(예를 들면 미작 부문, 육우 부문)만을 법인경영으로 하고 그 외의 채소·화훼·양돈 등은 개별 경영에 맡기는 혼합형 등이 있다.

3.4.3. 농업법인 설립 및 조직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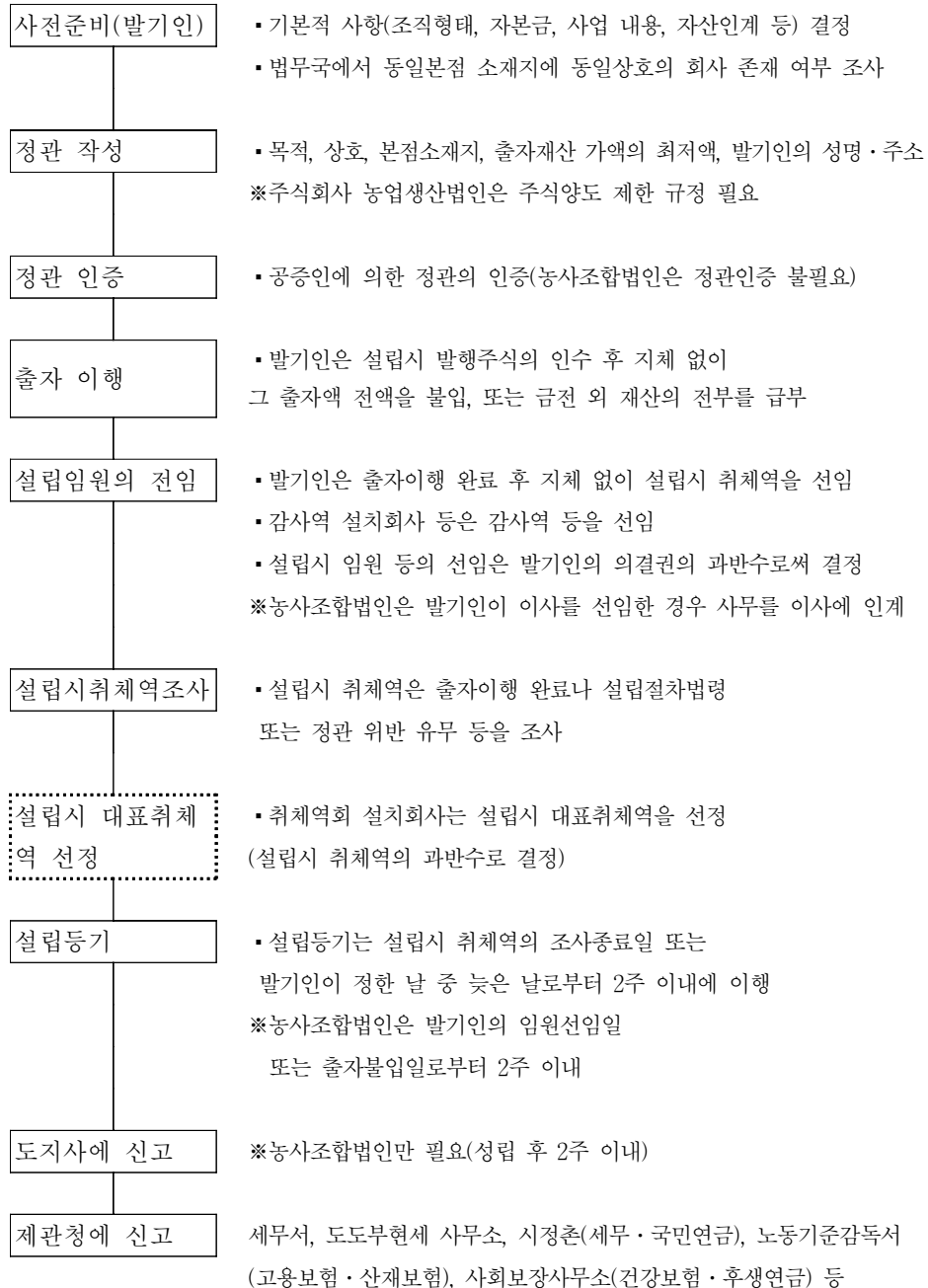
먼저 농사조합법인의 설립 절차는 ① 발기인회(3인 이상)의 개최와 기본적인 법인 내용 검토, ② 농업위원회에 허가사항 상담, ③ 사업계획 책정, ④ 정관 작성, ⑤ 설립도의서 작성, ⑥ 임원 선임(발기인회로부터 설립사무인수), ⑦ 출자금 불입, ⑧ 등기신청서류 작성, ⑨ 설립등기 신청(신청서 제출, 증명서 등 교부신청·수령), ⑩ 행정청에 설립 신고(시·정·촌 사무소, 농업위원회 등 농업생산법인 자격 인정, 세무서, 현세 사무소 등) 및 농협 조합원 가입 수속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는 ① 유한회사 설립의 기본적인 내용 검토, ② 상호의 조사·결정, ③ 농업위원회에 인·허가 사항 확인, ④ 사업계획 책정, ⑤ 정관 작성, ⑥ 정관 인증(공증인사무소), ⑦ 출자금 불입, ⑧ 설립등기 신청, ⑩ 행정청에 설립 신고(시·정·촌 사무소, 농업위원회 등 농업생산법인 자격 인정, 세무서, 현세 사무소 등) 및 농협 조합원 가입 수속 등으로 되어 있다.

농사조합법인은 「농협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제73조의 2항~14항).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¹⁵ 『NIRA研究報告書 No 940054: 新しい農業經營形態の研究-法人化の展望』, 総合研究開発機構, 1994, p. 67.

그림 4-6. 일본의 농업법인 설립 절차



조직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에는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와 발행 가능 주식 총수, 정관에서 정할 사항, 취체역 성명, 회계참사·감사역·회계감사인의 성명,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수 또는 그 산정방법, 조합원에 대한 주식 할당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지분을 대체하여 금전을 지불할 경우 그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조합원에 대한 금전 할당에 관한 사항, 효력발생일 등이 정해진다. 조직변경에 반대하여 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조합원은 조직변경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분 반환 청구 및 조합 탈퇴 가능하다. 조합원은 조직변경 후 변경계획에 의한 주식을 할당 받으며, 할당은 출자구좌 수에 따른다. 조직변경 조합은 효력발생일에 주식회사로 되고, 조합원은 그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 농사조합법인은 조직변경 즉시 행정청에 신고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서류를 효력발생일로부터 6일간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3.4.4.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

농업생산법인은 19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 22조에 ‘농업경영 법인화’의 추진이 명시된 이래 가족농업경영의 발전 형태로 인정되어 제도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지원 조직과 기구, 예산·세제·금융 지원, 정기적인 통계조사와 실태 파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조직 및 기구로는 농림수산성 내의 전담조직과 외곽 협력조직을 들 수 있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경영정책과 농업법인반이 설치되어 농업법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법인의 경우 반드시 농업위원회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9년 6월 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가 설립되어 ① 농업법인에 관한 경영정보의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② 조사·연구 등에 의거한 농업경영정책 등에 관한 제언, ③ 농업법인의 경영 개선에 관한 연수 및 교육, ④ 농업·농업법인의 인재

확보 및 육성, ⑤ 농업분야의 기술·기능·지식에 관한 외국인연수, ⑥ 일반국민에 대한 개발·보급, ⑦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2006년 당시 회원은 약 1,650개 법인 등(농업법인, 법인지향 농업인)이다. 2002년에는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8억엔으로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JA공제련), 농림중앙금고, 농림어업금융공고 등이 출자하였다. 출자대상은 설립 후 3년 이상 농업법인의 경우 3개년 평균 흑자이고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고, 설립 후 3년 미만 농업법인의 경우 재무기반이 양호하며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복식부기를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2004년 8월에는 농업법인 등의 경영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국 금융조정과 농업근대화자금반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출자와 융자의 일체적 제공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각 지역 농협과 신흥 및 농림중앙금고, 농림어업금융공고, 농업법인협회, 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주식회사 등에 상담창구를 마련하였다.

농업법인에 대해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으로는 <부록 IV>에서 보듯이 10여 개의 사업이 있는데, 농업법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농업생산법인 경영지원 출자사업’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중 ‘특정법인 등 농지 이용조정 긴급 지원’과 ‘애그리컬처 지원’ ‘광역 제휴 애그리비지니스 모델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법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정농업자·후계자·농업인단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 농지·시설·자재 등에 관한 사업 등도 농업생산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의 특례로는 청색신고를 이행한 중소기업·인정농업자농업법인·특정농업법인의 기계 취득에 대한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농업용기계 등에 대한 할증상각, 농용지 이용집적을 위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과 증여세 납세유예제도를 들 수 있다. 세제 면에서 법인경영의 경우 적자의 7년간 이월공제·환급, 임금·임원보수의 손금산입, 정률제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제), 상속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가족경영에 비해 유리하다.

금융 면에서 농업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자금은 대체로 인정농업자·후계자 등 가족경영도 이용할 수 있으나 용자상한액이 크고 활용할 수 있는 용자의 종류도 많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슈퍼L자금과 경영체육성장화자금의 용자상한액은 개인의 경우 1억 5천만 엔인데 법인의 경우 5억 엔으로 3배에 달한다.

농업법인은 농가와 대등한 농업경영체로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업센서스를 비롯한 각종 농업통계의 조사 대상이며, 농업법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통계 편람’에 해당되는 『ポケット農林水産統計』에 농업생산법인 및 농사조합법인의 유형별·업종별 숫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농업서비스사업체와 농가이외의 농업사업체의 동향에 대한 조사도 매년 실시되고 있다.

4. 외국의 농업법인제도 비교분석

여기서는 사례 대상이 된 독일, 프랑스, 일본 3개국의 농업법인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먼저 농업법인을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일본은 농업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농업법인경영체를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가 「상법」상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혹은 「협동조합법」상의 등록조합으로 등록하면 농업법인경영체가 된다. 반면에 프랑스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상업활동과 상거래가 수반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상업적 목적과 구별되는 민사활동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 및 자유직업활동을 민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대개 「민사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사회사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본의 농업법인은 「농지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농업경영체가 법인격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독일에서 경영체의 유한책임 여부이다. 농업경영체에 일반 법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은 무한책임을 가지는 민법상의 회사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을 인적회사로 분류해 법인과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회사 형태의 경영체를 모두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영체의 유한책임이 법인을 규정하는 주요 척도가 되어 회사이지만 법인이 아닌 비법인회사가 존재한다. 그런데 농업경영민사회사(SCEA)는 무한책임의 민사회사지만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는 독일과 일본의 중간 형태에 해당한다 하겠다.

농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되는 농업경영체 개념은 독일, 프랑스, 일본 3개국 모두 갖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즉 농업생산 활동이 농업경영체의 지표가 된다. 여기서 개념상 관건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다.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 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법 상의 농림업 개념이다.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지표는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 총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조세상의 농림업 개념은 기본적으로 법인을 제외한 농업경영체의 농림업 생산활동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영농 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면,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가 주어진다. 프랑스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촌법전」 상의 농업활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 농업경영체가 된다. 「농촌법전」 제311-1조에는 농업생산이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활동과 농외 활동에 속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고, 특히 농업생산법인에는 법인의 사업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범위가 ‘신농정’을

계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즉 그 전에 농업 및 그 부대사업에 한정되었던 사업범위가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가공, 농산물의 저장·운반 등 농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농업생산법인과 일반농업법인에 대한 구분은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다. 독일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고 농업법인경영체는 모두 농업생산법인에 해당한다. 즉 독일에서는 농업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영체는 농업경영체로 파악되지 않고 이들이 법인 등록을 하면 일반 법인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민사회사법」으로 등록한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법인에 해당하지만, 「상업회사법」으로 등록한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법인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도 프랑스는 일본과 독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독일의 농업법인제도는 기업농적 혹은 협업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규모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 형태가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다. 이 영농조합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서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는 농가인 가족

표 4-22. 외국의 농업법인제도 비교

구 분	독일	프랑스	일본
농업법인의 성격	일반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
법인의 지표	경영체의 유한책임 여부	유한책임/회사형태	회사 형태 여부
농업경영체 개념	농업생산 중심 경영체	농업생산 중심 경영체	농업경영/농외 활동 구분
농업생산법인/일반농업법인 구분	없음	민사회사법상 법인/상업회사법상 법인 구분	있음
특징	기업농적, 협업농적 대규모 법인경영	가족농적 법인경영	대규모 법인경영에서 가족농의 법인화로 전환

농을 법인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조직과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족농 법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공동농업경영그룹(GAEC)과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가 된다. 일본은 당초에 농업법인의 도입취지를 가족농업경영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협업경영을 조장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나, ‘신농정’ 개혁에 이르러 가족농업경영을 법인경영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즉 영농규모의 확대보다 농업경영의 내용과 질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는 농업법인이 가족농업경영의 보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부터 발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농업법인제도는 그 목표가 당초의 독일식 대규모 협업경영에서 프랑스식 가족농의 법인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1.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에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목적은 협업적 농업경영 혹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대규모 농업 생산경영체를 창설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를 평가해 볼 때, 당초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 농업법인제도의 도입이 영농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른 자발적 움직임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농정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규모 경영체가 많이 창출되지 않았다. 많은 경우 농가들이 개별 경영을 하면서 인센티브 등으로 부차로 법인경영에 참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업생산법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농업법인들에 있어서 농업생산 자체는 주로 농가들의 개별 경영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농업법인들이 농업생산보다 유통 및 가공 등의 농업서비스 활동에 치중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농업법인이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모두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순수한 농업생산법인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농업생산법인을 농업법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는 당초 농업법인의 도입취지가 기존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창설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농업서비스법인이 목표로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농업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의 창설 없이 일반 법인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농업생산법인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한다. 그 하나는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적, 협업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농가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법인제도는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경영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영체를 유한책임의 법인경영체로 제도화하여 부채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농가 단위의 소규모 법인제도의 도입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발전 방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농업법인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요컨대 농업생산법인 발전의 기본 방향은 한편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를 창설하는 것이다.

농업서비스법인의 발전 방향은 농업서비스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전문법인으로 특화할 수 있게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여기서 농업서비스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현재 농업법인에게 복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기능 중에서 농업생산 기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이는 일반 서비스회사와 같이 자본투자와 설립이 내용적으로 자유롭게 된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 농업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농업생산 기능과 결부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서비스법인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부분적으로 경영하던 농업생산이 있다면, 이를 투자한 사원(조합원)의 개별 생산으로 환원하든지 농업서비스법인의 (생산)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농업법인 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의 구체적 시행절차는 당면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농업법인제도가 안고 있는 관리 및 운영상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와 관련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법인의 유형에 맞는 차별적인 농정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여기서 농업경영체와 관련된 새로운 시대적 요구는 기존의 농가조직 경영에서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경영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부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의 유형에 맞는 차별적인 농정은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유형화하여 법인을 구분하고, 농업생산법인에 대해서는 농가와 같은 농업경영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서는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차별적 농정과 관련해서 농업법인의 유형화로 발생하는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간의 분리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수직통합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한 유형의 농업법인이 다른 유형의 농업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식을 수직통합의 한 형태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장기 발전 방향에 속하는 내용이다.

2. 제도 개선방안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편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하고, 각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이 여기에 제시된다.

- ①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 해결
- ② 가족농 규모의 유한책임경영체 도입
- ③ 농업법인의 유형 구분에 의한 새로운 농업법인체제 구축

2.1. 제1단계 : 농업법인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 해결

2.1.1.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의 경영 상태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법인운영을 상담·지도하고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밟게 하는 관리 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 농업법인경영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는 이를 잘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영농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할 때 협동조합 심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매년 협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법인의 관리 기구가 없고, 이에 따라 개별 농업법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는 일차로 농업인에 대한 지도·상담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의무와 함께 관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다시 말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게 관내 농업법인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활동 중인 농업법인 중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법인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게 하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전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농업경영체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농가등록제가 준비 중에 있다. 농가등록제는 우선 농가들을 등록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단계로 농업법인에 대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등록제가 시행되면 농가등록관리기구가 농업법인의 관리 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기구와 별도로 법인의 경영 실태를 심사·평가하고 경영문제에 대해 상담·지도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한다. 이러한 전문기구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농업법인협회 산하 전문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농업법인을 대표하는 협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농업법인협회 산하 전문조직의 설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심사 및 상담업무를 농협중앙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별도의 전문기구가 설치되도록 한다. 여기서 심사 및 상담전문기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한다.

2.1.2.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법인 정비

법인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법인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회계신고를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기구가 법인통계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관리 기구는 유명무실한 법인들에 대해 일차로 자발적 해산을 권고한다. 그 다음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않는 법인 중에서 강제해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 법인은 관리 기구가 직권으로 해산한다.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리 기구의 직권해산이 어려운 법인은 부실한 법인의 청산과 같은 범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법인의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고 부채 비율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기구가 일차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이 법인은 부실한 법인으로 간주한다. 관리 기구는 부실한 법인에 대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을 명할 수 있다. 청산에서 법인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으면, 법인의 성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즉 유한책임법인은 출자한도 이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무한책임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이 변제하지 못한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다. 청산이 끝난 법인은 해산하도록 한다.

2.1.3. 세제상의 지원 강화 및 지원제도 정비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대부분 시한부로 되어 있고 그 중 2006년 12월말을 시한으로 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세제상의 지원은 일

차로 면제 및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감면시한 연장은 아직 대부분의 농업법인들에 있어서 수익규모가 영세하여 도약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소득세는 2009년까지 면제되어 있으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06년 12월 말까지 면제 및 감면되게 되어 있다. 즉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업소득의 배당이 전액 면제되고, 농업외 소득의 배당은 1,2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5%의 저율세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부과되고,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및 감면 시한은 농업소득세와 같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업회사법인에도 농업소득 배당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소득의 배당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면제하고, 농업외 소득의 배당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한다.

2006년 12월말로 도래되는 농업법인의 법인세도 일차로 2009년 말까지로 감면시한을 연장하도록 한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의 경우 농업소득과 관련되면 면세되고 농업외 소득과 관련되면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업소득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면제되나 농업외 소득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에 한해서만 법인세의 50% 감면이 이루어진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지원규정이 2009년 말까지 3년간 시한이 연장되도록 한다.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내용을 검토하여 조세상의 우대를 계속할 것인지, 우대를 철회할 것인지 결정하고, 우대를 계속할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이 아닌 확정적 형태로 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화는 이 부분에 대해 5%의 저

을 부가가치세를 시한부가 아닌 형태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¹⁶

2.1.4. 농업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관계 개선

농업법인과 농업협동조합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주로 유통 및 가공 중심의 농업법인이다. 이런 농업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법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농협의 경제사업과 중복되어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양자 간에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농업법인과 농협의 관계 개선에서는 농업법인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개선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법인을 농업생산 위주의 법인과 농업서비스 위주의 법인으로 구별해서 차별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농업생산 위주 법인은 농업생산경영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와 동일한 농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구비하고 이를 장려한다. 농업법인 차원에서는 정관에 농협의 (정)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인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특히 독자적인 유통활동을 하지 않는 농업생산 위주법인은 수직통합의 대안으로 농협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농협은 농업법인의 조합 참여에 대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농업법인을 조합원으로 적극 유치하도록 한다. 즉 농협과 농업법인의 관계가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양자 가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농업서비스 위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이 대부분 농협의 경제사업과 중복되어 경쟁 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이때에도 이러한 경쟁 관계를 탈피하여 농업법인의 경영 마인드와 농협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

¹⁶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에 투입되는 재화와 산출되는 생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 세율인 16% 대신에 9%의 저율로 부과하고 있다.

록 한다. 농업법인과 농협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농업법인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준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으나, 필요시 이러한 준회원 규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이 조합공동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농업법인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핵심적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기업적 경영 마인드를 접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농협과 농업법인의 개별적 유통으로 인한 경쟁 관계하에서도 양자 간의 합의와 업무분담으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밀양시 무안단감 영농조합법인과 무안농협 간에 갈등 해소 사례에서처럼 양자 간의 실제적인 업무협외와 역할 정립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방안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협동조합의 일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받게 하는 방식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는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영농조합이 준용할 수 있는 모법을 「민법」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유한책임의 농업협동조합에 속하게 되는 제도상의 변화가 생기고, 지역 농협과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산출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협동조합의 새로운 유형인 생산조합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농업생산조합인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 이러한 제도적 틀을 갖고 있는데, 이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생산조합으로 전문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행 농업법인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단계(후술하는 제3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5. 농업법인의 (회사)유형간 조직변경 용이

영농현장의 농업법인들 중에는 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영체들이 다수 있다. 즉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내에서도 합명 내지 합자회사가 유한회사 등으로 법적 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당초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농업법인 설립자들이 법인들의 법적 형태상의 차이, 즉 제도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한 법인 유형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경영체에 보다 적합한 법적 형태를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인의 조직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회사법인의 모법인 상법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에 상호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 밖의 경우는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업법인의 조직변경도 용이하지 않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다른 유형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청산절차를 거쳐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변경하려는 법적 형태를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설립해야 한다. 실제로 있어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법인의 법적 형태를 경영체 선택의 메뉴로 활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유형들 간의 조직변경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체계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변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합명 또는 합자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법인이 법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완전한 청산과 해산을 거치지 않고 조직변경과정을 통해 법인의 모든 형태를 바꿀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변형법」(Umwandlungsgesetz)과 「변형조세법」(Umwandlungssteuergesetz)을 통하여 법인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별 변경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인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이것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민법」과 「상법」 같은 전체적인 틀을 수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조직변경은 일차로 농업법인을 직접 규율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농업법인의 법적 형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례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나, 주된 입법취지는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인 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청산 및 해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적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출자자본이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기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수 있게 한다.¹⁷

2.2. 제2단계 : 가칭 “유한영농법인” 제도 도입

2.2.1.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가족농 형태의 농가경영을 프랑스식 소규모 법인경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법인경영은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경영 및 자본에 대한 유한책임으로 부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인경영을 가능케 하여 농업후계자를 승계농 형태로 육성할 수 있다. 요컨대 가족농인 농가의 대안이 되는 농업경영체를 새로운 농업법인제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농업법인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향조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약 70%가 도입을 찬성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새로운 농업법인제도를 기존의 농업법인 상의 유한회사나 일반법인 상의 유한회사의 틀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다. 가칭 “유한영농법인”이라 명명할 수 있는 새로

¹⁷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이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607조 2항.

운 제도를 기존의 법인제도 틀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먼저 “유한영농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업무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제도화된다는 점이다. 법인의 성격을 농업생산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체계 내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유한영농법인”은 사원의 수 등에서 유한회사의 일반적 규정보다 더 제한적인 내용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공동경영을 적극 장려하며 승계농 육성을 위해 부자간의 공동경영시 상속상의 혜택을 주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농업생산법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산 농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점도 기존의 농업법인제도 내의 유한회사와 차이점이 된다.

2.2.2. “유한영농법인” 제도의 내용

“유한영농법인”은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농업인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상한을 최대 10인으로 한다. 출자한 자본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로서 회사의 출자자본금을 최소 1,000만원으로 한다.

“유한영농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차할 수 있다. 여기서 농업생산법인은 후술하는 ‘엄밀한 의미의 농업경영체’ 개념에 속하는데, 농업생산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 적어도 경영체 총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유한영농법인”을 구성하여 부모가 출자액을 법인에 속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승계를 용이하도록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시안은 상속액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세하고, 상속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최저상속세율인 10%를 적용하도록 한다. 단 상속의 특혜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영농법인”으로 농장을 상속한 자는 적어도 10년 동안 농장 전체 혹은 일부를 매각하지 못하며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자(父子) 간의 “유한영농법인”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자식이 단독으로 법인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2인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경영체로서 영농부기의 기장과 결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상법상의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2.3. 제3단계 : 농업법인 유형 구분과 제도 개편

2.3.1. 개요

제3단계는 기존의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법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가 가능한 농업경영체가 된다. 반면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 농업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으로서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자유롭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 관련 회사가 된다.

농업법인을 유형에 따라 이처럼 구분하는 이유는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활동을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가 농업법인의 유형별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결국 농업법인정책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분화하게 되면,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경영체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과 동일한

표 5-1. 새로운 농업법인제도(안)

일반/특수법인	법인의 유형	제도적 형태	특성
농업법인 (특수법인)	농업생산법인	영농조합법인	기업농적 대규모 생산법인
		유한영농법인	가족농적 소규모 생산법인
	농업서비스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의 유통·가공법인

농업생산자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농산물 유통 등을 담당하는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자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인의 경영과 출자에서 농업인 제한규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비농업 분야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일차로 농업생산법인의 육성전략은 두 가지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농적 소규모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육성전략의 구체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과 가칭 “유한영농법인”으로 제도화된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개편하는 것이고, “유한영농법인”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농업서비스법인 유형에 속하는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단일화하고,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영역과 비농업인 제한 규정, 농지소유 규정 등을 변경한다. 다시 말해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비농업 분야의 투자와 경영은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2.3.2. 농업경영체 개념 정립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는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정의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농업법인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정의는 농업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 농업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경영체 전체활동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농업활동의 크기로 농업경영체를 인정하는 기준은 유럽 국가들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적어도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 경영체 총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유통활동을 통한 매출

이 경영체 총매출의 40% 이내이어야 전체를 농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농업생산이 중심이 될 때 전체활동을 농업활동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도 농업활동과 결부된 농업경영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와 시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핵심은 농업생산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조세상의 농업활동 개념을 참고하여 시안을 작성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다.

- 유통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것은 농업활동에 포함됨.
 - 농업경영체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는 경우, 이것은 모두 농업활동으로 인정
 - 개설한 유통업을 통한 매출이 생산한 농산물의 총 매출액의 40% 이하일 때, 전체를 농업활동으로 인정
 -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한 금액이 경영체 총 매출의 30% 이하일 때 전체를 농업활동으로 인정
-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것은 농업활동에 포함됨.
 - 농산물의 가공 수준이 단순가공단계(예를 들어, 정미작업)에 해당할 때는 농업으로 인정하나, 그 이상의 가공단계(예를 들어, 떡 만들기)는 산업활동으로 간주
- 농기계수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경영체 총 매출의 1/3을 초과하지 않을 때, 전체를 농업활동으로 간주함.

2.3.3. 영농조합법인 제도 개편

영농조합법인의 개편은 일차로 영농조합법인을 농업생산법인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농업생산법인은 엄밀한 의미의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생산이 주된 경영활동이 되고, 유통 및 가공 활동은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

거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말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 및 가공이 주된 사업이 되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한다. 이는 농업생산법인 내에서 농업서비스 활동을 수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농업회사법인은 순수한 농업서비스법인이기 때문에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 농업회사법인 내에서의 농업생산 활동은 구성원들의 개별 생산으로 환원하든지 “유한영농법인” 등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영농조합법인을 기업농적 농업경영체의 전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내적 조직구조를 단일한 경영체 구조로 변모시키고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즉 영농조합법인의 활동과 별도로 조합원의 개별 생산이 이루어지는 법인의 내적 구조에 변화를 유발하고 법인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이 조합원의 농지를 임차하게 하고, 이를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프랑스의 농업법인(GAEC) 경우처럼 지원금액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다만 동일한 농업인에 대해 법인과 개인으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영농조합법인의 기업농적 성격을 강화하고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율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요건을 농업인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개정한다. 이는 농업법인의 단점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8%가 “의사결정 지연”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민법」상의 조합 대신에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생산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대안을 영농조합법인의 장기적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 독일의 경우 영농조합을 농업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동반하도록 한다.

2.3.4. 농업회사법인 제도 개편

농업회사법인 개편의 핵심은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생산이 없는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하고, 비농업 분야의 자본투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고, 따라서 농업생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출자와 경영에서 농업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비농업인만으로 출자와 경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타 사항에서는 현행 농업회사법인 제도들을 유지하도록 한다.

농업회사법인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을 새로운 제도들에 입각한 법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면 농업생산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이

표 5-2. 새로운 제도에 의한 농업법인의 개편 유형

기존 법인 형태	조건	개편 내용
영농조합법인	· 농업생산활동 중심	· 영농조합법인 혹은 “유한영농법인”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없음	· 농업회사법인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병행	· 농업회사법인 · 농업생산법인(유한영농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 농업회사법인 · 구성원의 개별 생산으로 전환
농업회사법인	· 농업생산활동 중심	· 영농조합법인 혹은 “유한영농법인”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없음	· 농업회사법인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병행	· 농업회사법인 · 농업생산법인(유한영농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 농업회사법인 · 구성원의 개별 생산으로 전환

나 “유한영농법인”으로 변경한다. 만약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의 유통이나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면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다.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내에서의 농업생산 활동은 구성원들의 개별 생산으로 환원하든지 “유한영농법인” 등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이 일반 회사법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유리점을 갖도록 제도를 구성한다.

첫째, 농업부문으로의 자본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등 세제에서 우대 조치를 실시한다.

둘째, 농산물 유통 등 농업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한다.

셋째, 농업생산법인과 수직통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23.5.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 육성

농업생산과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생산과 서비스 영역 간의 수직통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업법인 제도하에서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활동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화에 의한 수직통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농업법인 내에서 생산법인과 서비스법인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면,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 간의 수직통합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 간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직통합의 형태로는 먼저 하나의 농업생산법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농업서비스법인을 자회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농업생산법인이 연합하여 하나의 농업서비스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주)로즈피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형태는

하나의 농업서비스법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농업생산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¹⁸ 이러한 수직통합의 형태는 개별법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제도적으로 이러한 계열회사 설립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즉 농업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해서는 단독법인에 비해 설립요건을 간편하게 한다. 그리고 정책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에서 계열회사(자회사 혹은 모회사)를 가진 농업법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¹⁸ 친환경농산물유통회사 (주)게비스랜드가 2개의 영농조합법인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어 비슷한 유형이지만 (주)게비스랜드가 일반회사법인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농업법인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두 가지 형태로 창설되었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생산법인의 모형에 입각한 농업법인으로 창설되고, 위탁영농회사는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구성됨으로써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인으로 창설되었다. 1994년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여 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출하와 가공 등의 생산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위탁영농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개명하여 농업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하고, 농지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농업정책은 농업법인에 대해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설립자금·시설자금·운용자금 등을 대폭 지원하다가 농업법인의 난립과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1997년부터 정책사업 자격 기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은 방향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 있다.

현행 농업법인의 제도적 특징은 첫째, 영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농산물 생산과 유통·판매를 겸영할 수 있으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3인(주식회사) 또는 2인 이상(기타 회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자간 또는 부부간에도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는 아직 없다.

현행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농업법인제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영농

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적용받는 협업체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받는 기업체로 설계되었지만,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경제조직을 규율하기에 미약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에서 두 조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복합사업이 농업법 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담하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 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농업법인이 유통분야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경쟁 및 경합관계에 서게 된다. 농업법인이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협이 유통 및 가공 관련 농업법인을 조합원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넷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기관이 없다. 현재 농업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한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농업법인들의 조직체인 협회조차 해체된 상태에 있어 자율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운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다섯째,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중 상당 부분이 특정시점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시한부 규정에 놓여 있다. 농업법인 관련 조세 중에서 국세에 속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상의 우대 조치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다.

외국의 농업법인제도로부터 제도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이 연구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독일은 농업법인경영체를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농업경영

체가 「상법」상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혹은 「협동조합법」상의 등록조합으로 등록하면 농업법인경영체가 된다. 독일에서 법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영체의 유한책임 여부이다. 경영체의 책임이 유한일 때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한책임을 가지는 경영체는 비록 상법상의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이 되지 못한다. 독일에서는 무한책임을 가지는 민법상의 회사(GbR)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을 인적회사로 분류해 법인과 구별하고 있다.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즉 농업생산 활동이 농업경영체의 지표가 된다. 여기서 개념상 관건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다.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법상의 농림업 개념이다.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는 영농 활동 희망자와 현재의 종사자에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메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영농 활동 희망자는 자신의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영농조직 형태를 찾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형태가 메뉴로 기능하게 된다.

독일의 농업법인경영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형태는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

- ① 영농조합은 법적으로 등록조합인 법인임.
- ② 영농조합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임.
- ③ 영농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인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영농조합)으로 분류됨.

프랑스에서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민사회사법」(droit des sociétés civiles)상의 회사법인이다. 농업경영체가 「상업회사법」상의 회사로 설립되면 일반 회사와 같은 규정을 받는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농업법인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법인으로 설립된 농업경

영체를 의미하고, 농업법인제도는 이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회사법」을 통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①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②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③ 농업경영민사회사(SCEA) 등이 있다.

여기서 GAEC은 가족농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법인으로서 고용노동력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을 제한하고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공동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GAEC에 지분을 출자한 각 구성원들은 농업경영주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GAEC의 경영과 경영 성과에 관여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출자지분의 두 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프랑스에서 GAEC의 구성원은 개인경영체의 구성원보다 낮은 수준의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EARL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에 도입되었는데, 보다 실질적으로는 GAEC이 축소돼 1인 참여자로 구성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EARL의 기본성격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와 동일한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보유지분에 비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참여지분 한도 내로 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과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일반농업법인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로서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법인이다. 농업생산법인제도는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데, 즉 ① 1993년 ‘신농정’ 이전 단계, ② ‘신농정’ 단계, ③ ‘신농정’ 이후 단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기는 신농정 단계이다.

1993년에 일본은 1961년의 「농업기본법」 이후 시행해 온 ‘기본법농정’에서 이른바 ‘신농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농업법인제도도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신농정에서는 ‘농가’가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그에 필요한 농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제도의 변천 과정은 한마디로 농업법인의 도입취지가 당초 가족농업경영의 발전을 위한 협업경영의 조장에서 가족농업경영

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농업법인은 가족농업경영의 보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부터 발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농업생산법인을 농업법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는 당초 농업법인의 도입취지가 기존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창설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농업서비스법인이 목표로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농업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의 창설 없이 일반 법인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농업생산법인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한다. 그 하나는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적, 협업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농가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법인제도는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경영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영체를 유한책임의 법인경영체로 제도화하여 부채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농가 단위의 소규모 법인제도의 도입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발전 방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농업법인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농업서비스법인의 발전 방향은 농업서비스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할 수 있게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여기서 농업서비스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현재 농업법인에게 복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기능 중에서 농업생산 기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이는 일반 서비스회사와 같이 자본투자와 설립이 내용적으로 자유롭게 된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 농업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농업생산 기능과 결부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서비스법인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부분적으로 경영하던 농업생산이 있다면, 이를 투자한 사원(조합원)의 개별 생산으로 환원하든지 농업서비스법인의 (생산)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편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제1단계는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관리·운영상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현안 해결을 위해서 첫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법인관리기구로 지정해 농업법인을 관리하도록 한다. 둘째, 관리 기구가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법인에 대해 강제 해산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한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면제 및 감면 시한을 연장한다. 넷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활용하여 농업법인과 농업협동조합의 관계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들에 대해 조직변경을 용이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제2단계는 가칭 “유한영농법인”으로 명명되는 가족농 규모의 유한책임 경영체를 새로운 법인제도로 도입하는 단계이다. 가족농 형태의 농가경영을 소규모 법인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 제도는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경영 및 자본에 대한 유한책임으로 부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인경영을 가능케 하여 농업후계자를 승계농 형태로 육성할 수 있다.

“유한영농법인”의 제도적 구성에서 법인의 설립은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농업인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상한을 최대 10인으로 하고, 출자한 자본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로서 회사의 출자자본금을 최소 1,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유한영농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인”을 구성하여 부모가 출자액을 법인에 속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승계를 용이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자(父子) 간의 “유한영농법인”에서 부 또는 모

의 사망으로 자식이 단독으로 법인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2인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제3단계는 기존의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법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업생산법인의 육성전략은 한편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생산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농적 소규모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육성전략의 구체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과 가칭 “유한영농법인”으로 제도화된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개편하는 것이고, “유한영농법인”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농업서비스법인 유형에 속하는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단일화하고,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영역과 비농업인 제한 규정, 농지소유 규정 등을 변경한다. 즉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지만, 농업서비스분야에서 비농업 부문의 투자와 경영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제3단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구비되거나 추진되어야 한다.

- ① 농업경영체의 개념 정립
- ②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개편
- ③ 농업회사법인 제도의 개편
- ④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구비

이상과 같은 농업법인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정책적 제언이 필요한 부분은 현행 법률체계에 대한 것이다. 현재 농업법인제도는 농업정책의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법률체계라 판단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법인경영체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하고, 구체적인 제도는 별도의 집행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민사회사법」을 통해 법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농지

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을 통해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련 규정은 「농지법」에서 관할하고 농업법인의 조직유형에 관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관할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법인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하고 농업법인을 일관성 있게 관리·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11. 귀 농업법인과 지역 농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 ① 서로 협조하는 관계이다
- ②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 ③ 법인은 농협과 긴밀한 관계를 원하나 농협에서 배타적이다
- ④ 농협은 법인에 호의적이나 법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 ⑤ 별 관계가 없다.

12. 농협과 농업법인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

- ① 지역 농협이 농업법인을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 협조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 ② 농업법인은 농협과 별도로 독자적인 발전을 하도록 한다.
- ③ 농업법인이 농협의 품목조합 또는 판매전문조합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 ④ 농업법인이 지역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 ⑤ 지역 농협이 관내 농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기타()

13. 다음 중 귀 법인이 갖추고 있는 제도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장부 기입
- ② 종업원의 급여 체계
- ③ 가계와 경영의 분리
- ④ 조직과 역할 분담
- ⑤ 근무 규정

14. 농업법인이 갖추어야 할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시기상조이다
- ③ 불필요하다 ④ 잘 모르겠다

15. 현재 농업법인은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법인으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춘 법인에 대해서만 세제와 정책 및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반대 ④ 적극 반대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16.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부부로 구성되는 1호 법인, 부자(부모와 자식)로 구성되는 법인 등이 농업법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기 때문에 장부를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만, 부부나 부자간에도 월급을 철저히 지급하는 경영의 투명성이 이루어지고, 가계와 경영의 분리로 경영체의 책임이 유한책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1호 법인(농가 단위의 법인)을 도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적극 반대 ⑤ 잘 모르겠다

17.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불필요하다 ④ 잘 모르겠다

☞ 17-1. 필요하다고 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18. 농업법인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서 개선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하의 설문은 임의기록사항입니다.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다 깊이있는 연구를 위해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 농업법인의 출자현황(설립 당시와 현재)

구 분		설립 당시(년)	현재(2005년 말)
1) 출자자	출자자 수 합계	명	명
	- 농업인	명	명
	- 비농업인	명	명
2) 출자액	출자금액 합계	만원	만원
	- 현금	만원	만원
	- 현물	만원	만원

20. 농업법인의 개황

구 분		현재 (2005년 말)	
1) 상근 종사자	종사자 수 합계 - 출자자 - 상근직원		명 명 명
2) 소유 및 경작농지	농지합계 - 논 - 밭 - 과수원 - 기타		평 평 평 평 평
3) 가축 사육규모	- 한육우 - 젓소 - 돼지 - 닭 - 기타()		두 두 두 두 수
4) 주요 시설	- 사무실 - 선과선별장 - 가공공장 - 저온저장고 - 축사 - 종균배양장 - 버섯재배사 - 기타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5)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동력방제기 -기타	개 개 개 개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연간 매출액		억	만원

부록 2

농업법인 설문분석 집계표

■ 농업법인 유형

구분	빈도수	비율 (%)
영농조합법인	40	71.4
농업회사법인	14	25.0
기타	2	3.6
합계	56	100.0

■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된 목적

구분	빈도수	비율 (%)
경영규모 확대	9	15.5
노동력 부족 해소	1	1.7
정책자금 지원	5	8.6
시설 및 농기계 공동이용	3	5.2
농산물의 유리한 판매 및 가공 목적	26	44.8
경영체(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11	19.0
농작업 대행	1	1.7
기타	2	3.5
합계	58	100.0

■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사업

구분	빈도수	비율 (%)
농축산물생산	15	28.9
농축산물 유통판매	20	38.4
농축산물 가공	11	21.1
농작업 대행	2	3.9
시설 및 농기계 임대	0	0
기타	4	7.7
합계	52	100.0

■ 농축산물 유통판매와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원료농산물
매입 방식

구분	빈도수	비율 (%)
계약재배	19	44.2
위탁매입	3	7.0
시가에 따라 직접 매입	17	39.5
기타	4	9.3
합계	43	100.0

■ 농축산물 생산 법인의 사업 경험에 관한 필요성

구분	빈도수	비율 (%)
만드시 필요하다	16	30.2
필요하다	23	43.4
검하지 않아도 된다	7	13.2
검하면 안된다	1	1.9
상관없다	3	5.6
잘 모르겠다	2	3.8
기타	1	1.9
합계	53	100.0

■ 법인의 출자자(또는 조합원) 인원수

구분	빈도수	비율 (%)
5명 미만	17	29.3
5~10명	25	43.1
10~15명	2	3.5
15~20명	1	1.7
20명 이상	13	22.4
합계	58	100.0

■ 출자자(조합원)의 참여 방식

구분	빈도수	비율 (%)
개별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만 종사한다	5	8.9
개별적으로 영농하면서 농업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다	29	51.8
개별적으로 영농하고 농업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5	8.9
개별적으로 영농하지 않으나 농업법인의 경영은 법인 대표자가 단독으로 하고, 그 외 출자자는 종업원으로 일한다	5	8.9
농업법인은 사실상 대표자 단독으로 경영하고 나머지 조합원(출자자)는 명목상 조합원(출자자)일 뿐이다	8	14.3
기타	4	7.2
합계	56	100.0

■ 상근종사자의 평균 월급 수준

구분	빈도수	비율 (%)
100만원 미만	6	11.5
100~150만원	17	32.7
150~200만원	15	28.9
200~250만원	7	13.5
250~300만원	1	1.9
300만원 이상	1	1.9
기타	5	9.6
합계	52	100.0

■ 출자자(조합원)에 대한 배당 방식

구분	빈도수	비율 (%)
수익이 없어서 배당을 못하고 있다	18	31.6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고 있다	12	21.0
수익금 전액을 출자액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7	12.3
수익금의 일부를 출자액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14	24.6
기타	6	10.5
합계	57	100.0

■ 농업법인의 지역 농협의 조합원 가입 여부

구분	빈도수	비율 (%)
가입하지 않았다	26	45.6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11	19.3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18	31.6
잘 모르겠다	2	3.5
합계	57	100.0

■ 귀 농업법인과 지역 농협의 관계

구분	빈도수	비율(%)
서로 협조하는 관계이다	28	50.0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5	8.9
법인은 농협과 긴밀한 관계를 원하나 농협에서 배타적이다	11	19.7
농협은 법인에 호의적이나 법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0	0
별 관계가 없다	12	21.4
합계	56	100.0

■ 농업법인이 갖추어야 할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수	비율 (%)
반드시 필요하다	29	54.7
시기상조이다	9	17.0
불필요하다	5	9.4
잘 모르겠다	10	18.9
합계	53	100.0

■ 법인으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춘 법인에 대해서만 세제와 정책 및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수	비율 (%)
적극 찬성	28	50.0
대체로 찬성	18	32.1
반대	5	8.9
적극 반대	0	0
잘 모르겠다	4	7.2
기타	1	1.8
합계	56	100.0

■ 1호 법인(농가단위의 법인) 도입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수	비율 (%)
적극 찬성	19	34.6
찬성	19	34.6
반대	6	10.9
적극 반대	2	3.6
잘 모르겠다	9	16.3
합계	55	100.0

■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의 필요성

구분	빈도수	비율 (%)
반드시 필요하다	25	47.1
필요하다	18	34.0
불필요하다	4	7.6
잘 모르겠다	6	11.3
합계	53	100.0

부록 3

일본 농업생산법인 제도의 변천

구 분	1962	1970	1980	1993
취지	가족농업경영의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한 협업의 조장	차지, 고용노동력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	농지 등의 권리를 갖지 않은 농업후계자 등의 농업생산법인 경영에의 참여	농업경영법인화의 추진을 위한 사업범위, 구성원요건의 확대
법인형태요건	농사조합법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업요건	농업(농업과 병행하는 임업 및 농사조합법인이 행하는 농업협법 제72조의 8 제1항 1호에 규정하는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 및 부대사업			관련사업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도가공 등)을 농업에 추가
구성원요건	▪ 농지 등을 제공한 개인 ▪ 법인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			다음을 추가 ①농지보유합리화 법인, 농협 등 ②법인으로부터 물자공급 또는 노무제공을 받는 개인 단, ②③의 의결권 합계는 1/4이하, 각각은 1/10 이하
의결권요건 면적요건 노동력요건 수익배당요건	○ 다음이 과반 ▪ 상시종사자의 의결권 ▪ 구성원의 노동력 ▪ 구성원의 농지제공면적 ○ 이익배당은 종사분량배당 원칙	폐지		
업무집행임원요건	규정 없음	농지제공 겸 상시종사 구성원(농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한정)이 업무집행임원의 과반	상시종사구성원(농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한정)이 업무집행임원의 과반	

구 분	2000	2002	2003
취지	경영 형태의 선택폭 확대, 경영다각화 등에 의한 농업경영 법인화의 추진 및 그 활성화	지역 활성화와 농지의 유효이용(특구법에 의한 특례)	관련사업자 등과의 제휴에 의한 농업생산법인의 다양한 경영 전개(기반법에 의한 특례)
법인형태요건	주식회사(주식양도제한) 추가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법인에 농지의 권리취득 용인. 단, 이하 조건 충족 필요 ●유희농지 등이 상당히 존재하는 지역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으로부터의 대부방식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업무집행임원 1인 이상이 농업에 상시종사	변경 없음
사업요건	주된 사업이 농업(임업 등 포함) 및 관련 부대사업(매상고에서 과반)		변경 없음
구성원요건	①지방공공단체 추가 ②법인 추가 단, ②③의 의결권 합계는 1/4이하, 각각은 1/10 이하		인정농업자인 농업생산법인에 대해 농업관계자 이외 구성원의 의결권 제한 완화 ①정작사업자 및 농업생산법인에는 무제한 ②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1/2미만으로 제한
의결권요건 면적요건 노동력요건 수익배당요건			
업무집행임원요건	농업(관련사업 포함)에 상시 종사하는 구성원이 임원의 과반이고, 그 과반의 과반은 원칙으로 6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	변경 없음	

부록 4

일본의 법인경영에 대한 지원조치 (2006년 예산)

<예산보조>

지원조치 개요	예산액	대상자
○ 인정농업자의 규모 확대·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나 경영지도 등 (인정농업자 등 담당자 육성·확보 지원사업)	9.7억엔	인정농업자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행하는 농업생산법인 출자육성 (농업생산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또는 농지의 중개와 아울러 금전출자를 하고, 출자에 의해 취득한 당해법인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계획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무이자 대부(농업생산법인 경영지원 출자사업)	7억엔	요건(인정농업자일 것)충족 농업생산법인
○ 생산자재비 절감을 위해 모델지구에서 수치 목표를 설정하면서 선구적인 대응을 집중적으로 실시(생산자재비 절감성과 중시사업)	1억엔	농업생산법인
○ 인정농업자 등이 지불하는 리스료 일부 보조(후계자총합지원사업)	3.7억엔	인정농업자 등
○ 후계자협의회가 행하는 농지의 이용조정활동 촉진(농지의 이용조정활동지원사업)	8억엔	인정농업자 등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중개 기능을 최대한 활용, 농지의 이용집적이 집중적으로 행해지도록 지역실태에 합당한 대응을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의 대부(농지보유합리화총합지원사업)	54억엔	인정농업자 등
○ 농업참여 희망 특정법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이용조정활동 지원(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중 특정법인 등 농지 이용조정긴급지원)	405억엔 중	농업생산법인 등

○ 청년·농업법인·관계기관 등의 정보교환이나 네트워크 형성 지원, 구인·구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활한 고용취농을 추진하기 위한 소개예정과건 실시(신규취농자·여성농업인 등 육성·확보 지원사업 중 신규취농자 육성·확보 지원)	0.5억엔	농업법인 등
○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의 확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등에 의한 고품질 농축산물의 공급체제 확립을 위하여 시설·기계 등의 정비 지원(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중 산지경쟁력 강화)	405억엔 중	농업생산법인 등
○ 농업생산을 핵으로 가공·유통·판매 등에의 대응을 통하여 지역농업 담당자의 육성·확보에 결부되는 기계·시설 등의 정비 지원(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중 경영구조대책)	405억엔 중	농업인단체 등
○ 농업법인 등이 에그리비지니스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계·시설 등에 대한 지원(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중 에그리첼린저 지원)	405억엔 중	농업인단체 등
○ 농업법인 등이 실수요자 등과 제휴하여 에그리비지니스를 광역에 걸쳐 전개하는 데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등에 대한 지원(광역제휴 에그리비지니스 모델 지원사업)	12억엔	인정농업자단체 등
○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체제의 구축, 자급사료에 입각한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에서 도작경영과 연계한 사료작물의 생산 등을 추진하는 대응을 지원(경축연계축진대책 논 사료작물 생산진흥사업)	62억엔	인정농업자 등

<세제의 특례>

○ 중소기업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30% 특별상각 7% 세액공제	청 색 신 고 중소기업
○ 농업경영 개선계획에 따라 일정 이상의 규모 확대를 한 경우 농업용기계 등의 할증상각(농업용기계 등의 할증상각제도)	할증률20%	인정농업자 인 청색신 고법인
○ 특정 농업법인이 농지의 이용집적에 필요한 경비로서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 손금 산입 및 준비금을 헐어 농용지·농업용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압축기장과 압축액의 손금산입(농용지이용집적준비금제도)	적립액 농업수 입의 9% 이하, 적립기간5년	청 색 신 고 실시 특정 농업법인
○ 증여세 납세유예 적용자가 특례적용농지 등을 모두 인정농업자인 농업생산법인에게 사용대차한 경우 납세유예의 계속	요건: 납세유예적용자가 대 표권 가진 임원, 상시종사 자이면서 농작업종사자	

<제도자금 등>

○ 법인을 포함한 인정농업자의 육성·개선을 위한 자금 용자 - 장기자금으로서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수퍼L자금) - 단기운전자금으로서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수퍼S자금)		인정농업자
○ 법인의 경영규모에 대응한 대부한도액 설정(수퍼L자금)	개인:1.5억엔(특인 3억엔) 법인: 5억엔(특인 10억엔)	
○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경영자에 대해 경영전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농업근대화자금)	특례한도액 개 인 1800만엔, 법인 2억엔	인정농업자 및 기타후계자
○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경영자에 대해 경영전개에 필요한 전향 투자자금과 아울러 상환부담 경감에 필요한 자금을 일체적으로 장기저리 용자(경영체육성강화자금)	개인 1.5억엔 법인 5억엔	인정농업자 이 외의 후계자
○ 농업법인 육성의 지원을 위해 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주식회사(농업법인투자육성회사)가 농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충실을 위한 투자 등 실시(농업법인투자육성사업)		인정농업자인 농업법인 및 특정농업법인

ABSTRACT

Investigation on the Management Statu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Finding Way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by conducting case studi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of agricultural corporation operators. It also seeks to come up with directions and practical ways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with regard to various aspects such as law, institution, and policy by drawing implications from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s and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problems faced by the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Korea toda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y distinction between the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and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is so ambiguous that it is difficult to gain much analytical benefits from their respective institutional features. Second, due to the broad dimensions of businesses covered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stretching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to marketing and other customer-oriented services, it is difficult to set accurate political objec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Third,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competitive or conflicting relationships with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carrying out their operations such as marketing. Fourth, there is no agency to oversee the agricultural corporations. Accordingly, agricultural corporations do not have their own systems to evaluate and monitor their management. Fifth, the tax benefit system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is only effective during a certain period as it is based on time-limited provision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Korean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achieve two distinct goals. One of them is to provide a basis for fostering large scale agricultural corporations as business enterprises.

The other is to establish a new form of corporation with the scale of small family farms, thus rationalizing the family farm management currently prevailing.

The institutional reforms for developing agricultural corporations can be attained by taking the following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to resolve the management and control related problems of today's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The second step is to introduce a limited responsibility enterprise with the scale of family farms, the so-called "limited agricultural corporation," as an alternative agricultural corporation. This system focuses on transforming family farms into a corporation type that pursues transparent management by separating the management from household economy and that minimizes the risks and debts through the limited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and capital. In addition, it makes possible to bring up a model for farm successors, allowing family management by parents and their sons or daughters alike. The third step is to set up a new corporation system that classifies the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s into two classes according to corporate functions; i.e. agricultural production corporation and agricultural service corporation. The former is consisted of large agricultural production units and small family farms. The latter assumes the form of a unified agricultural enterprise, being completely free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in non-agricultural sectors.

Researchers: Soo-Suk Kim, Seok-Doo Park

E-mail address: soosuk@krei.re.kr, sdpark@krei.re.kr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과정	19
표 2-2.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24
표 2-3.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31

제3장

표 3-1. 농업법인사업체의 운영 형태별 추이	37
표 3-2. 농업법인사업체의 업종별 추이	39
표 3-3. 농업법인의 출자금 규모별 분포	40
표 3-4.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와 출자자 규모별 분포	41
표 3-5.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와 종사자 규모별 분포	42
표 3-6. 농업법인의 경지 보유 및 재배 면적 현황	43
표 3-7. 법인당 자산·부채·자본 현황 및 법인당 경영 성과	45
표 3-8. 자산·부채·자본 규모별 법인 수	46
표 3-9.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47
표 3-10. 농업법인을 설립한 목적	57
표 3-11.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판매 겸업의 필요성	58
표 3-12. 출자자(조합원)의 법인경영에의 참여 방식	59
표 3-13. 농업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59
표 3-14. 법적 요건을 갖춘 법인에 정책지원 의견	60
표 3-15. 1호1법인(농가단위의 법인)의 도입에 대한 의견	60

제4장

표 4-1.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64
표 4-2. 독일 농업경영체별 경지 구성	65

표 4-3. 동서독지역 간의 농업경영체 구성 비교 (2005)	66
표 4-4. 독일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노동단위당 소득 비교	66
표 4-5. 주업농과 동독지역 법인의 노동단위당 소득 비교	67
표 4-6. 라이파이젠협회의 협동조합 구성	76
표 4-7. 동독지역 법인경영체들 간의 노동소득 비교	79
표 4-8. 프랑스의 농업경영체 현황	81
표 4-9. 프랑스 전문농의 경영규모별 분포	81
표 4-10. 품목별 프랑스 전문농 현황	81
표 4-11.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	83
표 4-12.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 구성	84
표 4-13.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경지면적 보유현황	85
표 4-14.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평균 경지면적 (2003)	86
표 4-15. 프랑스 회사형태 농업경영체의 경영자 구성 추이	87
표 4-16. GAEC과 EARL의 운영실태 비교 (1997)	92
표 4-17. GAEC과 EARL의 제도적 특성 비교	93
표 4-18.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추이	96
표 4-19. 일본에서 1호(戸) 1법인의 법인화 이유	105
표 4-20. 일본의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비교	110
표 4-21. 일본 농업경영 법인화의 이점	112
표 4-22. 외국의 농업법인제도 비교	119

제5장

표 5-1. 새로운 농업법인제도(안)	132
표 5-2. 새로운 제도에 의한 농업법인의 개편 유형	136

그림 차례

제4장

그림 4-1. 독일 협동조합 체계	77
그림 4-2. 프랑스 농업경영체 구성 변화	85
그림 4-3.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조직형태별 추이	97
그림 4-4.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업종별 추이	98
그림 4-5. 일본 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유형	102
그림 4-6. 일본의 농업법인 설립 절차	114

참고 문헌

- 권용대. 1997. “농업법인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전략”, 『농업과학연구』 24(2), 충남대학교농업과학연구소.
- 김병택. 1992. 『농업의 법인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1992.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1998.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정책 방향』, 농정연구포럼.
- _____. 1999. “농업법인의 경영체 성격에 관한 고찰”, 『농촌경제』 2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 김홍배. 1990.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 박문호. 1994.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 방안: 농업법인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199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1999.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4.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준보. 1962. “기업농과 협동농의 생산성 평가”, 『농업경제연구』, 한국 농업경제학회.
- 김준오. 1995.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 _____. 1996. 『영농조합법인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 농촌진흥청. 1997. 『농업법인경영체 운영 사례』.
- 농협중앙회. 1991. “일본 농업법인의 제형태와 발전 방향”, 『농협조사월보』 4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_____. 1993. “일본의 농업법인 운영과 농협의 대응”, 『농협조사월보』 4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_____. 1996.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 방향』.
- 박광서. 1999. “농업법인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성장 가능성-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로”, 『농촌사회』 제9집. 한국농촌사회학회.
- 박문호. 1996. 『농업회사법인의 유형별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 · 전익수. 2000. 『농업법인경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호. 1999.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수지 분석과 경영모형 설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기석. 1997. “양돈영농조합법인의 경영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3(1), 한국축산경영학회.
- _____. 1997. 『영농조합법인의 발전 과정과 경영효율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인식. 1995. “우리나라의 기업농 육성에 관한 연구: 기존 영농법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우. 2001. “기업농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연구: 농업생산주체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1-1, 한국농촌사회학회.
- 유진채. 1997. “농업경영체 육성의 정책대안으로서 농업법인화의 과제와 정책-충북의 농업법인에 대한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8집, 충북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 이건열. 1997. “전남지역 농업회사법인의 수익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3), 한국지역개발학회.
- 이상영 외. 2001. “한우법인의 사업 유형별 경영분석”, 『농업경영 · 정책연구』 28-3, 한국축산경영학회 · 한국 농업정책학회.
- 이성호. 1997. “농업회사법인 성립의 경제적 의미”, 『농촌경제』 2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1997.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철희. 1996. 『한우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체계화와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 이형순. 1995. “농업회사 및 법인의 육성 방안”, 『농어촌공사』 105, 농어촌진흥공사.
- 임상봉. 1995.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업법인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농어촌

진흥공사·농어촌연구원.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2005. 『농산업 수직통합의 유형별 비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광호. 1998. “축산영농조합법인의 발전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한국축산경영학회.

堀越孝良. 1995. 『農業法人經營發展の條件(日本の農業 194)』, 農政調査委員會
農政ジャーナリストの會編. 1993. 『經營法人化への期待と現實(日本農業の動き 10
6)』, 農林統計協會.

迫田登稔. 1999. 『水稻作法人經營における經營展開と人材育成(日本の農業 209)』, 農政調査委員會.

三石誠司. 2000. 『アグリビジネスと農業の將來(のびゆく農業 909)』, 農政調査委員會.

小林芳雄. 1994. 『農業法人のつくり方: メリット, 運營, 經營分析』, 農山漁村文化協會.

是永東彦. 1995. 『フランスにおける農業法人の動向と役割 (のびゆく農業 842)』, 農政調査委員會.

新山陽子. 1996. 『畜産の企業形態と法人畜産經營(日本の農業 196)』, 農政調査委員會.

伊藤忠雄. 1991. 『現代農業生産組織の經營論』, 農林統計協會.

伊藤忠雄 等. 1993. 『農業經營法人化經營戰略』, 農林統計協會.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1993. 『經營管理指導の進め方: 法人經營への道』.

全國農業會議所. 1993. 『農業法人への挑戰』.

_____. 1995. 『農業法人の經營診斷: その手法と實踐例(農業法人經營展開シリーズ 1)』.

_____. 1995. 『農業生産法人の經營管理に関する調査結果(調査研究資料第254号)』, 全國農業會議所.

_____. 1998. 『雇傭型農業生産法人の勞務管理と人材養成に関する調査結果(調査研究資料第278号)』, 全國農業會議所.

_____. 2000. 『特定農業法人の實態に関する調査結果(調査研究資料第293号)』, 全國農業會議所.

井出万仁. 1999. 『誰にもわかる農業法人: 新農基法と法人化推進』,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 酒井富夫. 1992. 『農業法人制度の課題(日本の農業 181)』, 農政調査委員会.
- _____. 1994. 『(早わかり)農業法人のすべて: メリットと設立, 運営の手引き』, 家の光協會.
- 清水 卓. 2000. 『フランスの法人経営(のびゆく農業 902)』, 農政調査委員会.
- 塚田章二郎. 1996. 『中山間地農業の活路: 大規模複合型農業法人と明日の地域農業』, 川邊書林.
- 椿眞一. 2005. 『水田農業における農業生産法人の組織構造と発展形態』, 農政調査委員会.
- Agrest primeur. 2005.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n*.
- AGREST Cahiers. 2004. *Sociétés agricoles : entre modernité et tradition*, 2004 No.2.
- _____. 1999. *Les sociétés agricoles, une affaire de famille*, 1999 No. 41.
- AGRESTE. 2000. *Recensement agricole 2000*.
- _____. 1997. *Enquete structure 1997*.
- aid. 2005. *Besteuerung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Bonn.
- _____. 2003. *Rechtsformen landwirtschaftlicher Unternehmen*, Bonn.
- _____. 2001. *Insolvenzrecht und Landwirtschaft*, Bonn.
- Beckmann, Volker. 2000. *Transaktionskosten und institutionelle Wahl in der Landwirtschaft*, Berlin.
- Brandes, Wilhelm. 2000. "Wettbewerb in der Landwirtschaft aus Sicht der evolutorischen Ökonomik", *Agrarwirtschaft* 49, H. 8.
-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BMVEL), 2006, *Agrarpolitischer Bericht 2006 der Bundesregierung*, Bonn.
- Deutscher Genossenschafts- und Raiffeisenverband. 1998. *Gründungshilfe. Was ist eine Genossenschaft?* DGRV Schriftenreihe Bd. 30, Bonn.
- L'agrandissement va de pair avec l'essor des formes sociétaires. 2006. Numéro 181, juillet 2006.
- Lissitsa, Alexej and Alfons Balmann. (forthcom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of Farms in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The Empirical Economic Letters*.
- Peter, Gregor and Hans-Peter Weikard. 1993. "Betriebsgröße und Organisationsform für die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 *Agrarwirtschaft* 42, H. 8/9.

- Rothe, Andrea and Alexej Lissitsa. 2005a. "Zur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schen Landwirtschaft", Discussion Paper No. 87, IAMO, Halle(Saale).
- _____. 2005b. "Der ostdeutsche Agrarsektor im Transformationsprozess", Discussion Paper No. 81, IAMO, Halle(Saale).
- Schüle, Heinrich. 1997. Organisations- und Managementstrukturen landwirtschaftlicher Großbetriebe, Angewandte Wissenschaft H. 461, Bonn.
- Thiele, Holger. 1999. "Differences in farm efficiency in market and transition economy: empirical evidence from West and East Germany",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26, No. 3.
- Welschhof, Jürgen. 1995. *Die strukturelle und institutionelle Transformation der landwirtschaftlichen Unterne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tudien zur Wirtschafts- und Agrarpolitik Bd. 14, Bonn.

김수석 soosuk@krei.re.kr

- 서울대학교 농촌사회교육학과, 독일 브레멘대 경제학 박사
-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2003)
- 『농업관련 NGO의 농정참여에 관한 연구』 (2002)

박석두 sdpark@krei.re.kr

- 서울대학교 임학과, 고려대 경제학 박사
-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2002)
- 『한말 ·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수지변화에 관한 연구』 (1995)

연구보고 R522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9.

발 행 2006. 9.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디자인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021-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